

외국인 투자요인 변화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기능 재정립 방안

Measures to Re-define Functions of Free Trade Zone
According to Changes in Foreign Investment Factors

2014. 12.

이성우·송주미·한덕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보고서 집필 내역

| 연구책임자 |

이 성 우 : 제1장, 제2장 일부, 제5장 일부, 제6장

| 연구진 |

송 주 미 : 제2장 일부, 제3장, 제4장 일부, 제5장 일부

한 덕 훈 : 제4장 일부, 제5장 일부

| 외부연구진 |

나 승 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 제3장 2절

양 빈 (상해해사대학교 교수) : 제4장 1절 일부

산·학·연·정 연구자문위원

진 규 호 (부산항만공사 마케팅 부장)

송 정 익 (여수광양항만공사 마케팅 팀장)

송 상 화 (인천대학교 교수)

김 선 종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 사무관)

서 성 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물류투자팀 사무관)

* 연구자문위원은 산·학·연·정 순임

연구감리자

길 광 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임연구위원)

발 간 사

글로벌화와 교통혁명으로 가속화된 국제분업은 세계 경제 변화를 주도하는 동력원 역할을 해 왔다. 글로벌화는 전 세계 경제 성장의 기반이 되었고, 아시아가 세계의 공장이 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세계 경제와 무역환경 변화를 주도해 왔다. 그러나 글로벌화의 긍정적 요인과 함께 세계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 글로벌 리스크 심화, 실업자 증가, 소득 불균형 등 여러 부정적 요인들이 대두되면서 기존에 진행되었던 글로벌 경제의 주요 흐름들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분야에서 국제분업으로 치달던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패턴이 리쇼어링(reshoring)이라는 자국회귀 현상, 해외직구와 같은 소비자의 구매 패턴 등의 등장과 함께 미국과 EU경제 중심의 글로벌 경제가 아시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글로벌 환경변화는 세계 경제를 주도해 온 외국인 투자패턴 변화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해 자국의 경제발전을 도모하던 많은 국가들은 변화하는 외국인 투자패턴에 맞추어 외국인 투자유치 전략을 빠르게 수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 외국인 투자유치의 중심에 있는 자유무역지역은 1970년에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수출 진흥, 고용증대, 기술향상 및 국민경제 발전 기여를 목적으로 최초 지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오랜 기간 글로벌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큰 변화 없이 예전 제도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은 지난 30년간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해 우리 경제에 부족한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는 창구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외국인투자를 유치하여 수출을 증대하고 외화를 획득하였으며, 자본축적 및 선진 기술 도입에 기여하였을 뿐 아니라, 경제성장 과정에서 노동집약적 경공업 중심에서 기술집약적 전기전자산업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통해 부가가치를 제고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자유무역지역이 소기의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해 자유무역지역의 존재 의의는 여전하며, 여러 가지 여건 변화에 발맞추어 자유무역지역의 기능 및 성격을 변경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1970년대에 지정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경우는 마산자유무역지역이 유일하며, 대부분이 2000년대 이후에 지정되었을 뿐 아니라,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과 성격이 다른 물류형 자유무역지역의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도는 1970년대의 수출자유지역에 근거하고 있어, 변화하는 현실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반론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글로벌 환경변화에 맞추어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과 관련된 주요 기능을 재정립하고 이에 따른 제도 개선이 병행되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패턴에 적절히 대응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이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도록 최근 세계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외국인 투자패턴의 변화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자유무역지역 기능 재정립 및 제도 개선을 하고자 했으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의 기능을 재정립하고자 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에 투자를 희망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대부분은 글로벌 가치사슬상에서 우리나라 기업들과의 협업의 필요성 그리고 중일 협업기업들과의 협력을 위해 한국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 입지하고자 하는 경향을 파악하였다. 또한 외국인 투자유치 패턴에 적합한 투자 유인 결정요인과 함께 해외주요 사례의 시사점을 결합하여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및 입지 패턴 분석(글로벌 가치사슬 관련)을 통해 조세, 임대료 이외에 투자 결정요인이 있음도 확인하였다. 이렇게 도출된 내용을 근거로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 기능 재정립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글로벌 가치사슬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선도형 자유무역지역(1종)과 입주율 제고를 통한 지역개발이 우선되는 특화형 자유무역지역(2종)으로 구분하여 특성화 및 인센티브 지원 방향을 이원화하는 제도를 제안하였다. 해당 기능

재정립 방안에 의거하여 신규 제도로입, 기존 제도에 대한 개정 부분 등을 제안하였다. 신규 제도는 클러스터 구축지원관련 사항, 사후평가제도 도입 등이며, 기존 제도 개선방안은 인센티브 강화, 관리·운영관련 제도개선, 사업환경 및 신규 비즈니스 창출 관련 제도개선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이외 기타 관련 법제도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관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연계된 법제도의 개정방안도 일부 제안을 하였다.

본 연구는 이성우 연구위원, 송주미 전문연구원, 한덕훈 전문연구원이 공동으로 수행하였다. 그리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나승권 전문연구원과 인천대 송상화 교수님, 대한무역공사 조계권 차장이 일부 자문 및 원고집필에 참여해서 도움을 주셨다. 이외 해양수산부 김선종 사무관, 산업통상자원부 서성민 사무관, 부산항만공사 진규호 부장, 여수항만공사 송정익 팀장께서 연구의 질 개선을 위해 다양한 시각에서 고견을 주셨다. 본 원의 길광수 선임연구위원께서 지속적인 감리와 지도를 통해 본 연구의 질을 높여 주셨고 안정적인 연구수행을 위해 박수진 사무원이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이 연구보고서가 출판되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를 표하는 바이다.

2014. 12.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 장 김 성 귀

| 목 차 |

Executive Summary	i
-------------------------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필요성	1
제2절. 연구 목적	3
제3절. 연구 내용 및 범위	3
제4절. 연구 방법	4
제5절. 선행연구	6

제2장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 현황 및 평가

제1절.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 현황	11
1. 자유무역지역 개요 및 혜택	11
2. 자유무역지역 유형	13
3. 자유무역지역의 특징	15
제2절.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 평가	23
1. 외국인투자의 유치	23
2. 무역 진흥	24
3. 국제물류 원활화	27
4. 지역개발	28
제3절. 시사점	29
1. 글로벌 환경변화 대응 미흡	29
2. 자유무역지역 거버넌스 구조 문제	29
3. 유사제도 중복지역 및 혼재	30
4. 관세법과의 충돌 빈번	30

제3장 글로벌 여건변화와 자유무역지역 영향

제1절. 글로벌 경제 및 물류 환경변화	31
1. 자유무역 확대와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강화	31
2. 아시아 역내 시장 중요성 증대	33
3. 신기술 발전	35
4. 제도 변경	37
제2절. 우리나라 외국인투자유치 여건 변화	38
1. 외국인직접투자 개요	38
2.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40
3. 한국 투자유치 여건의 평가 및 시사점	46
제3절. 자유무역지역의 영향	52

제4장 해외사례 분석

제1절. 중국	63
1. 상하이 세관관리감독특수구역	63
2. 대만	72
3. 소결 및 시사점	80
제2절. 미국	82
1. 미국 자유무역지역(FTZ) 개요	82
2. 미국 자유무역지역 관리 및 거버넌스	84
3. 미국 자유무역지역의 특징	85
4. 미국 자유무역지역 운영실태	90
5. 소결 및 시사점	91

제5장 자유무역지역 기능 재정립 및 제도개선 방안

제1절.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 여건	93
1. 내부 환경	93
2. 외부 환경	95
3. 자유무역지역 방향 설정	97

제2절. 자유무역지역 기능 재정립 방안	98
1. 유사·관련 법제도 검토	98
2. 기능 재정립 방향	100
제3절. 자유무역지역 제도 개선방안	103
1. 선도형 자유무역지역(1종)	103
2. 특화형 자유무역지역(2종)	111
제4절. 기타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	116
1. 외국인 투자촉진법령 개정	116
2. 관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개정	117
3. 관세법상 특허보세구역과의 차이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개선방안 ..	117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요약 및 결론	121
제2절. 정책제언	122
1. 법제도 및 평가제도 개선	122
2. 거버넌스 및 관리·운영체계 개선	125
3. 마케팅 활성화 방안 강구	127

참고문헌	131
------------	-----

| 표 목 차 |

표 1-1.	선행연구	9
표 2-1.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 지정 현황	14
표 2-2.	항만형 및 공항형 자유무역지역 지정현황	15
표 2-3.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 토지 임대료(m ² 당 월 임대료)	16
표 2-4.	부산항 신항 및 광양항 자유무역지역 토지 임대료(m ² 당 월 임대료) ..	17
표 2-5.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 임대료 우대조건	20
표 2-6.	통계자료 제공여부	25
표 2-7.	우리나라 산업단지와 자유무역지역 업체당 수출액	25
표 2-8.	우리나라 산업단지와 자유무역지역 종업원당 수출액	26
표 3-1.	제조업 국가 순위	34
표 3-2.	지자체별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실적	40
표 3-3.	국가별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실적	41
표 3-4.	Greenfield형 FDI 산업별 추이	43
표 3-5.	M&A형 FDI 산업별 추이	45
표 3-6.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결정요인	48
표 3-7.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 유치요인 영향 이용자료	54
표 3-8.	단위근 검정결과	56
표 3-9.	차분한 자료의 설명변수 선택	58
표 3-10.	원자료의 설명변수 선택	60
표 4-1.	상하이 종합보세구 업종 현황(2012년)	66
표 4-2.	대만의 수출가공구 지정 현황	74
표 4-3.	대만의 수출가공구 토지임대료 및 공공시설 건설수수료	75
표 5-1.	자유무역지역과 유사한 국내제도간의 주요특징 비교	99
표 5-2.	신규제안 자유무역지역 제도별 특성 비교	102
표 5-3.	기존 및 신규 자유무역지역(안) 인센티브 비교	112
표 5-4.	자유무역지역 및 특별보세구역 비교	119

| 그 림 목 차 |

그림 1-1. 연구흐름도	4
그림 2-1. 자유무역지역 제도 개요	12
그림 3-1. 세계 지역무역협정 발효 현황	32
그림 3-2. 한국 FDI 유입(Inflow) 연도별 추이	39
그림 3-3. 투자형태별 외국인투자 유치 실적	42
그림 3-4. Greenfield형 FDI 산업별 구성	43
그림 3-5. M&A형 FDI 산업별 구성	44
그림 3-6. 우리나라의 GDP 대비 FDI Stock 추이	46
그림 3-7. 한국의 투자유입 잠재력 및 투자유입 지수	47
그림 3-8. 각 변수들 그림 및 추세선	55
그림 4-1. 대만 수출가공구 및 자유무역지역 위치	73
그림 6-1. 자유무역지역 기업유치 절차	128
그림 6-2. 자유무역지역 마케팅 성장기반 프로세스	129

Executive Summary

Measures to Re-define Functions of Free Trade Zone According to Changes in Foreign Investment Factors

1. Purposes

It aims to suggest the measures to re-define functions of free trade zones and improve institutions based on a detailed analysis on changing foreign investment patterns according to the recent change in the global economic environment. It aims to increase global competitiveness of Korea's free trade zones. The ultimate objective of the research is to establish a foundation to increase national wealth and employment.

2. Methodologies and Features

1) Methodologies

[Characteristics of the Methodologies]

Features	Major description	Data collection	Reasons for choice
Basic analysis	- Current status and evaluation of free trade zones in Korea - Case study of China, Thailand and the US	- Related literature - Professional consultation	-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and conduct basic research
Internal seminar	- Current status and changes of foreign investment attraction environment in Korea - Facilitation of value chains and business attraction - Operation system and current management status of free trade zones	- Advisory conference including presentation and discussions of the experts in various areas	- It is considered that communications and idea exchanges with experts in various areas through internal seminars are effective in developing measures to improve institutions
Statistical analysis	- Major factors that influence the foreign investment amount in free trade zones	- Related literature - Information DB	- Empirical analysis is needed
Expert consultation and joint research	- Change in the foreign investment attraction environment - Current status and change in free trade zones in China	- Getting advice from and listening to experts	- It addresses limitations of the existing literature research

2) Features

The study mainly focuses on port type free trade zones among three major types that are industrial complex type, port type and airport type. However, it was hard to classify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and institutions and the access to related data was restricted. Therefore, the study was expanded to include industrial complex type and airport type upon its necessity.

The current status and features of Korea's free trade zones were analyzed and the current situations of the free trade zones were evaluated according to its purposes. And the changes in the global conditions and its influence on the free trade zones were reviewed. In addition, information and opinions were exchanged through overseas case study and small-scale expert seminars. Based on the result, the measures to improve free trade zone systems were proposed.

3. Results

1) Summary

Among the four major purposes for free trade zones in Korea, foreign investment attraction, trade promotion and facilitation of international logistics are considered to be achieved well above the certain level. However, it requires time to see the purpose of regional development as it was recently introduced.

China has continued to introduce new institutions, keeping up the changing conditions. It opened Shanghai Pilot Free Trade Zone in 2013 following Bonded Area (1999), Foreign Trade Zone (2000), Bonded Logistics Zone (2003) and Bonded Port (2005). Unlike the free trade zones in Korea, that restrict business types, it's relatively free for service business to move in the free trade zones in China.

Korea's free trade area systems do not keep up with the global environment. The governance structure and similar systems are duplicated and mixed and conflict with customs laws. Such issues require solutions. Among existing functions of the free trade zones, the two functions with high possibility of conflict, strengthening of trade function and regional development, should be separated and re-aligned to properly operate free trade zones in Korea.

The dualized institutional structure is suggested as follows. The zones with high connectivity with global value chains and frequent foreign investments such as the capital area, southeast area and central area are selected as leading regions (First-Class Free Trade Zone). The areas with a bigger local development function such as Gangwon area and Jeonbuk area is separated as a special area (Second-Class Free

Trade Zone).

The institutions that should be newly introduced or enacted in the leading areas are as follow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business environment-related institutions, which include introduction of cluster support and promotion system, post-evaluation support system, efficient management and operation of foreign investment committee and transition of move-in methods, reduction of inventory management obligations, simplification of export and import declaration process and mitigation of access control.

The following are the policy direction proposals for the special areas. It is necessary to increase incentives to free trade zones, relax the regulations on move-in qualifications and export ratio and to give preferential treatment to small- and medium-sized company tenants.

And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free trade zone law and system, newly enact integrated laws on foreign investment attraction, analyze ripple effects of foreign investment attraction, establish standardized evaluation index and statistics for added values of the free trade zones and improve governance and management, operation systems.

At the same time, it is necessary to promote best practices, develop and strengthen free trade zone-related business models, establish systematic business attraction strategies and establish growth foundation for sustainable investment.

2) Policy contribution

It presents the direction and measures to improve Korea's free trade zone system

3) Expected benefits

It is expected that the purpose and intention of introducing the free trade zone system is realized through improvement of Korea's free trade zone move-in related systems and management and operation measures. It will increase competitiveness of Korea's free trade zones and facilitate foreign investment attraction. It will solidify a foundation to create national wealth and employment.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 필요성

1980년대 이래 시작된 글로벌화는 교통혁명과 국제분업화를 기반으로 급속도로 세계 경제 변화를 주도하는 동력원 역할을 해 왔다. 글로벌화는 미국과 EU의 경제 성장의 기반이 되었고, 아시아가 세계의 공장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세계 경제와 무역환경 변화를 주도해 왔다. 그러나 글로벌화의 긍정적 요인과 함께 세계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 글로벌 리스크 심화, 실업자 증가, 소득 불균형 등 여러 부정적 요인들이 대두되면서 기존에 진행되었던 글로벌 경제의 주요 흐름들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분야에서 국제 분업으로 치달던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패턴이 리쇼어링(reshoring)이라는 자국회귀 현상, 해외직구와 같은 소비자의 구매 패턴 등의 등장과 함께 미국과 EU경제 중심의 글로벌 경제가 아시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는 세계 경제흐름을 주도해 온 외국인 투자패턴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자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유치를 희망하던 국가들은 변화하는 외국인 투자패턴에 맞추기 위해 외국인 투자유치 전략을 글로벌 환경변화에 맞추어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 외국인 투자유치의 중심에 있는 자유무역지역은 1970년에 외국인투자 유치에 통한 수출 진흥, 고용증대, 기술향상 및 국민 경제 발전 기여를 목적으로 최초 지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오랜 기간 글로벌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큰 변화 없이 예전 제도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이러한 변화에 제대로 대응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1970년 지정 이후 국제물류 원활화를 목적으로 하는 관세자유지역(1999.12.28.제정), 기존의 수출자유지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변경(2000.1.12. 전부개정)하였다가 2004년에 관세자유지역을 통합하여 현재의 자

유무역지역 제도로 정착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은 이름이나 관리기관 등의 변경은 있었으나 기본 제도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된 채로 현재까지 이르고 있어 최근 환경변화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은 지난 30년간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해 우리 경제의 부족한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는 창구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평가받고 있다.¹ 외국인투자를 유치하여 수출을 증대하고 외화를 획득하였으며, 자본축적 및 선진기술 도입에 기여하였을 뿐 아니라, 경제성장 과정에서 노동집약적 경공업 중심에서 기술집약적 전기전자산업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통해 부가가치를 제고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자유무역지역이 소기의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대두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무용론까지 언급되고 있다.

자유무역지역이 소기의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은 최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의 경우 입주수요가 높지 않으며, 총 투자액 대비 외국인투자비율이 높지 않으며 이마저 점점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1인당 GDP 2만 달러 진입, 3년 연속 무역 1조 달러 달성 등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에 비추어 외국인투자 유치 및 외화획득 등이 더 이상 지상목표가 될 수 없다는 점과 FTA 확대 등으로 인해 관세면제라는 자유무역지역의 고유한 장점이 훼손되고 있으므로, 자유무역지역이라는 제도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무용론도 언급되고 있다.

이에 대해 자유무역지역의 존재 의의는 여전하며, 여러 가지 여건 변화에 발맞추어 자유무역지역의 기능 및 성격을 변경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¹ 그러나 자유무역지역의 성과를 직접 평가할 방법은 마땅하지 않음.

- 외국인투자 유치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하는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 통계는 신고 기준으로 작성되고 있으며, UNCTAD 등 국제기구에는 도착기준으로, 자유무역지역의 경우는 '도착금액누계-회수금액누계' 인 잔액(FDI Stock) 기준으로 작성하고 있어,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투자 유치액 대비 자유무역지역의 외국인투자 유치액 비율 및 증가율 비교를 통한 성과 평가가 쉽지 않음
- 자유무역지역의 수출액 비율을 면적 비율과 비교하는 방식도 가능하나 이는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에 적합할 뿐이며, 물류형 자유무역지역에는 적합하지 못할 뿐 아니라 통계자료도 구축되어 있지 않음

입장도 있다. 1970년대에 지정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경우는 마산자유무역지역이 유일하며², 대부분이 2000년대 이후에 지정되었을 뿐 아니라,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과 성격이 다른 물류형 자유무역지역의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도는 1970년대의 수출자유지역에 근거하고 있어, 변화하는 현실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반론도 있다.

따라서 글로벌 환경변화에 맞추어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과 관련된 주요 기능을 재정립하고 이에 따른 제도 개선이 병행되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패턴에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제2절. 연구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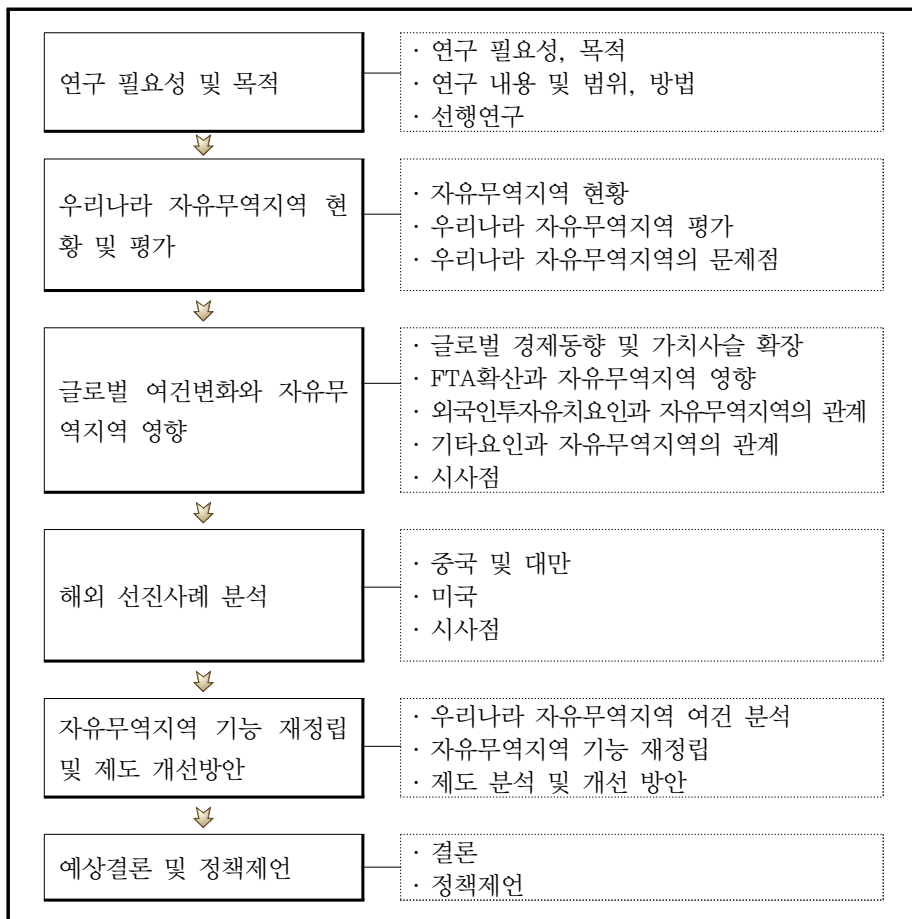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이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근 세계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외국인 투자패턴의 변화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자유무역지역 기능 재정립 및 제도 개선을 하고자 한다. 이렇게 재정립된 자유무역지역의 기능을 제대로 강화할 수 있는 자유무역지역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동시에 제안하여 우리나라 국부 및 고용창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제3절. 연구 내용 및 범위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 기능 재정립을 통한 제도개선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유사단지의 제도개선 사항 및 주요국의 자유무역지역 관련 제도의 변화 과정을 분석하는 것이 연구의 주요 내용이다.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대상은 우리나라 산업형, 물류형 자유무역지역을 모두 포함한 산업단지, 항만, 공항연계 자유무역지역으로 한다.

² 익산 자유무역지역이 1973년에 지정된 바 있으나, 입주기업 대부분이 수출보다는 내수에 집중하고 있어 2010년에 입주기업들의 동의를 통해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해제하였음.

〈그림 1-1〉 연구흐름도



제4절.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이 글로벌 환경변화와 외국인 투자요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해당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연구 방법론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1) 외부전문가 적극 활용

본 연구는 국내외 사례 조사 등을 위하여 각 분야에 적합한 국내외 외부전문가를 파악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FTA 확산, 1인당 GDP수준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목적 및 역할에 대한 선행 연구 및 전문가 토론을 통해 연구의 방향을 정립할 예정이다. 또한, 정기적인 전문가 발표 및 토론회를 통해, 자유무역지역과 관련된 여건변화 및 기능 재정립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다.

(2) 정책 수요자 등과의 주기적인 교류 및 자문 실시

정책 수요자인 주무부처 공무원 및 학계, 산업계 주요 관계자 등과의 주기적인 교류를 실시하고 보고서 수준 및 정책 대안의 실행가능성에 대한 리뷰를 실시할 예정이다.

(3) 자유무역지역 평가지표 분석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의 성과 및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유치, 무역진흥, 국제물류 원활화, 글로벌 가치사슬 강화, 지역개발의 4개 지표를 활용하여 아래와 같이 지표 분석을 실시할 예정이다.

가. 외국인 투자의 유치

외국인투자 유치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하는 우리나라의 외국인 직접투자 통계는 신고기준으로 작성되고 있으며, UNCTAD 등 국제기구도 도착기준으로, 자유무역지역의 경우는 ‘도착금액누계-회수금액누계’인 잔액(FDI Stock) 기준으로 작성하고 있어,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투자 유치액 대비 자유무역지역의 외국인투자 유치액 비율 및 증가율 비교를 통한 성과 평가가 쉽지 않다. 따라서 해외 전문지 및 기타 문헌 등의 성과물들을 통해 평가를 시도한다.

나. 무역진흥(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의 수출액 비율을 면적 비율과 비교하는 방식도 가능하나 이는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에 적합할 뿐이며, 물류형 자유무역지역에는 적합하지 못할 뿐 아니라 통계자료도 구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의 우리나라 산업단지 면적 대비 수출입 비율을 검토하는 방식 등을 통해 평가가 가능하다.

다. 국제물류의 원활화(항만형, 공항형)

전체 항만물동량 대비 항만FTZ발생 물동량의 비율, 항만형(부산, 광양만) 자유무역지역 수출입 물동량, 설치 이후 항만 물동량 증감량 등을 검토(경제 성장, 항로개설 등의 요인을 제거할 수 있을지 검토)하여 평가한다.

라. 지역개발(산업단지형)

동해, 울춘, 김제 등이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나 현재 진행형에 있으므로 평가보다는 그 취지 중심으로 정성적 검토를 실시한다.

(4) 정보 공유 및 홍보 등을 통하여 연구 결과의 실용성 제고

연구 관련 주제에 대한 다양한 내부세미나를 개최하고 이를 원내에 공개함으로써 자유무역지역 및 관련 지원정책 등에 대한 지식을 축적하고, 다른 부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 수행 도중 및 이후에 대언론 홍보자료 배포 및 자료 협조 등을 통하여 자유무역지역 기능 재정립 정책 등의 추진 원동력을 확보할 것이다.

제5절. 선행연구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 관련 연구는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자유무역지역 관련 주요 연구는 자유무역지역의 기업유치 방안, 개발을 위한

법제도 정비, 부가가치 창출방안, 글로벌 가치사슬 연계 방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백종실 외(2001)는 「관세자유지역의 글로벌 물류기업 유치 강화 방안 연구」에서 자유무역지역의 옛 명칭인 관세자유지역에 대해 체계적이지 않았던 제도 개선과 국제 물류기업 유치를 통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관세자유지역의 투자제도 및 절차, 입주절차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이들 물류기업을 유인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 및 유치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편리하고 용이하게 투자 입주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글로벌 투자패턴에 대한 분석과 연계한 실질적인 투자요인 도출 대신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개략적인 방향만 제시하였다.

길광수 외(2003)의 「항만배후단지 개발 관련 법 제도 비교 연구」는 항만 배후단지가 물류중심항만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됨에 따라 법 제도의 비교 분석을 통해 항만배후단지 개발 및 관리 운영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비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또한, 물류형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대상이 되는 항만배후단지의 법제도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제안된 주요 항만배후단지 개발 관련 법 제도 개선방안은 관련 법률 간 협의 및 협조 요구를 통한 행정절차 간소화, 다양한 재원 확보 및 정부재정에 의한 필요부지 매입근거 마련, 사업 시행주체의 명확화 및 비관리청 공사제도 활용으로 민간참여 유도, 개발 지정관련 지원제도 확대 등 규정 정비 등이다. 또한 항만배후단지 관리·운영관련 법 제도 개선방안으로 입주업체 유치방식(임대방식 등)의 다양화 및 경쟁력 있는 임대료 제공, 국내외 국제물류기업 간 대등한 운영여건 조성, 관리권자의 역할 확대 및 관리기구 설치, 타 특례경제지역과의 연계 운영 및 근거규정 마련 등이었다. 그러나 항만배후단지라는 개발 중심의 법제도와 자유무역지역이라는 관리·운영 중심의 법제도가 존재하여 해당 제안사항들이 항만법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못하였다.

이성우 외(2007)는 「국제 분업화에 따른 항만배후단지 기업 유치 방안 연구」를 통해 글로벌화로 인해 국제 분업화가 촉발됨에 따라 주요 산업에서

항만배후단지를 활용한 기업들의 비즈니스 패턴을 분석하여 다양한 기업의 니즈를 반영한 우리나라 항만배후단지 경쟁력 제고방안을 제시하였다. 해당 연구는 법적·제도적 지원방안으로 인센티브 조항 추가, 외국인 고용쿼터제 확대방안을 제안하였고 홍보 및 마케팅 방안으로 일원화된 조직 구성, 해외 대표사무소 설치 및 기업유치 활동 강화, 물류비즈니스 모델의 구축 등을 제안하였다. 세밀한 분석에 비해 해당 연구는 법제도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 못하는 한계가 존재하였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10)은 「한-EU FTA체결에 따른 항만자유무역지역에 미치는 영향 및 기업유치전략 연구」를 통해서 한-EU FTA체결에 따라 항만자유무역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글로벌 기업유치 전략을 수립하였다.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에 최초로 FTA와 접목시킨 기업유치 전략을 제안하였으며, 기업의 수익모델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해당 비즈니스 모델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들이 정부정책으로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실질적인 기여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김형근 외(2011)는 「부가가치 창출 극대화를 위한 항만배후단지 발전방안 연구」를 통해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법적·제도적 체계화 분석 및 경쟁전략 요인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항만배후단지의 활성화와 부가가치 창출 능력 제고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범부처적 TF구성 및 추진, 자유무역지역 지정효과 분석, 정부재정지원 비율 확대, 사후관리 규정 강화, 자유무역지역 추가 지정, 자유무역지역 유사제도 통합 등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해당 연구는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에 편중된 제도 개선사항으로 자유무역지역의 전체 제도적 문제개선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외에 산업연구원(2007)은 「자유무역지역의 활성화 및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방안」을 통해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한 자유무역지역의 정책방향을 설정하고자 진행되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정책제안보다는 선언적인 방향 제시에 그쳤고, 한국조세연구원(2012)은 「자유무역지역 제도 현황 및 개선방향 연구」를 통해 자유무역지역 제도가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운영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관세당국의 관점

에서 제안된 내용으로 인해 기업친화적 제도 개선에는 한계가 있었다. 한국 무역협회(2014)는 「자유무역지역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의 규제사항들을 최근 경제환경 변화에 맞추어 자유무역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제안하였다.

〈표 1-1〉 선행연구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 요 선행 연구	1	- 과제명: 관세자유지역의 글로벌 물류기업 유치 강화 방안 연구 - 연구자(년도): 백종실 외(2001) - 연구목적: 관세자유지역에 대해 체계적이지 않았던 제도 개선과 국제 물류기업의 유치를 통한 활성화 방안 제시	- 문헌연구 - 현황조사 - AHP분석 - 사례조사	- 물류산업군집화와 관세자유지역 - 관세자유지역의 특징과 주요 유치 기능 - 국내외 관세자유지역 운영여건 분석 - 우리나라 관세자유지역 경쟁력 평가 - 관세자유지역 해운물류기업 유치강화 전략
	2	- 과제명: 항만배후단지 개발 관련 법제도 비교 연구 - 연구자(년도): 길광수 외(2003) - 연구목적: 항만배후단지 법 제도의 비교 분석을 통해 항만배후단지 개발 및 관리 운영을 효과적 지원 방안 제시	- 문헌연구 - 현황조사 - 사례조사	- 물류와 항만환경변화 - 항만배후단지 개발방향 - 항만배후단지 개발관련 법제도 비교분석 - 항만배후단지 개발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3	- 과제명: 자유무역지역의 활성화 및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방안 - 연구자(년도): 산업연구원(2007) - 연구목적: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한 자유무역지역의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함	- 문헌연구 - 현황조사 - 사례조사	- 국내외 자유무역지역 운영현황 - 자유무역지역 활성화 방안 - 자유무역지역 관리운영체계 개편 방안 - 자유무역지역 정책의 추진방향
	4	- 과제명: 국제 분업화에 따른 항만배후단지 기업유치 방안 연구 - 연구자(년도):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07) - 연구목적: 주요 산업에서 항만배후단지를 활용한 기업들의 물류비즈니스 패턴분석을 통해 기업의 니즈를 반영한 우리나라 항만배후단지의 경쟁력 제고방안 모색	- 문헌조사 - 인터뷰 - DB분석 - 설문조사	- 국제 분업화 발전과정 - 동북아 국제 분업화 내 우리나라 경쟁우위 산업 - 우리나라 경쟁우위 산업의 공급사슬 체계분석 - 항만배후단지 중심 산업별 공급사슬 실증사례 분석 - 우리나라 경쟁우위 산업의 항만배후단지 기업유치 방안

〈표 1-1〉 선행연구(계속)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5 - 과제명: 한-EU FTA체결에 따른 항만자유무역지역에 미치는 영향 및 기업유치전략 연구 - 연구자(년도):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10) - 연구목적: 한-EU FTA체결에 따라 항만자유무역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기업유치전략을 연구하여 글로벌 물류기업 유치에 활용하기 위함	- 문헌연구 - 현황조사 - 사례조사 - 경제성분석	- 한-EU FTA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분석 - 한-EU FTA체결에 따른 항만자유무역지역 입주유망품목 분석 - 한-EU FTA체결에 따른 투자유치 전략 및 적용가능 BIZ 모델 개발
	6 - 과제명: 자유무역지역 제도 현황 및 개선방향 연구 - 연구자(년도): 한국조세연구원(2012) - 연구목적: 자유무역지역 제도가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운영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분석하고자 함	- 문헌조사 - 사례연구	- 자유무역지역 개황 -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 제도 - 미국 자유무역지역 운영방식과의 비교분석 - 요약 및 정책적 개선방안
	7 - 과제명: 부가가치 창출 극대화를 위한 항만배후단지 발전방안 연구 - 연구자(년도): 김형근 외(2011) - 연구목적: 우리나라 항만배후단지의 활성화와 부가가치 창출능력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시	- 문헌연구 - 현황조사 - 사례조사	- 항만배후단지 개발여건 변화 - 국내 항만배후단지 운영 여건 및 법제도 분석 - 해외 선진사례 분석 - 부가가치 극대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8 - 과제명: 자유무역지역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 연구 - 연구자(년도): 한국무역협회(2014) - 연구목적: 최근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자유무역지역 규제 개선방안 제안	- 문헌연구 - 현황조사 - 전문가조사	- 자유무역지역 제도개선 필요성 - 자유무역지역 규제개선 방안

제 2 장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 현황 및 평가

제1절.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 현황

우리나라의 자유무역지역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지정, 운영되고 있다. 이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자유무역지역이란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관계 법률에 대한 특례와 지원을 통하여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이다. 자유무역지역의 조성목적은 “외국인 투자의 유치,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의 원활화 및 지역개발 등을 촉진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이라고 밝히고 있다³.

1. 자유무역지역 개요 및 혜택⁴

자유무역지역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국내지역, 즉 관세영역으로 보지 않고 비관세영역 내지는 외국지역으로 간주한다는 점이다. <그림 2-1>의 ①에 해당하는 외국물품의 자유무역지역 반입은 관세가 면제되며, ②의 경우인 반입신고를 한 내국물품의 자유무역지역 반입은 관세가 환급된다. ③의 경우인 내국물품의 국외반출 시에는 수출로 간주되며 ②의 경우와 유사한 경우이므로 이 역시 관세가 환급된다. ④의 경우에는 외국물품을 국내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는 것이므로 수입과 동일하게 되므로 관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즉, 외국물품이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되었다

3 * 자유무역지역과 유사한 제도로 경제자유구역이 있는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경제자유구역의 목적을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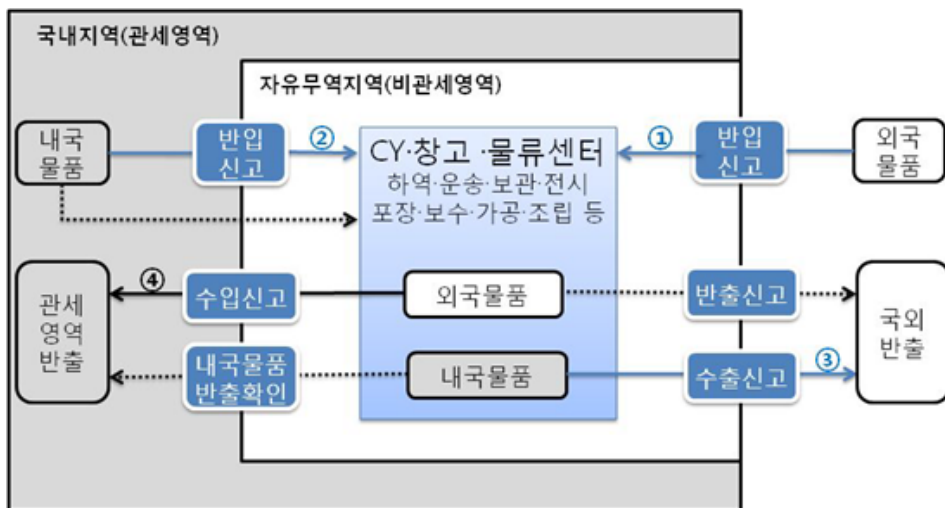
* 자유무역지역과 경제자유구역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하면, 경제자유구역에는 ‘외국인의 생활여건 개선’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음.

4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Biz모델 발굴」의 내용을 인용 및 업데이트.

가 바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받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재료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가공한 이후 재수출 하게 되는 경우, 이용된 원재료에 부과되었던 관세를 환급해주는 제도가 있어 자유무역지역의 관세 면제 혜택이 크게 부각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관세 환급과 면제는 기업의 현금흐름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며, 환급 받기 위한 서류 작성 및 수수료 등이 소요되므로 자유무역지역의 관세면제 혜택은 기업들에게 여전히 큰 잇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아래 그림의 ②와 ③의 경우, 즉 자유무역지역을 통한 수출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면제되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그림 2-1〉 자유무역지역 제도 개요



자료: 이성우·김운수·김근섭·송주마·이진주,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Biz모델 발굴』, 국토해양부, 2008.12., p.88

자유무역지역은 관세가 면제되는 지역일 뿐 아니라,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법인세 및 소득세가 면제되고,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등을 통해 취득등록세와 재산세 등이 감면되는 혜택이 있다.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중 물류산업에 미화 5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와 제조업에 10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법인세·소득세가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가 감면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유무역지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이중으로 지정되고 있는데 경제자유구역에서는 5년간 100%, 2년간 50%로 규정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5년간 100%, 2년간 50%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들이 감면 요건인 물류산업 외국인투자 500만 달러, 제조업 1000만 달러를 충족하지 못하여 이 혜택을 적용받는 경우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지방세는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등도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조세특례제한법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을 비교하여, 입주기업에 유리한 규정을 적용하면 된다. 법인세·소득세의 경우와 같이 외국인투자금액을 감면요건으로 삼는 경우도 있으며, 광양항 항만자유무역지역처럼 이러한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세제 감면 및 부가세 영세율 등의 혜택 이외에 기업들이 느끼는 자유무역지역의 가장 큰 장점은 저렴한 임대료라 할 수 있다.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 및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의 임대료는 공시지가의 1%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어, 심지어는 내수를 위주로 하는 기업일지라도 임대료 수준을 목적으로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려는 경우도 있다.

2. 자유무역지역 유형

자유무역지역의 지정권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일원화되고 있으나, 관리권자는 유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구분된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리하는 자유무역지역은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으로, 1970년에 지정된 수출자유무역지역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은 현재 8개가 지정되어 있으며, 관리기관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이 설치되어 있다.

1970년에 마산이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따라 수출자유지역으로 지정되었고, 2000년에 법률을 전면 개정하여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이후 자유무역지역이 지정되었다. 수출자유무역지역의 목

적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수출, 고용, 기술향상”이었으며, 2000년 자유무역지역의 목적은 “외국인 투자유치, 국제무역의 진흥 및 지역개발 촉진”으로 국제무역 진흥과 함께 지역개발 촉진이 추가되었다.

이에 따라 2000년에 군산이, 2002년에는 대불이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이후 2005년에 동해와 울춘이, 2008년에는 울산과 김제가 자유무역지역으로 추가 지정되었다.

한편 익산의 경우 1973년에 지정되어 자유무역지역으로 운영되다가 대부분의 입주기업들이 수출이 아닌 내수에 치중하게 되면서 입주기업들의 동의를 얻어, 2010년에 자유무역지역에서 해제되었다. 여기에서 자유무역지역은 보세구역에 해당하므로 내수기업의 비즈니스 활동에는 오히려 제약이 됨을 알 수 있다.

〈표 2-1〉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 지정 현황

구분	마산	군산	대불
소재지	경남 마산시	전북 군산시	전남 영암군
지정일	‘70.1.	‘00.10	‘02.11
총면적(천㎡)	953	1,256	1,157
입주업체수	102	29	31
생산액(억원)	—	5,699	8,376
수출액(만 달러)	15,278	39,182	35,211

주: 생산액, 수출액 등은 2013년 기준이며, 마산자유무역지역의 생산액 내용은 없음

자료: 각 자유무역지역관리원 홈페이지, 2014.12.3.검색

〈표 2-1〉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 지정 현황(계속)

구분	동해	울춘	울산	김제
소재지	강원 동해시	전남 순천시	울산 울주군	전북 김제시
지정일	‘05.12.	‘05.12	‘08.12	‘08.12
총면적(천㎡)	248	343	1,297	992
입주업체수	10	6	21	6
생산액(억원)	139	285	—	14
수출액(만 달러)	899	2,840	—	125

주: 1) 생산액, 수출액 등은 2013년 기준이나 김제자유무역지역은 2012년 기준

2) 울산자유무역지역은 21개 업체가 입주허가를 받고, 현재 입주 준비 중

자료: 각 자유무역지역관리원 홈페이지, 2014.12.3.검색

다음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권자인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은, 관세자유지역으로 시작하였으나 2004년에 자유무역지역에 통합되었다.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은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 포항항 및 평택·당진항 등 5개 지역에 지정되어 있으며, 항만공사가 설치된 지역은 항만공사가 관리기관이며, 그렇지 않은 곳은 지방해양항만청 등이 관리기관이다.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은 대부분 항만 터미널 및 항만배후단지에 지정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개발은 「항만법」을, 운영은 「자유무역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권자인 공항형 자유무역지역은 인천국제공항의 배후단지가 지정되어 있는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관리기관이다.

〈표 2-2〉 항만형 및 공항형 자유무역지역 지정현황

구 분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	포항항	평택·당진항	인천국제공항
지정일	‘02. 1. 1	‘02. 1. 1	‘03. 1. 1	‘08. 12. 8	‘09.3.30	‘05.4.6
총면적(천㎡)	9,565	8,879	2,405	709	1,429	3,014
관리기관	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만공사	지방해양항만청 여수광양항만공사	지방해양항만청 인천항만공사	지방해양항만청	지방해양항만청	서울지방항공청 인천국제공항공사

자료: 개별 항만공사 및 공항공사 홈페이지, 2014.12.3 검색

3. 자유무역지역의 특징

1) 저렴한 임대료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⁵ 및 제18조 제1항⁶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의 토지 또는 공장 등은 임대뿐 아니라 분양도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의 대부분은 임대방식을 택하고 있는

5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 및 예정지역에 있는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 등에 대하여 그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관리전환을 받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의 관리·처분에 관한 지정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기업체 등에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6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유무역지역 및 예정지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 등을 관리권자와 협의를 거쳐 입주기업체 등에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며⁷⁾, 가장 큰 특징은 임대료가 저렴하다는 점이다.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매 2년마다 임대료를 공고하고 있는데, 토지와 건물에 대해 각각 임대료가 부과되고 있다. 토지 임대료의 경우 기존에는 각 자유무역지역별로 임대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 업종에 비해 임대료를 절반 수준으로 인하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2013년 공고에서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 마산자유무역지역의 토지 임대료는 매월 m^2 당 198원으로 절대적인 수치는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공시지가 대비 임대료 등 인근 지가를 감안할 경우에는 오히려 다른 자유무역지역보다 낮게 책정되고 있다. 또한 동해와 울춘 자유무역지역은 처음에는 임대료를 비교적 높게 설정하였으나, 인근에 산업 클러스터 형성 미비 등으로 입주수요가 높지 않아 임대료를 인하하였다.

〈표 2-3〉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 토지 임대료(m^2 당 월 임대료)

단위: 원

구분	2009.7.~2011.7.	2011.8.~2013.7	2013.8.~2015.7.
마산 (1970~)	130	141	198
군산 (2000~)	86	86	100
익산 (1973~2010)	84	—	—
대불 (2002~)	64	72	68
동해 (2005~)	69	26	34
울춘 (2005~)	98	40	51
김제 (2008~)	—	—	50
울산 (2008~)	—	—	134

주: 1) 2009년의 경우 2009.7.20~2011.7.31.까지 적용, 2011년의 적용기간은 2011.8.1~2013.7.31.까지이며, 2013년의 경우 2013.8.1~2015.7.31.임

2) 익산자유무역지역은 2010년 지정 해제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공고자료, 2014.11.3

이외에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의 건물 임대료는 청사, 종업원 기숙사, 지원사무동, 물류창고, 표준공장 등 각 용도별로 구분되고 있으며, 표준공장의 경우 층별로 각각 구분되고 있다.

7 광양항 자유무역지역 중 광양시청이 관리기관으로 있는 중마부지는 분양 방식을 채택.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에서 3년마다 임대료를 공고하고 있는데, 부산항 자유무역지역과 광양항 자유무역지역은 2007년에 최초로 공고되어 이후 2010년, 2013년에 공고되었다. 평택·당진항 자유무역지역은 2009년과 2012년에 각각 공고되었다. 부산항 신항 자유무역지역⁸과 광양항 자유무역지역은 최초 공고 당시 중국의 경우와 비교하였을 때, 내수시장 규모 및 인건비 등에서 경쟁력이 부족하므로 우대 임대료를 파격적으로 설정하였다. 그런데 자기자본 중에서 외국인투자 비율이 10%만 되어도 우대 임대료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부산항 신항 자유무역지역은 m^2 당 매월 40원, 광양항 자유무역지역은 30원이 적용되었다. 이후 2010년에는 신규 입주기업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부산항 신항 자유무역지역은 m^2 당 매월 43원, 광양항 자유무역지역은 30원으로 거의 고정되었다.

〈표 2-4〉 부산항 신항 및 광양항 자유무역지역 토지 임대료(m^2 당 월 임대료)

단위: 원

구분			2007	2010	2013
부산항 신항	기본 임대료		260	281	482
	우대 임대료	100만 불미만	40	168	321
		100만~300만 불미만		106	
		300만 불 이상 또는 기존 우대임대료 적용기업		43	
	공시지가 임대료		공시지가×50/1,000		
광양항	기본 임대료		200	200	258
	우대 임대료	100만 불미만	30	120	129
		100만~300만 불미만		75	
		300만 불 이상 또는 기존 우대임대료 적용기업		30	
	공시지가 임대료		공시지가×50/1,000		

주: 1) 기본임대료: 기본적으로 입주기업체일 경우

2) 우대임대료: 2007년과 2010년 공고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 중 자유무역지역법상의 물류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이며, 2013년 공고에서는 자유무역지역법 상의 물류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임. 즉 2013년 공고에서는 외국인투자 기업이라는 조건이 면제됨

3) 입주기업 중 자유무역지역 지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자료: 해양수산부 공고자료, 2014.11.3.

⁸ 부산항 자유무역지역은 부산항 신항 지역과 신전대 터미널 인근의 용당지역, 남항지역, 감천지역 등에 산재하여 지정되고 있으며, 이 중 대표적인 곳이 부산항 신항 자유무역지역임.

이후 2013년에는 임대료를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여, 우대 임대료는 부산항 신항 자유무역지역의 경우 321원, 광양항 자유무역지역은 129원으로 공고하였으며, 기 입주기업의 경우 ramp-up 기간을 두어 약 6년에 걸쳐 이 임대료에 수렴하도록 하였다. 부산항 신항 자유무역지역의 임대료가 절대적인 수치로는 높은 편이지만, 산업단지형의 마산 자유무역지역과 유사하게 공시지가 대비 임대료 수준을 감안하면 오히려 광양항 자유무역지역보다 낮은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다. 한편, 평택·당진항 자유무역지역은 2009년에 개장하였는데, 기본 임대료는 700원, 우대 임대료는 500원 수준이며 2012년에도 이 임대료가 유지되었다.

공항형 자유무역지역은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공고하는 입주기업 모집안내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전체 임대료는 “{우대화물⁹ 토지임대료 단가(원/㎡) × 우대화물비율 + 일반화물 토지임대료 단가(원/㎡) × 일반화물비율} × 토지임차면적(㎡)”로 산정된다. 2011년 1월 1일 기준으로, 우대화물 및 일반화물 토지임대료 단가는 각 12,000(원/㎡), 24,000(원/㎡)으로 정하며 화물비율은 무게를 기준으로 산정되고 있다. 우대화물은 매월 ㎡당 1,000원이며, 일반화물은 2,000원 수준에 해당하여, 산업단지형 또는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준에서 임대료가 형성되고 있다.

2) 중앙정부 재정 투입

산업단지형과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의 경우 임대료를 낮게 부과할 수 있는 배경에는 정부 재정비율이 있다.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은 기존에 100% 중앙정부 재정으로 건설되었으며, 2005년에 산업자원부 고시¹⁰를 통해, 2006년 1월 1일 이후 지정되는 자유무역지역에 대해서는 조성사업비의 3/4 범위 내

9 1.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또는 기타 국내의 자유무역지역 내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용하거나 생산하는 화물
2.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공항물류단지)을 경유한 국제환적화물로, 공사가 정하는 화물
3.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내에서 도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생산하는 화물
4. 그 외 공항공사가 따로 정하는 화물

10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11호)

에서 국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나머지 1/4은 지방정부에서 부담하고 있어, 사실상 공영개발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은 중앙정부, 항만공사 및 지방정부에서 개발비용을 부담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의 재정투입 비율이 50% 이상을 차지한다. 먼저, 부산항 신항 자유무역지역 중 북‘컨’ 배후단지의 경우는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가 50%씩 분담하였으며¹¹, 웅동 배후단지의 경우 각각 구획을 구분하여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가 개발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50% 수준에서 분담되고 있다. 광양항 자유무역지역은 해양수산부와 광양시가 개발 비용을 분담하였는데, 동측배후단지는 해양수산부의 분담비율이 약 87% 정도이며 광양시의 비율은 약 13% 정도이다. 평택·당진항 자유무역지역의 경우, 조성당시에 해양수산부와 경기도가 각각 50%씩 개발비를 분담하였다.

공항형 자유무역지역인 인천공항 배후단지의 경우, 1단계는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투자비율이 약 40:60이었으나 2009년 이후부터는 중앙정부의 재정분담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외에 물류단지의 경우 국가 재정분담은 5% 미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산업단지는 단지 개발비용이 아닌 일부 시설비용을 국가가 전액 또는 일부에 한해 제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¹²의 경우는 부지매입비용을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있는데, 수도권은 40%, 비수도권은 75% 정도가 지원되고 있다.

즉, 일반적으로 자유무역지역은 “외국인투자 유치, 국제무역의 진흥 및 지역개발 촉진”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해 중앙정부의 재정 투입이 높은 편이며, 이로 인해 임대료가 저렴하게 설정되고 있다.

3) 외국인투자 우대

자유무역지역의 목적 달성을 위해 외국인투자에 대한 우대규정을 적용하고 있는데, 외국인투자 금액에 따라 임대료가 감면 또는 면제될 뿐 아니라,

11 부산도시개발공사로부터 부지를 매입하였으며, 매입비용을 50%씩 부담.

12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은 대부분 이미 조성된 산업단지 내의 일부구역을 지정함.

법인세·소득세, 취득세·재산세 등의 세제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의 경우, 외국인투자 비율이 30% 이상이고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인 경우를 만족하면서, 제조업종일 경우 외국인투자 금액이 500만 불 이상 신규로 투자될 경우 임대하는 토지 및 건물의 75%를 10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부품소재산업일 경우는 외국인 투자금액이 신규로 500만 불 이상이면 10년간 100%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서비스 업종일 경우는 100만 불 이상 외국인투자가 신규로 유치될 때에 10년간 100%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 기존에는 외국인투자 금액에 따른 임대료 면제 인센티브를 토지와 건물로 구분하였고, 또한 자유무역지역별로도 구분하였으나, 2013년 공고 때에는 일원화하였다.

〈표 2-5〉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 임대료 우대조건

토지 및 건물	o 다음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는 입주기업이 사용하는 토지 및 건물		
	- 외국인투자(감면시점부터 10년간 적용)		
	공통조건: 외 투 비 율 30% 이상 또 는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인 경우	1. 제조업종의 경우 외국인 투자금액을 미화 500만 달러 이상 신규로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	75% 무상
		2. 부품·소재산업의 경우 외국인 투자금액을 미화 500만 달러 이상 신규로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	100% 무상
		3.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서비스 업종의 경우 미화 100만 달러 이상 신규로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	100% 무상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공고자료, 2013.

부산항 신항 및 광양항 자유무역지역은 기존에는 외국인투자 금액 및 비율에 따라 우대 임대료를 적용하고 외국인투자 금액에 따른 별도의 감면 규정을 두어 다시 한 번 임대료를 감면하였다. 그러나 2013년 공고에서는 우대 임대료 적용의 조건에서 ‘외국인투자 기업’이라는 조건은 제외하고 물류기업 일 경우로 완화하였다. 그리고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화 500만 불 이상일 경우는 3년간 50% 임대료 감면, 1,000만 불 이상일 경우는 5년간 50%를 감면해준다.

이외에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은 제조업일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이 1,000만 불 이상, 물류업은 500만

불 이상일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감면된다. 자유무역지역에서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하되,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¹³로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금액¹⁴에 대한 외국인 투자비용을 곱한 금액의 100%를,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한다. 또한 자유무역지역 중 경제자유구역으로도 동시에 지정되어 있는 경우,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사업에 대해서는 5년간 100%, 2년간 50%가 적용된다. 단, 외국인투자 금액에 대한 최소조건이 주어지고 있고 당기 순이익이 발생해야만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이 규정에 의해 실제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고 있는 기업은 많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 지방세도 외국인투자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가 가능하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규정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른 규정 중 기업에 유리한 규정을 적용하면 된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동안은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용을 곱한 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한 감면 및 면제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한 최소금액 규정을 적용하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어,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혜택보다는 적용이 비교적 용이한 편이다.

4) 입주자격 제한

기본적으로 임대료가 낮은 수준으로 제공되고 있을 뿐 아니라,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한 추가 임대료 인하 및 면제, 법인세·소득세 및 취득세·재산세 등 세제 감면 혜택이 주어지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관세가 유예된다는 본질적인

¹³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¹⁴ 총산출세액 중 법인세 및 소득세가 감면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총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특성으로 인해 자유무역지역은 입주업종과 수출비중 등을 통해 입주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은 positive list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허용업종에 포함되지 않으면 입주가 불가능하여, negative list에 비해 입주자격에 대한 규제가 높은 편이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 입주업종의 범위를 넓히고 있으며 수출비중 등의 조건을 완화해 가는 추세이다. 지식서비스산업이 신규로 입주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국제물류의 원활화와 지역개발 및 수출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수출비중이 일정비율¹⁵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를 거치면 입주가 가능하다.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도매업 및 물류업, 공공기관, 국가기관,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업종 등 산업과 관련된 업종 등이 입주가 가능하다. 이 중 “입주 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업종”에는 음식점업, 숙박업, 세탁업, 이용업 및 미용업 등과 함께 체인화 편의점,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컴퓨터게임방 운영업, 보육시설 운영업 등도 포함된다. 즉, 산업기능 뿐 아니라 정주기능도 지원할 수 있는 업종들도 입주가 가능한 것이다.

5) 통제시설

그러나 자유무역지역의 관리권자는 관세청장과 협의를 거쳐 자유무역지역에 통제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시기를 공고하여야 한다. 관세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지역이 산업기능에 충실해야 한다는 인식이 바탕이 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입주 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업종”들, 즉, 산업기능뿐 아니라 정주기능도 지원할 수 있는 업종들에 대한 입주허가가 출입통제로 인해 효력을 발휘하기 어려워진다. 각 자유무역지역의 면적이 넓지 않으므로 이들 업종이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며, 이는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중국의 상하이 종합보세구 등에서 통제시설을 두지 않는 경우 등의 추세와 어긋난다.

¹⁵ 과거 3년 기간의 총 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50% 이상일 경우. 단 중소기업은 30%, 중견기업은 40%.

제2절.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 평가

1. 외국인투자의 유치

중앙정부에서 자유무역지역의 재정을 투입하여 저렴한 임대료를 제공하는 기본적인 목적은 외국인투자 유치이다. 자유무역지역에서 다른 산업단지 등에 비해 외국인투자 유치를 얼마나 하였는지가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으나, 현재 제공되고 있는 통계자료의 집계기준이 모두 상이하기 때문에 비교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즉,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하는 우리나라의 외국인 직접투자 통계는 신고기준으로 작성되고 있으며, UNCTAD 등 국제기구는 도착기준으로 작성되고 있다. 그러나 자유무역지역에서는 ‘도착금액누계·회수금액누계’인 잔액(FDI Stock) 기준으로 외국인투자 금액을 집계하고 있어,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운영된 기간이 오래될수록 증가할 수밖에 없다.

항만형 및 공항형 자유무역지역은 2000년대 중반에 운영을 시작한 관계로 아직까지 성공사례라고 내세울 수 있을 정도의 외국인투자 유치 성과를 보이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1970년에 지정되어 오래도록 운영되고 있는 마산 자유무역지역은 외국인투자유치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마산 자유무역지역에는 현재 101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이중 57개 기업이 외국인투자 기업이다.¹⁶ 또한 전체 투자액 2.4억 달러 중 1.7억 달러가 외국인투자로 68.6%에 달하고 있다. 노키아 TMC는 2000년대 중반에는 상시고 용가능 인구 2,000명에 달하며, 마산 자유무역지역의 수출액 중 80%를 차지하기도 하였다.¹⁷ 한때 전 세계 노키아 사업장 중 생산성 1위를 기록하며, 우리나라의 우수한 생산기술 및 근면성 등 노동력을 활용한 사례로 활용되었으나, 2014년에는 노키아 본사의 경영 어려움으로 폐쇄절차를 밟고 있다. 마산 자유무역지역에는 노키아 TMC 이외에도 한국소니전자, 한국태양유전, 한국

¹⁶ 노키아 TMC 포함.

¹⁷ 노키아 TMC는 미국의 Tandy Corporation(이하 "Tandy")과 핀란드의 Nokia Oyj(이하 "Nokia") 간의 합작투자계약에 의거 1984년 9월 17일에 셀룰러 이동무선전화기 및 관련 전기기기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마산 자유무역지역내에 설립.

산연 등 대형 외국인투자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기업환경,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태도 등을 홍보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하였다. 또한 본사로부터 첨단기술과 지적자본을 이전받아 생산측면에서 기술이전 및 확산효과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근무했던 인력이 국내의 다른 기업으로 이동하여 국내 관련 산업의 육성에 기여하였다는 평가가 있기도 하였다.¹⁸

마산 자유무역지역은 첨단 산업의 집적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하여 노후화된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표준공장을 재건축하며, 근로자를 위한 체육·휴게시설을 조성하는 등 구조고도화 사업을 진행하며, 신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2. 무역 진흥

자유무역지역의 조성 목적 중 하나인 무역의 진흥과 국제물류의 원활화는 각각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과 항만형 및 공항형 자유무역지역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은 각 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서 입주업체, 수출액 및 고용인원 등 주요 통계를 제시하고 있다. 업체당 수출액(g/b), 1인당 수출액(g/c), 단위 면적당 수출액(g/d, g/e) 등으로 여타 산업단지와 자유무역지역을 비교할 수 있다.¹⁹ 수출뿐 아니라 내수도 같이 고려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와 수출을 위주로 하는 자유무역지역을 동시에 비교하기는 곤란하지만, 자유무역지역이 적어도 본연의 기능에 충실한지는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¹⁸ 마산에서 3,000~4,000명의 인력이 일본에서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것으로 추산되며, 이들이 국내 다른 업체로 이동하여 관련 산업의 육성에 기여(OECD, 2007. 산업연구원, 2007).

¹⁹ 마산 자유무역지역을 제외한 다른 곳에서는 생산액도 제공하고 있으나, 자유무역지역의 대표적인 사례인 마산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액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생산액은 '집역 원', 수출액은 '백만 달러' 단위로 제공되고 있어 환율을 고려해야 하므로 수출액으로 비교함.

〈표 2-6〉 통계자료 제공여부

구분	입주업체 (a)	가동업체 (b)	고용인원 (c)	분양/임대 대상면적(d)	총 지정면적 (e)	수출액 (g)
산업단지	O	O	O	O	O	O
마산FTZ	O	X	O	X	O	O
군산FTZ	O	O	O	O	O	O
대불FTZ	O	O	O	X	O	O
동해FTZ	O	O	O	X	O	O
울촌FTZ	O	O	O	X	O	O

먼저 각 자유무역지역의 성과를 보기 위해서는 입주업체가 아닌 가동업체를 비교해야 한다. 입주업체는 분양 또는 임대 대상이므로, 실제 운영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마산 자유무역지역에서는 별도로 가동업체를 제공하고 있지 않으나, 마산 자유무역지역의 경우 운영이 본 궤도에 올라 있으므로 대부분의 입주업체가 가동 중임을 짐작할 수 있어, 가동업체 수를 입주업체 수로 대체하여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가동업체 1곳당 수출액은 2000년의 경우 마산 자유무역지역이 약 6,000만 달러로 우리나라 산업단지의 일반적인 수준인 522만 달러보다 11배 정도 많았으며, 2013년에는 격차가 많이 줄어 3배 정도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군산 및 대불 자유무역지역 또한 업체당 수출액은 우리나라 산업단지의 평균 수준보다 2~3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운영이 시작된 지 3년 정도 된 동해와 울촌자유무역지역은 아직 성과가 높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다.

〈표 2-7〉 우리나라 산업단지와 자유무역지역 업체당 수출액

단위: 만 달러

구분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우리나라 산업단지	598	603	488	574	532	484
마산 자유무역지역	5,695	5,731	4,015	3,242	2,332	1,498
군산 자유무역지역				1,337	1,744	1,781
대불 자유무역지역		2,321	1,158	1,344	1,317	1,214
동해 자유무역지역				164	203	300
울촌 자유무역지역				93	209	473

주: 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 외국인투자지역, 일반산업단지, 농공산업단지를 모두 포함
 자료: 각 자유무역지역관리원 홈페이지, 2014.12.3.검색

고용인원 1인당 수출액에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은 편이나, 2013년 기준으로 마산, 군산 및 울춘 자유무역지역은 우리나라 산업단지의 평균 수준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대불 자유무역지역은 1인당 수출액이 우리나라 산업단지의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해 자유무역지역도 평균보다 낮은 편이지만 운영기간이 길지 않음을 감안하면, 대불 자유무역지역을 제외하고는 종업원당 수출액은 산업단지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표 2-8〉 우리나라 산업단지와 자유무역지역 종업원당 수출액

단위: 만 달러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우리나라 산업단지	13	19	21	25	23	21
마산 자유무역지역	31	49	47	44	35	25
군산 자유무역지역			17	19	33	31
대불 자유무역지역		8	11	14	13	14
동해 자유무역지역				17	12	20
울춘 자유무역지역				4	7	27

주: 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 외국인투자지역, 일반산업단지, 농공산업단지를 모두 포함
 자료: 각 자유무역지역관리원 홈페이지, 2014.12.3. 검색

단위면적당 수출액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으나, 산업단지와 자유무역지역의 특징이 크게 달라 사실상 비교하기가 어렵다. 자유무역지역은 주로 정부 재정으로 개발되므로 지정면적의 대부분이 실제로 조성되지만, 산업단지는 민간투자 등이 가능하므로 경제여건 및 기업 수요 등에 의해 지정면적 대비 실제 조성면적이 매우 작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전체 지정면적에서도 도로 및 공원 등 공공부지의 비율이 시기별,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나게 되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분양 또는 임대가능 면적으로 비교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산업단지의 경우 일반적으로 ‘토지’를 분양하기 때문에 분양 가능면적이 전체 지정면적에 비해 크지 않다. 그러나 자유무역지역에서는 토지뿐 아니라 건물을 같이 임대하기 때문에 건물의 층별 임대가능 면적이 더해지므로 전체 지정면적 대비 임대가능면적이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분양 또

는 임대 가능면적으로 비교하게 되면 자유무역지역의 실적이 낮게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다. 즉, 전체 지정면적으로 비교하면 산업단지의 성과가 낮게 나타나고, 분양 또는 임대 가능면적으로 비교하면 자유무역지역의 성과가 낮게 나타나는 문제가 발생하여, 사실상 비교가 불가능하다.

무역의 진흥과 관련해서는 일관성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으나 전반적으로 자유무역지역이 산업단지의 일반적인 수준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3. 국제물류 원활화

우리나라의 항만배후단지는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 평택·당진항, 포항항, 울산항, 마산항 및 목포항 등 8대 항만 인근에 지정되어 있다. 이 중에서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부산항 신항, 광양항, 인천항, 평택·당진항, 포항항 등 5개 지역이며, 항만배후단지뿐 아니라 컨테이너 터미널, 인근 지역이 동시에 지정되어 있다. 이들 5개 항만배후단지 중, 현재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운영되고 있는 곳은 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 광양항 항만배후단지,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등 3개이다.

이들 항만배후단지는 각각 2007년과 2009년부터 운영되기 시작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부지가 제공되고 있으며 거의 매해 기업이 입주하고 있다.²⁰ 입주 기업들은 사업계획서에서도 약 2~3년 정도의 ramp-up 기간을 두고 물류센터가 본궤도에 오를 것이라고 전망하였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세계적인 경제성장 둔화 및 항만배후단지의 대량 공급으로 인한 수급불균형 등으로 인해 성과를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부산항 신항 자유무역지역 중 북권 배후단지의 경우 2007년부터 2013년에 걸쳐 1~4단계로 구분하여 기업들이 입주하였으며, 용동 1-1단계 및 1-2단계에 입주할 기업들을 선정하였다. 용동 2단계 입주 대상기업은 2014년 하반기 중에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광양항 자유무역지역은 현재 동측과 서측 배후단

20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는 2009년 입주기업 선정 이후 2015년 이후에 입주기업을 선정할 예정.

지의 입주기업을 선정하고 있으며, 평택·당진항 자유무역지역 또한 1단계 잔여부지에 대한 입주기업 선정을 다시 준비하고 있다. 인천항 항만배후단지에서는 아암물류2단지 입주기업이 선정되었으며, 울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도 입주기업 선정을 진행 중이다. 인천항과 울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는 자유무역지역으로는 지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에서는 주로 컨테이너 물동량, 고용창출, 외국인투자유치 등 3가지 요소를 중시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부지가 제공되고 기업들이 신규로 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성과를 점검하기는 쉽지 않다. 전년도 대비 증가율로 검토하는 것도, 단위 면적당 또는 업체당 실적을 비교하는 것도 현재로서는 현실을 적시에 반영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2013년 항만배후단지²¹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173만 TEU, 고용은 4,228명, 외국인투자유치 금액은 1,083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2013년 항만배후단지의 처리 물동량은 부산항 신항²², 광양항, 인천항, 평택·당진항 등 네 군데의 컨테이너 물동량 합계인 1,593만 TEU의 약 10.9%에 해당한다. 이 비율은 제2차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상의 경유비율인 20.3% 또는 16.7%²³보다 낮은 편이다. 현재 항만배후단지에 공컨테이너를 일시 장치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므로, 해당 부두의 적컨테이너 물동량 대비 비율로 산정하면 약 13.4% 정도가 된다. 여전히 보수적인 시나리오일 때에 비해서도 낮은 편이지만, 신규로 입주한 기업들이 있음을 감안하면 국제물류의 원활화라는 목표에 어느 정도 다가가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4. 지역개발

지역개발은 2000년에 자유무역지역의 조성 목적에 추가되었다. 이는 당시 IMF 외환위기를 극복한 직후, 신성장 동력발굴과 지역균형 개발에 대한 수요가 높았던 시기에 마산 자유무역지역의 성공사례가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

21 항만자유무역지역이 아니므로, 인천항의 아암물류1단지 실적이 포함.

22 부산항 전체가 아닌 부산항 신항 물동량 실적.

23 부산항 및 광양항의 2015년 경유비율. 중립적 시나리오일 때 20.3%, 보수적 시나리오일 때 16.7%임.

인다. 항만형 및 공항형 자유무역지역은 지역개발에 대한 고려보다는 해당 항만의 원활한 운영 및 인근 산업단지 지원에 대한 고려가 더 중시된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은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들여, 여러 가지 요소²⁴로 평가를 거쳐 자유무역지역을 선정하였다. 2000년대 초반에 지정된 군산, 대불 자유무역지역에서도 지역개발이 일정 부분 고려가 되었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더욱 강조되는 경향이 발생하였다. 2000년대 중반 이후에 지정된 동해, 울춘, 울산, 김제 자유무역지역의 경우 운영기간이 길지 않으므로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3절. 시사점

1. 글로벌 환경변화 대응 미흡

1970년대 도입된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은 글로벌 환경변화에 맞추어서 지속적으로 기능을 변화시키며 진화해 왔으나 최근 급격히 변화하는 무역, 투자패턴, 물류 등의 변화에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국제분업 심화, FTA 확산, 전문물류시장 성장, 투자회귀(re-shoring) 등장, 해외직구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으로 인해 자유무역지역의 입주조건, 관세기능, 통관기능 등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상응한 제도 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2. 자유무역지역 거버넌스 구조 문제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은 기 언급한 것처럼 산업단지형은 산업통상자원부, 항만형은 해양수산부, 공항형은 국토교통부가 관리권자로 관리권이 분산되어 있다. 산업단지형은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이 운영하고 항만·공항형은 지방해양항만청 및 지방공항청이 관리하고 관련 항만공사 및 공항공사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방청과 관련공사의 역할 분담이 되어 있고

²⁴ 개발수요뿐 아니라 지역낙후도,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비 분담의지 등이 포함.

지방청은 허가사항을 공사는 실질적인 운영기관 역할을 하는 아주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다. 복잡한 행정구조는 일부 행정업무의 중복, 관리운영의 비효율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자유무역지역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에게 혼란을 초래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3. 유사제도 중복지역 및 혼재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특구, 외국인투자지역 그리고 최근 지정요청을 하고 있는 해양경제특구 등으로 인해 기능 중복 및 행정력 소모가 큰 구조로 되어 있다. 또한 관련 행정기관들 간의 협력적 운영이 보다는 실적 중심의 투자유치 활동 및 제도 운영으로 인하여 입주기업과 투자희망 기업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는 상황이다.

4. 관세법과의 충돌 빈번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은 기본적으로 관세유예를 통한 가공무역 촉진이 법제도의 기본취지이나 실제로는 관세법이 준용되는 지역으로 관세법으로 인한 비즈니스 활동 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곳이다. 경내관외의 성격으로 관세법의 적용을 배제하나 실제 운영은 관세법을 준용²⁵하고 있어 기업들의 비즈니스 활동에 많은 규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²⁵ 한국무역협회, 『자유무역지역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 연구』, 2014.10, p.12.

제 3 장 글로벌 여건변화와 자유무역지역 영향

제1절. 글로벌 경제 및 물류 환경변화

1. 자유무역 확대와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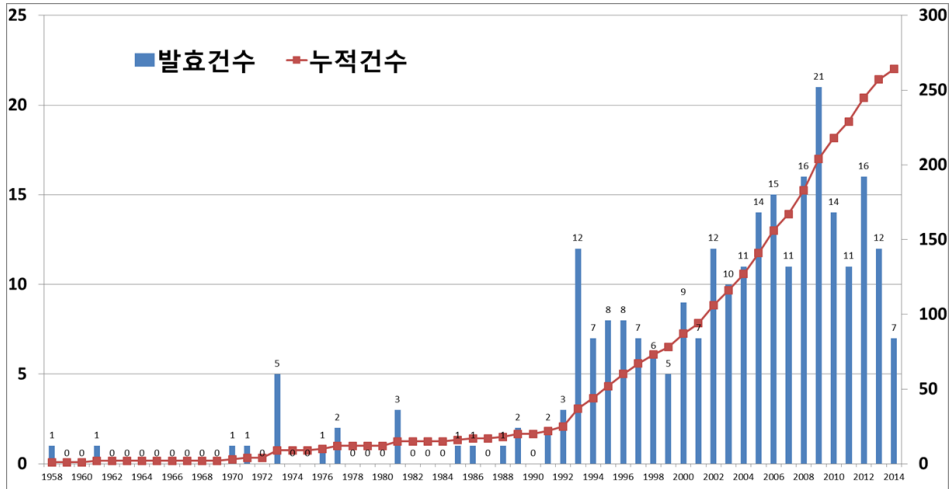
2000년대 이후 경제 및 물류 트렌드를 언급할 때 빠지지 않을 뿐 아니라 대부분 가장 먼저 이야기 되는 것이 바로 자유무역 확대와 다국적 기업의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강화이다. 1995년 WTO 출범을 계기로 자유무역에 대한 물결이 더욱 거세졌으며,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장을 개방하겠다는 WTO의 목표 달성이 요원해지자, 소규모 지역 간 또는 양자 간 협정을 통한 제한적인 자유무역 확대가 시도되었다.

최초의 FTA로는 1958년에 발효된 EC Treaty이며²⁶, 이후 유럽 위주로 FTA가 가끔 체결되었으나 세계적으로 확산되지는 못하였다. 이후 1990년대에 들어서부터 본격적으로 FTA가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1992년에 아세안 자유무역지역지대(ASEAN Free Trade Area: AFTA) 설립 확인 및 상품협정이 발효되었고, 1993년에는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와 신생 독립국가들 간의 FTA가 13건이 발효되었다. 이후 1994년에는 북미자유무역협정(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이 발효되었다.

1990년대 들어 매년 한자리수의 FTA가 체결되었으며, 2000년 9건, 2001년 7건을 거쳐, 2002년 이후는 매년 10건 이상씩 FTA가 체결되고 있다. 2014년 11월 현재, 세계에서 발효된 RTA는 264건에 달하고 있으며, 홍콩-칠레 간 FTA가 10월 9일에 발효되어 가장 최근에 발효된 FTA이다.

²⁶ 유럽 경제 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 1957년 3월 25일 로마에서 체결.

〈그림 3-1〉 세계 지역무역협정 발효 현황



주: 1) 상품협정과 서비스협정 등으로 각각 구분되어 발효된 경우, 보다 늦게 발효된 연도를 기준으로 작성 (예 : CARICOM의 경우 상품협정은 1973년에, 서비스협정은 2002년에 발효되어, 2002년에 발효된 것으로 구분)

2) EU와 우크라이나 간 FTA는 2014년 7월 27일에 체결되었으나, 발효일이 나와 있지 않아 포함하지 않았음

자료: www.wto.org > trade topics > regional trade agreements > RTA database > List of all RTAs, (접속일 2014.11.3.)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기 위하여 2004년 칠레와의 FTA 체결을 시작으로 동시다발적인 FTA 협정 체결을 시도하였다. 이후 아세안과의 FTA는 2007년에 발효되었으며, 인도와의 CEPA는 2010년, EU와의 FTA가 2011년 잠정발효, 미국과의 FTA가 2012년 발효되었다.²⁷ 콜롬비아, 호주, 캐나다와는 FTA가 타결되어 발효를 앞두고 있으며, 한-중, 한-중-일, 한-인도네시아, 한-베트남,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한-뉴질랜드 등의 FTA는 협상 중에 있다.

EU는 그동안 지중해권, 과거 식민지 지역 등과의 FTA 체결 경향에서 벗어나, 한국, 페루, 콜롬비아, 중미 국가 등으로 협상 대상국의 범위를 점차 확대하는 추세에 있다. 미국은 NAFTA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호주, 칠레, 싱가포르 등 현재 총 20개국과 FTA가 발효 중이다. 또한 미국은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²⁷ 이외에 싱가포르, EFTA, 페루, 터키 등과의 FTA가 발효 중.

(Trans 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TPP)²⁸ 가입을 위해 협상 중에 있다.

중국은 홍콩, 마카오와의 CEPA²⁹를 비롯하여 ASEAN, 칠레, 파키스탄, 뉴질랜드, 싱가포르, 페루, 코스타리카, 아이슬란드, 스위스 등과의 FTA를 발효 중이며, 대만과 ECFA도 체결한 바 있다. 또한 GCG, 호주, 노르웨이, 스리랑카 및 RCEP 등에서 FTA 협상을 진행 중이며, 2012년 5월 한국과 FTA 협상을 개시하여 속도를 내고 있다.

일본은 싱가포르, 멕시코, 말레이시아, 칠레, 태국,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필리핀, ASEAN, 스위스, 베트남, 인도, 페루, 호주와의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14건이 발효 중에 있다. 한국과 중국은 현재 RCEP에서만 협상 중이며 TPP에는 관심표명에 그치고 있는 데 반해, 일본은 RCEP와 TPP 모든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FTA를 매개로 상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고, 서비스 산업에 대한 진입규제가 완화되면서 다국적 기업들의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산업의 수직적, 수평적 국제분업이 더욱 확대됨에 따라 글로벌 물류시장의 규모가 경제성장률보다 빠르게 증가할 뿐 아니라, 공항 및 항만 등 국제물류거점의 중요도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시되기 전까지 이러한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 아시아 역내 시장 중요성 증대

2000년대 초반 골드만삭스가 BRICs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래 경제를 비롯한 각종 분야에서 신흥국들의 영향력은 증대되고 있다. 특히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계기로 발생한 글로벌 경제위기로 미국이 위기를 겪고 이후 2010년 유럽 재정위기로 EU가 경기침체에 빠지게 되자, 수출이 감소하여 신흥국도 같이 경기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를 떨치고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은 경제성장률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다.

²⁸ 브루나이, 칠레, 뉴질랜드, 싱가포르가 가입국이며, 미국,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캐나다, 일본 등이 협상 중에 있음.

²⁹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국가별 제조업 상위 15개국 중 2011년 기준으로 아시아에 5개국이 분포해 있다.

〈표 3-1〉 제조업 국가 순위

	1980	1990	2000	2011
1	미국	미국	미국	중국
2	일본	일본	일본	미국
3	독일	독일	중국	일본
4	중국	이탈리아	독일	독일
5	프랑스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6	이탈리아	영국	이탈리아	대한민국
7	영국	중국	프랑스	브라질
8	브라질	러시아	대한민국	러시아
9	스페인	스페인	멕시코	프랑스
10	멕시코	브라질	캐나다	인도
11	캐나다	캐나다	브라질	영국
12	호주	대한민국	스페인	멕시코
13	네덜란드	멕시코	인도	인도네시아
14	인도	터키	터키	스페인
15	스위스	인도	러시아	캐나다

주: 중국의 1980, 1990, 2000년 자료는 “광업, 제조 및 공익사업(Mining, Manufacturing and Utilities)이며, 소비에트연방 자료는 포함되지 않음

자료: ADB, Beyond Factory Asia, 2013, p.6

중국은 1980년 4위, 1990년 7위, 2000년 3위에 이어, 2011년에는 1위로 올라섰으며, 일본은 1980년, 1990년, 2000년까지 2위를 지키다, 2011년에 3위로 내려앉았다. 1980년, 1990년, 2000년 모두 1위는 미국이었으나, 2011년에 중국이 1위로 등극하며, 미국과 일본이 각각 순위가 한 단계씩 낮아졌다.

우리나라는 1990년에 12위로 순위에 진입하였으며, 이후 8위와 6위로 순위가 높아지고 있다. 인도 또한 2011년에는 10위권에 진입하였으며, 인도네시아가 2011년에 처음으로 13위로 순위에 진입하였다. 비단 많은 인구, 넓은 영토 및 자원보유 등 막대한 잠재력을 언급하지 않아도 이미 제조업에서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및 남아시아 지역이 중심으로 부각하고 있는 것이다.

제조업의 성장을 통해 수입이 발생함에 따라, 글로벌 중산층에서 아시아의 비중이 2020년에는 42%, 2030년에는 59%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생산과 소비가 아시아 역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발맞추어 동남아시아 및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역내 국가 간 협력 필요성을 인지하고 시장 통합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다양한 협력채널을 이끌어가고 있어 아시아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할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지금까지는 유럽, 미국, 일본 등으로부터는 투자를 유치하고,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는 우리나라가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패턴이 대부분이었다면, 앞으로는 중국 및 동남아시아 등으로부터의 투자유치도 한 축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GDP 성장률, 무역규모 성장률이 예년에 비해 증가하는 등 세계경제가 점차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외국인직접투자는 다른 거시지표와 달리 다소 느린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3년에는 2012년 수준인 1.45조 달러에 머물고, 2015년에는 세계금융위기 이전 수준인 1.8조 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나 세계금융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성, 유럽연합(EU)의 성장률 둔화 등에 따라 성장을 낙관하기 곤란한 상황이다. 이러한 흐름과 함께 우리나라 경제 성장 둔화 등이 맞물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액이나 투자액의 누적규모 또한 세계평균에 미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넓은 경제영토(FTA)를 FDI와 연결할 수 있도록 무역·투자·기술을 연계하는 글로벌 네트워킹을 강화하여 세계경제와의 깊은 통합을 이룰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세계적인 비즈니스 환경 구축, 글로벌 생산요소의 적절한 활용, 능동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방추진 등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글로벌 공급사슬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고, 역동적 글로벌 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

3. 신기술 발전

RFID, 사물인터넷 및 3D 프린터 등 신기술의 발전 또한 물류 전반 및 자유무역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RFID 기술을 바탕으로 물품에 태그와 리더기를 부착하면, 사물과 접촉하지 않고도 5m 떨어진 위치에서도 그 사물의 정보를 읽을 수 있으며, 상자 안에 들어 있는 태그의 정보도 읽을 수 있어 유통과정에서의 비용과 시간을 효과적으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여기에 사물인터넷이 결합이 되면, 고객 및 화주입장에서는 물류거점인 노드(nod)에서의 정보 뿐 아니라 이동하고 있는 상황 즉 네트워크(network)에서의 정보도 얻을 수 있게 된다. RFID 및 사물인터넷 등은 인건비 절감, 재고절감, 오발송 감소로 인한 물류비용 절감, 효율적 용기관리로 인한 비용절감 및 적재율 향상으로 인한 물류비용 절감 등과 함께 설비 생산성 향상, 신속한 배달로 인한 고객 서비스 향상, 오발송 감소로 인한 고객 서비스 향상 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필요한 물품을 직접 인쇄해서 사용할 수 있는 3D 프린터가 상용화되면, 물품에 대한 조립단계가 생략되므로 인건비 및 원재료 절감, 물품의 유통 비용 절감 등이 가능해지게 된다. 이로 인해 유럽지역에서 직접 물품을 생산하면서도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으므로, 생산지가 소비지 인근에 위치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즉, 원재료를 가져와서 저렴한 노동비를 통해 동남아시아에서 생산한 물품을 다시 유럽이나 미국까지 수송하는 현재의 패턴은 사라질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전통적인 형태의 물류시장은 성장에 제한을 받게 되고, 3D 프린터의 부품 및 관련 원자재 등을 운송하는 새로운 물류수요가 발생하게 될 거라는 전망도 있다.

아직까지 RFID, 사물인터넷 및 3D 프린터 등 신기술은 이용 가격 등 경제적인 문제뿐 아니라 속도, 정밀성 및 안전성 확보 등 기술적인 문제에서도 미흡한 부분이 있어 실제 적용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러한 신기술의 확산으로 인해 신규로 발생하는 물류의 이동루트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따라 우리나라의 항만 및 자유무역지역의 명암이 엇갈리게 될 수 있다. 가령 아프리카에서 원재료를 수송하여 현재의 주류 소비시장인 유럽과 미국에서 직접 생산하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간선향로에서 빗겨나게 될 것이다. 다만,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이 신흥 소비시장으로 성장하고 있어 이로 인한 새로운 물류 기회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4. 제도 변경

동북아 복합운송, 친환경 운송 확대 및 남북통일 등의 제도 및 규제 변경 또한 중요한 여건변화 중 하나이다.

동북아 복합운송은 피견인 트레일러의 상호주행에 한해서 적용되고 있다. 한국과 중국 간에는 2010년 인천-위해 항로를 시작으로 현재는 우리나라의 인천, 평택, 군산항 등의 3개 항만과 중국 산둥성의威海, 청도, 일조, 석도, 용안, 연태항 및 강소성의 연운항 등 7개 항만 간에 복합운송이 가능하다.³⁰ 환적작업 없이 화물을 운반하여, 강소성 내 물량이 많은 반도체 부품 등 충격에 약한 화물의 파손 위험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현재의 복합운송이 페리항로를 이용하고 있어 여객과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통관 등에 소요되는 시간이 절약된다는 점도 장점으로 인지되고 있다. 한국과 일본 간에는 현재 우리나라의 부산항과 일본의 시모노세키항 구간의 자동차 부품에 대해 특정사업자를 지정하여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있으며, 향후 항만 및 품목 확대, 본 사업으로 확대 등을 논의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 또한 상하이와 시모노세키항 구간에 대한 복합운송을 논의하고 있다.

복합운송은 상대국 간의 자동차 안전도 적합성 심사, 도로 규약, 자동차 보험 등의 이슈가 있어 적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나, 앞으로 FTA 체결 등으로 동북아 3국간의 교역이 증가하고 자유무역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점점 중요성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증대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것 또한 물류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직접적인 규제 등으로 인한 물류시설을 친환경 장비로 업그레이드 하게 되는 경우뿐 아니라 탄소발자국, 로컬푸드 운동의 영향 등으로 인해 환적물량 감소 및 직접운송 증대 등의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이슈는 우리나라가 현재의 분단상태로 머무는 경우, 즉, 인구 및 내수시장이 적기 때문에 국제 교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경제구조인 소국 개방경제를 전제한 다음에 영향력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논해왔다. 그러나 통일이 될 경우, 우리나라는 향후 인구 1억 명 이상의 내수시장을 보유한 외부의 영향력에 덜 흔들리는 경제구조를 보유할 수 있게

³⁰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4.2.28.

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국제거점이 공항과 항만에 한정되지 않고 Dry Port 등 내륙으로 확장되게 된다. 이에 따른 물류거점의 위치 조정, 한중 간 복합운송에 대한 새로운 시각에서의 접근 등이 필요하게 되며, 내수시장이 작기 때문에 선택할 수밖에 없는 자유무역지역의 중계가공 Biz Model 이외에 중국과 같은 수입 위주의 자유무역지역 지정·운영도 가능하다.

제2절. 우리나라 외국인투자유치 여건 변화

1. 외국인직접투자 개요

한국은 역사적으로 경제개발 재원을 차관에 의존함에 따라 외국인투자의 경제성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 않았고, 오히려 경제개발 초기단계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이하 FDI)와 해외직접투자 등 대내외 직접투자에 폐쇄적인 입장이었다. 이는 FDI가 기술파급효과 측면에서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산업기반 및 기업경쟁력이 미흡한 상황에서 외국기업의 진입에 대하여 국내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더불어 정부 입장에서 국내 자금흐름을 통제하는 데 있어서 차관형태가 보다 용이하다는 점 또한 고려되었다.³¹ 최초의 외국인직접투자는 1962년 미국 켐텍스(Chemtex)사가 한국나이龙的 필라멘트 나이롱사 사업에 57만 9천 달러의 자본을 출자한 것이다. 그러나 1980년대 초반까지는 외국인직접투자가 제한되었으며, 1973년 ‘외국인 투자 비율조정에 관한 원칙’을 마련하여 외국기업의 100% 직접투자 보다는 합작투자를 장려한 바 있다.

그러나 1980년대 주요 개발도상국의 외채위기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점차 차관의존도를 줄이고 외국인직접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전환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1984년 7월 1일 외국인투자 가능 업종을 허용업종 열거방식(positive system)에서 금지·제한 업종 열거방식(negative list)으로 전환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외국인투자가 가능한 업종이 확대되었다. 더불어, 1991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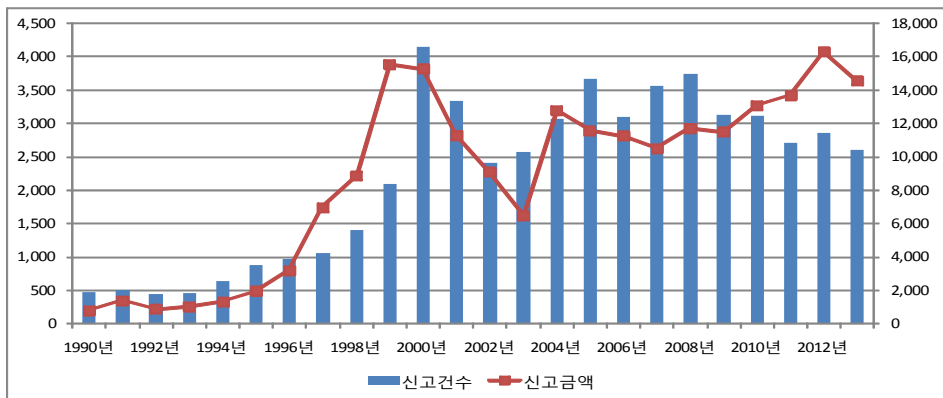
³¹ 한국경제 60년사 편찬위원회(2010), pp. 125~136.

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신고제를 도입하였고, 1992년에는 원칙신고, 예외 인가 제로 전환하는 등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각종 규정을 정비해 왔다. 특히, 1996년 12월에는 OECD 가입을 계기로 기존의 「외자도입법」을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는 등 외국인투자에 대한 자유화 수준을 선진국 수준에 걸맞게 개혁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 정책은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크게 변화되었다. 1998년 적극적으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개방 업종을 보다 확대하였으며,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더불어 적대적 M&A를 허용하고, 부동산시장에 대한 전면 개방 또한 실시하였다. 또한 적극적인 외자유치를 위해서 영국 및 말레이시아 등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외국인투자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외국인투자자에게 투자상담에서부터 합작업체의 알선, 투자관련 민원대행, 생활정착지원에 이르기까지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실제로 한국의 연도별 FDI 유입 추이를 살펴보면, 외환위기 이후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00년대 초반 주요 선진국의 경기침체라는 대외적 요인으로 인하여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기도 하였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 대략 120억 달러 전후 수준으로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2〉 한국 FDI 유입(Inflow) 연도별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건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 투자통계』 (접속일: 2014년 4월 25일)

2.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1) 지자체별 현황

한편 우리나라 FDI 유치의 지자체별 실적을 비교해 보면, 최근 5년을 기준으로 수도권 3개 지역에 전체 FDI 신고액의 50% 이상이 집중되고 있으며, 특히 서울시 유치규모만 3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가 0.5%로 가장 낮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광역시를 제외하면 강원도가 1.5%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즉, 전반적으로 수도권으로의 쏠림현상이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전라남북도 및 강원도가 유치실적 측면에서 상당히 취약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2〉 지자체별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실적

단위: 백만 달러

	2009	2010	2011	2012	2013	5년 합계	
						금액	비중
전체	11,484	13,071	13,673	16,286	14,548	69,062	100%
수도권	6,640	4,855	6,180	10,552	9,773	38,000	55.0%
서울특별시	4,397	2,677	4,114	5,905	6,145	23,238	33.6%
경기도	1,323	1,664	1,426	1,217	1,617	7,247	10.5%
인천광역시	920	514	640	3,430	2,011	7,515	10.9%
수도권 외	3,949	5,707	7,493	5,734	4,775	27,658	40.0%
부산광역시	156	251	360	458	207	1,432	2.1%
대구광역시	42	71	133	199	225	670	1.0%
광주광역시	7	75	122	42	130	376	0.5%
대전광역시	204	359	124	78	99	864	1.3%
울산광역시	447	245	656	294	46	1,688	2.4%
강원도	24	50	149	477	343	1,043	1.5%
충청북도	953	200	595	143	76	1,967	2.8%
충청남도	209	667	642	561	541	2,620	3.8%
전라북도	244	276	223	43	344	1,130	1.6%
전라남도	499	219	717	359	104	1,898	2.7%

〈표 3-2〉 지자체별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실적(계속)

단위: 백만 달러

	2009	2010	2011	2012	2013	5년 합계	
						금액	비중
경상북도	446	2,706	810	300	139	4,401	6.4%
경상남도	296	197	123	402	258	1,276	1.8%
제주도	421	390	475	364	927	2,577	3.7%
미정	895	2,509	2,363	2,013	1,229	9,009	13.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2014) 「2013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지식경제부(2013) 「2012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지식경제부(2012) 「2011년 외국인직접투자동향」

2) 지역별 · 투자형태별 현황

우리나라의 주요 국가별 FDI 유입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과 일본에 전체 투자유치액의 50% 이상이 집중되어 있으며, 네덜란드, 영국, 독일 등 유럽권의 외국인 투자 유입 또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우리의 해외직접투자(Out-bound FDI)가 중국 등에 비용절감의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과 대조적이다.

〈표 3-3〉 국가별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실적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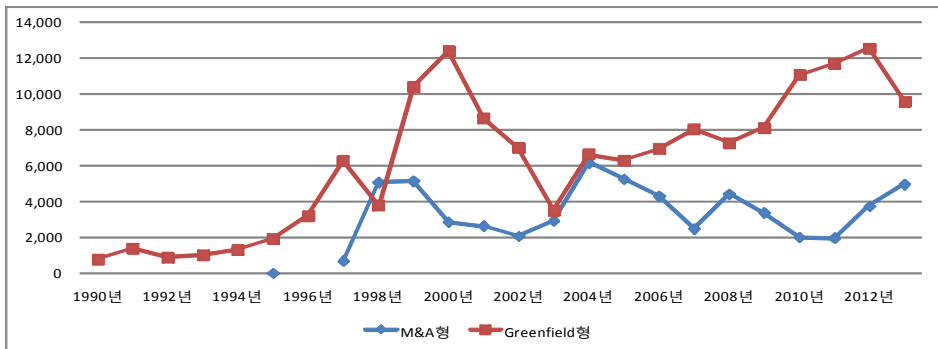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	5년 총액	
						금액	대세계비중
일본	1,934	2,083	2,289	4,542	2,690	13,537	32.1%
미국	1,486	1,975	2,372	3,674	3,525	13,032	21.3%
네덜란드	1,898	1,185	1,011	635	618	5,346	13.4%
홍콩	773	93	572	1,670	976	4,085	7.3%
영국	1,953	649	919	361	116	3,997	6.9%
싱가포르	436	773	611	1,405	431	3,657	5.5%
독일	570	268	1,471	408	360	3,077	4.5%
중국	160	414	651	727	481	2,433	4.4%
캐나다	303	480	739	394	388	2,304	4.2%
프랑스	110	160	236	222	530	1,257	3.6%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 투자통계』 (접속일: 2014년 4월 25일)

또한 투자형태별로 우리나라의 연도별 FDI 유치규모를 살펴보면, Greenfield형 FDI의 경우 전체 FDI 유치액 추이와 마찬가지로 2000~2004년간 급격히 하락하였으나, 이후의 기간은 상대적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M&A형 FDI³²의 경우 이와는 상당히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다. 2000년대 초반 Greenfield형 FDI가 급격하기 축소되던 때에 M&A형 FDI는 이에 비해 다소 완만한 축소추세를 보였으며, 특히 2004년 이후부터 최근까지의 추세를 보면, Greenfield형과 완전히 반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최근의 전체 FDI의 완만한 증가추세는 Greenfield형 FDI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M&A형 FDI의 감소 및 정체를 보이는데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3〉 투자형태별 외국인투자 유치 실적

단위: 백만 달러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 투자통계』 (접속일: 2014년 4월 2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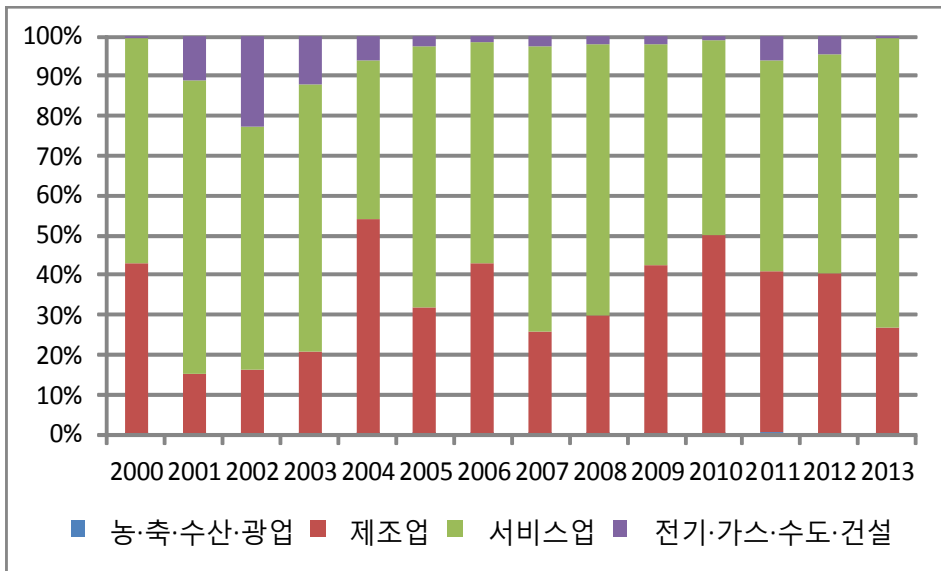
3) 산업별 유치 현황

우리나라의 산업별 FDI를 투자형태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우선 Greenfield형이나 M&A형 모두 서비스 산업이 전체 FDI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2000년 이후 두 형태별 FDI의 산업별 구성에는

³² 1990년대 중반까지 금지하였던 M&A형 FDI가 1997년부터 부분적으로 허용되었으며, 외환위기 이후 M&A형 투자에 대한 제한이 크게 완화되면서 1998년에는 적대적 M&A 또한 허용.

전체적으로 어떠한 추세적 특성을 발견하기는 어려우나, M&A형 FDI의 경우는 2000년대 후반 서비스산업 분야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 바 있다.

〈그림 3-4〉 Greenfield형 FDI 산업별 구성



자료: 각 자유무역지역관리원 홈페이지, 2014.12.3.검색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Greenfield형 FDI의 경우 제조업에서는 특히 전기·전자 산업과 운송용 기계분야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서비스업에서는 금융·보험, 부동산·임대 부문의 유치실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최근 3년간은 비즈니스 서비스 분야의 FDI 또한 상당히 증가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표 3-4〉 Greenfield형 FDI 산업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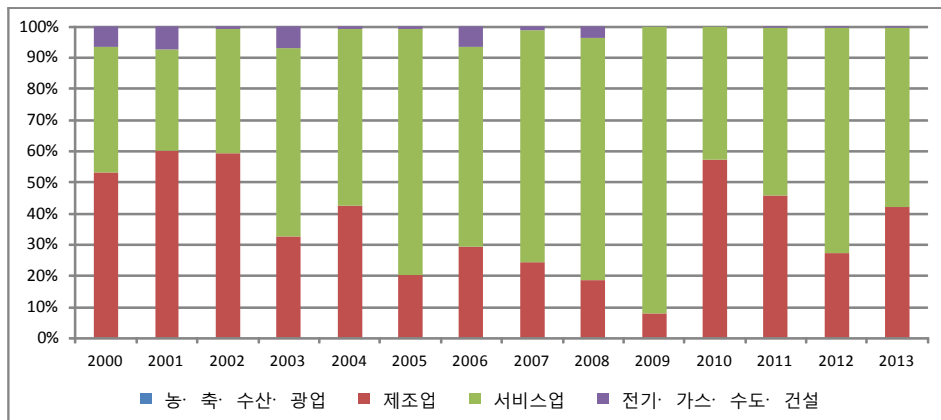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전체 결과	12,339,465	6,297,394	11,056,102	11,702,416	12,537,274	9,569,427
농·축·수산·광업	3,497	401	3,889	53,130	4,237	3,129
제조업	5,345,081	2,009,105	5,502,814	4,757,692	5,064,873	2,559,370

〈표 3-4〉 Greenfield형 FDI 산업별 추이(계속)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식품	48,419	33,437	100,312	186,198	144,137	132,134
섬유 · 직물 · 의류	76,376	16,459	73,283	8,154	203,757	5,912
제지 · 목재	50,443	79,389	25,188	2,320	1,562	3,661
화학	730,622	204,428	905,168	1,594,442	1,250,168	707,995
의약	75,235	5,781	280,203	89,897	81,104	204,901
비금속광물	370,325	304,195	109,882	146,132	420,559	462,828
금속	241,278	20,050	104,174	302,537	330,114	41,803
기계 · 장비	1,588,380	101,412	256,286	432,087	259,005	344,554
전기 · 전자	1,673,553	740,112	1,082,469	1,628,669	957,919	332,861
운송용기계	477,904	432,661	2,449,289	231,855	1,175,715	250,234
기타제조	32,565	71,183	106,569	135,300	180,833	42,494
서비스업	6,981,603	4,149,883	5,443,289	6,207,582	6,888,804	6,966,707
도 · 소매(유통)	1,976,713	430,720	931,154	1,289,641	805,083	575,562
음식 · 숙박	379,024	306,824	57,927	118,501	908,119	935,995
운수 · 창고(물류)	289,637	22,878	193,048	134,553	56,836	91,526
통신	176,001	569,909	21,387	1,003	21,843	14,591
금융 · 보험	1,339,473	1,222,152	690,640	1,482,157	1,472,294	1,115,495
부동산 · 임대	791,114	966,914	2,596,033	1,372,772	1,750,662	2,549,390
비즈니스서비스업	549,286	325,274	514,415	1,077,528	1,577,528	1,537,738
문화 · 오락	1,236,778	284,287	110,070	460,342	91,282	80,545
공공 · 기타서비스	263,576	30,924	328,615	271,085	215,166	65,865
전기 · 가스 · 수도 · 건설	69,284	138,005	106,110	684,013	569,361	40,222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 투자통계』 (접속일: 2014년 4월 25일)

〈그림 3-5〉 M&A형 FDI 산업별 구성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 투자통계』 (접속일: 2014년 4월 25일)

M&A형 FDI의 경우 Greenfield형에 비해 연도별 유치실적에 편차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으나, 평균적으로 볼 때 제조업 부문은 Greenfield형 FDI와 비교적 유사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 전기·전자, 운송용기계 부문의 FDI 유치 비중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서비스업의 경우 금융·보험의 비중은 높으나 부동산·임대 부문의 유치규모는 크지 않은 대신 비즈니스 서비스업 분야의 FDI 유치 규모가 상대적으로 더 큰 수치를 보이고 있다.

〈표 3-5〉 M&A형 FDI 산업별 추이

단위: 천 달러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전체 결과	2,865,414	5,288,150	2,015,361	1,970,673	3,748,731	4,978,717
농·축·수산·광업	150	2604	95	3,082		3,100
제조업	1,531,891	1,088,926	1,155,729	889,790	1,082,514	2,088,518
식품	35,918	288,883	200	804	60,172	985
섬유·직물·의류	20,008	12,054	434	2,286	112,415	44,587
제지·목재	25,045	5,357			220	500
화학	47,794	73,343	21,873	236,986	35,405	158,526
의약	17,782	2,191	418,100	380		304,785
비금속광물	15,895	71,318	136	188	53,523	513,427
금속	61,215	8,798	47,352	379,136	189,392	15,156
기계·장비	19,982	24,989	150,985	70,567	83,460	48,407
전기·전자	902,437	302,805	479,105	117,289	349,207	161,303
운송용기계	361,688	273,441	34,097	91,967	88,691	840,480
기타제조	24,217	787	3,438	207	60,028	430
서비스업	1,147,776	4,151,088	858,944	1,061,810	2,702,735	2,881,143
도·소매(유통)	53,480	376,468	33,586	453,315	431,464	81,525
음식·숙박	90,046	134	87	8,095		1,619
운수·창고(물류)	10,502	340,680	3,955	7,979	8,789	6,742
통신	14,982	67,980		331	11,304	1,786
금융·보험	585,857	2,697,395	289,320	259,756	713,796	1,809,533
부동산·임대	158,959	2,280	90,486	101,426	2,079	988
비즈니스서비스업	229,480	688,357	437,319	213,280	1,529,477	975,325
문화·오락	1,389	24,808	45	8,972	5,780	749
공공·기타서비스	90	3,087	24,137	8,677	44	2,855
전기·가스·수도·건설	185,597	45,525	588	6,011	13,482	5,9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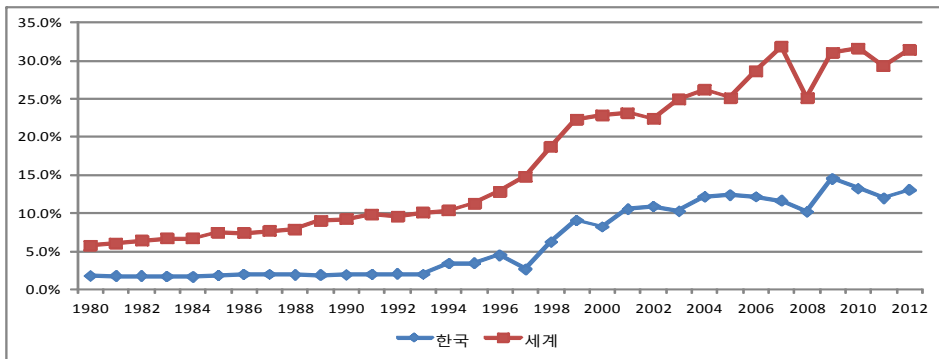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 투자통계』 (접속일: 2014년 4월 25일)

3. 한국 투자유치 여건의 평가 및 시사점

1) 투자유치 잠재력 및 성과 평가: UNCTAD

FDI의 절대적 규모는 상당부분 증가하였지만 우리나라의 FDI 유치실적은 투자 잠재력 수준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먼저, 우리나라의 GDP 대비 FDI Stock 비중은 1990년대 말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아직 10%대 초반에 머물고 있으며, 전 세계 평균 또한 최근 30% 수준까지 확대된 점을 고려할 때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판단된다.

〈그림 3-6〉 우리나라의 GDP 대비 FDI Stock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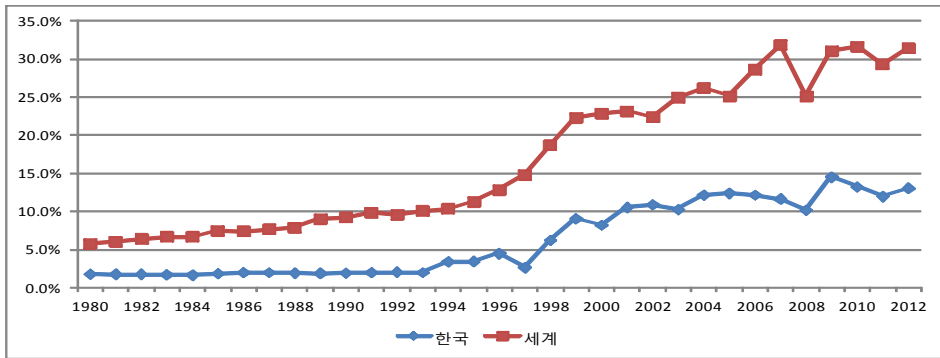
자료: UNCTAD(unctadstat.unctad.org) (검색일: 2014년 5월 23일)

우리나라 외국인투자 유치의 상대적인 부진에 대해서는 UNCTAD의 FDI 유치잠재력 평가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UNCTAD는 FDI 유치 잠재력 지수(FDI Potential Index)³³ 및 FDI 유치지수(FDI Attraction Index)를 비교함으로써 국가별 FDI 성과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다. UNCTAD(2013)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FDI 유입 잠재력 지수에 비해 FDI 유입 지수가 미흡한 'Below expectation' 그룹으로 분류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우리와 비슷한 'Below

³³ 1인당 GDP, 지난 10년간 GDP 성장률, GDP에서의 수출 비율 등을 비롯하여 외국인에게 경제적으로 유리한 요소라고 판단되는 12개 지표의 평균을 산출하여 도출되며, 외국인직접투자의 잠재력을 비교하기 위한 지표로 제시된다. 세부 요인은 UNCTAD(2013), 「World Investment Report 2012」, p. 30 참조.

expectation' 그룹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중국은 유입 잠재력과 유입지수가 비슷한 'In line with expectation'으로 분류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영국, 러시아 등과 더불어 FDI 유입 잠재력과 유입지수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3-7〉 한국의 투자유입 잠재력 및 투자유입 지수



자료: UNCTAD(2012), p.32

2) 한국의 투자유치 여건

일반적으로 투자유치 결정요인에 대한 논의는 FDI의 형태 및 발생동기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나, 중요한 요인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이론적인 검토가 이루어져 왔다. 현재까지의 논의에 기초해보면 일반적으로 FDI는 발생동기에 따라 수평적·수직적 FDI로 구분하거나, 입지결정요인에 따라 시장지향형·자원지향형·효율성지향형 FDI로 구분할 수 있다. 물론 FDI 결정요인에 대하여 다양한 이론적 검토 및 실증분석 작업 등이 이루어져 왔으나, UNCTAD는 이러한 논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시한 바 있다. UNCTAD(1998)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FDI 유치결정에 있어 중요한 다양한 요인은 먼저 국가정책 요인, 경제변수, 비즈니스 여건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한 바 있다. 먼저, 정책차원의 변수로는 정치적·사회적 안정성, 시장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정책, 민영화 정책 등의 요인을 제시하였다. 특히 경제변수의 경우 FDI의 형태에 따라 중요한 요인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았다. 즉, 시

장지향형 FDI의 경우는 시장의 규모, 1인당 소득수준, 경제성장률 등의 여건이 중요하고, 자원이향형 FDI는 천연자원 부존량, 노동력 조달 여건, 인프라 여건 등이, 효율지향형 FDI의 경우는 원자재 투입비용이나 FTA 가입국 여부 등이 중요하다고 제시한 바 있다.

〈표 3-6〉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결정요인

구 분		내 용(예)
정책차원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안전성 시장구조와 기능에 대한 정책(특히, 경쟁 및 기업 인수/합병 정책 등), 외국인 직접투자에 관한 국제적 합의, 민영화 정책, 무역정책(관세 등), 세금정책
경제적 요인	시장지향형	시장크기 및 1인당 수입, 시장성장률, 지역 및 글로벌 시장으로의 접근성, 국가특유의 소비자 선호, 시장의 구조
	자원/ 자산지향형	천연자원, 저임금의 비숙련 노동자, 숙련 노동자, 기술적, 혁신적 자산, 사회기반시설(항구, 철도, 전력, 통신 등)
	효율성 지향형	자원, 자산, 여타 투입비용, 지역통합 협정국가
사업추진환경		투자촉진, 투자 인센티브, 부패 및 행정적 효율성 등과 관련된 혼란비용, 사회적 주거환경

자료: UNCTAD(1998), p. 91

이러한 이론적 논의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의 FDI 유치 여건은 효율지향형 FDI에 상대적인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한국의 자체 경제규모 및 성장률 측면에서 절대적인 수준은 낮지 않지만, 중국 등 주변국에 비해 비교우위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노동력 조달을 비롯한 자원부존 여건 또한 질적 수준에서는 어느 정도 높게 평가되더라도, 현시점에서 주변국에 비해 높은 경쟁력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최근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동시다발적 FTA 추진전략은 이러한 부분의 강점을 더욱 확대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국내시장 측면에서 한국의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강점으로 제기되는 것은 전자, 자동차, 화학, 조선 등에 글로벌 선두기업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현재 국내기업들은 비용절감 및 효율성 추구를 위해서 해외투자

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나, 외국인투자유치의 경우 대부분 국내의 시장과 기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Invest Korea(2012)는 국내기업과 연관된 외국인직접투자 사례로 진공펌프 전문기업 에드워드社와 반도체 소재업체인 미국 ATMI社의 유치사례를 들고 있다. 에드워드社의 경우는 삼성과 하이닉스에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2011년 생산설비를 영국에서 천안으로 이전하였으며, ATMI社의 경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반도체소재를 공급하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에 공장을 설립한 바 있다. 또한 인천 송도지역의 경우 삼성의 투자가 바이오 기업의 투자유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실제로 서비스 분야 외의 제조업 투자가 전기·전자 산업과 운송용기계 산업 부문에 집중되어 있는 점 또한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Invest Korea가 매년 외국인투자기업 경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경영환경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투자유치 매력요인으로 제기되는 요인은 우수 인력, 내수구매력 및 안정된 사회구조 등이다. 또한 Invest Korea(2012)가 기존의 논의를 바탕으로 제시하고 있는 우리나라 투자환경의 주요 강점으로는 ‘선도산업(LCD, 반도체, 조선, 자동차 등)의 기술경쟁력’, ‘내수시장의 구매력 및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대기업’, ‘중국, 일본, 아세안 등의 인접시장과의 FTA체결 등에 따른 수출전진기지 역할’ 등을 들 수 있다.

3) 시사점

(1) 한국의 외자유치 여건 평가

우리나라는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입장으로 전환되었으나, 아직 여타 국가들에 비해 높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이는 한국 내 경제구조가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의존성이 높지 않은 특성을 여전히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는 기본적으로 해당 국가의 시장 및 요소 경쟁력 여건이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으나, 한국의 경우와 같이 경제적으로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실제 투자유치 성과가 낮은 경우가 존재한다. 이는 해당 국가의 정치·경제·사회적 여건 전반에 걸쳐

존재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개방적 정책기조 등 무형적 요인에 기초한다. 다만, 한국의 경우 경제발전과 함께 사업환경에 대한 대외적인 평가 또한 꾸준히 개선되어 왔으며, 홍콩·싱가포르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나 최근에는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의 경우 외국인투자유치를 경제 성장에 활용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은 최근에 와서 본격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각종 외국인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제도정비, 지원정책 수립 등 다양한 노력이 본격화 되어왔다. 따라서 개방정책을 경제정책의 기조로 삼고 있는 여타 국가들에 비해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경제전반의 여건이 아직은 완전히 형성되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러한 요인은 단순히 일련의 정책적 노력에 따라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기업 차원에서의 변화가 동반되어야 가능한 부분이다. 즉, 국가와 기업 차원에서 외자유치 등에 대한 보다 개방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이를 통해 외국인투자가 보다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경우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FDI 성과지수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또한 한국의 투자유치정책 차원에서도 전환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대외개방도는 급속하게 진행되어왔으며, 이 과정에서 외국인투자 유치는 국내시장에 대한 파급효과 평가에 기초한 전략적 유치라기보다는 규모의 확대 측면에서 접근된 성향이 다소 강하다. 이에 따라 외자유치의 긍정적 요인뿐만 아니라 부정적 요인 또한 다양하게 제기되어왔다. 대외적으로도 아일랜드 등 외자유치에 대한 지나친 의존정책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사례 또한 목격된 바 있다. 따라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는 양적 확대 보다는 기술이전, 고용효과 등 전략적 목적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중국 등 신흥국에 비해 제한적인 시장 여건 및 요소(토지, 노동) 경쟁력, 홍콩·싱가포르 등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는 개방적 경제환경 등을 고려할 때, 단기간 내 FDI 유치성과가 크게 확대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외국인투자유치의 전방위적인 활성화 전략이 아니라 우리의 상대적인 경쟁력이 미흡한 서비스산업 및 기타 신성장산업 육성, 더불어 국내 고용촉진이라는 정책적 목적에 따라 전략적·체계적인 유치가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기존의 조세 중심의 경직적인 외국인투자 지원제도가 아니라 투자별로 객관적 평가에 따른 탄력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조세 등 투자촉진정책 및 관련제도 측면에서 현재와 같은 투자 국적에 따른 차별보다는 산업 및 분야별 중요도에 따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각 투자별로 보다 철저한 사후관리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실제 투자유치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자유무역지역 사업 추진에의 시사점

자유무역지역은 우리나라 경제발전 초기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통해 우리 경제가 부족한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지정 및 개발되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대내외적으로 특히 마산자유무역지역은 대표적인 성공사례로서 평가되고 있다. 물론, 최근 무역환경의 개방화 및 FTA 체결확대 등으로 인하여 국가 간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낮아지면서 특히 외국인투자기업이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유인이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자유무역지역의 경우 관세 측면에서의 장점뿐만 아니라 외국인투자기업 및 관련 산업이 집적되어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활성화 전략이 필요하다. 즉, FTA 체결 등으로 인하여 관세감면 효과라는 장점은 상쇄될 것이나, 관련기업들이 밀집해있는 주변여건, 기타 인센티브, 각종 인프라, 규제완화, 기타 행정지원서비스 등의 양호한 여건으로 인한 비교우위는 여전히 유지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요인을 고려할 때 특히 외국인투자유치 활성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

첫째, 자유무역지역 차원에서도 입주기업 유치 시 기술과급효과 및 고용과급효과 등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우수기업의 유치촉진 및 재투자확대 측면에서 입주단계에서 제출된 투자 및 고용계획 등을 바탕으로 차별적·맞춤형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또한 입주기업에 대해서도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인센티브의 확대·축소 등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외국인직접투자와 더불어 국내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 또한 병행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 외국인투자의 경우 상당부분이 국내 주요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관계와 관련된 투자활동이다. 주변의 중국 등에 비해 자체 시장규모 및 요소(비용) 측면에서의 경쟁력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전체 외국인투자 촉진 측면에서도 앵커기업으로서 국내기업의 입주는 중요한 요건이라고 판단된다. 실제 대부분의 국가들은 우리와 같이 국적 여부가 아닌 전략산업군 여부에 따른 차등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셋째, 자유무역지역의 차별화를 위한 요인으로 기업의 수출입 활동과 관련한 각종 거래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원정책 마련이 중요하다. 자유무역지역은 수출주도형 성장 전략 과정에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여 수출 증대와 외화획득 달성을 도모하기 위한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해 왔다. 특히, 최근의 경제자유구역 등 특구 전략이 서비스 산업 및 신성장 산업에 집중하는 반면, 자유무역지역은 생산 및 수출입 활동과 연계된 거점 특구로서 차별점을 가진다. 이러한 자유무역지역의 차별점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수출입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자유무역지역내 입주기업들이 생산, 수출입, 물류·유통 전반에서의 거래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접근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기업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업지원 서비스 기능의 확충에 초점이 맞추어질 필요가 있다.

제3절. 자유무역지역의 영향

글로벌 여건 “변화”와 외국인투자유치 여건의 “변화”가 자유무역지역에 미치는 실증분석에 관한 기존 연구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유무역지역에 관한 연구는 실증분석이 아닌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인프라, 정부의 정책적 의지 및 일관성, 내수시장 및 잠재시장의 크기 및 거리, 인센티브 등을 외국인투자 유치요인으로 들고 있다. 중국의 보세구 등에 대한 연구가 많

은데, 이 또한 중국의 연도별 외국인투자금액과 보세구 등 경제특구의 외국인투자금액을 표 또는 그림으로 비교하며, 중국의 경제특구제도가 외국인투자를 이끌고 있다는 결론을 내고 있기도 하다.

자유무역지역이 아닌, 한 국가의 외국인투자유치에 대한 실증연구는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 우리나라 등 한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시계열 데이터를 활용하여 변화요인을 검토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특정연도의 각 국가별 자료를 바탕으로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는 횡단면 분석을 통해 외국인투자유치 요인을 설명하고 있다.

한 국가의 외국인투자 유치요인은 UNCTAD(1998)에서 제시된 요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이러한 요인을 설명하는 변수는 어느 기관의 자료로 활용하는가에서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이 인력 및 교육여건, R&D 수준, 임금수준, FDI 유치규모, 비즈니스 환경, 환율, 금리, 수출입 비중 등을 주요 변수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유치 요인을 검토한 한국은행(2007)의 연구를 준용하여, 이 연구에서 이용한 설명변수를 이용하였다. 즉, GDP, 세계외국인투자 유입액, 환율, KOSPI 지수, 지가지수, 시간당 임금 등을 설명변수에 포함하였다.

다만, 글로벌 공급 체인 등의 재배치로 인해 “물류”가 외국인투자 유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고려되므로,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변수를 고려해보았다. 대표적인 물류에 관한 지수로 세계은행이 2007년 이후 약 격년으로 발간하고 있는 물류성과지수(Logistics Performance Index; LPI)가 있으나, 2007년, 2010년, 2012년 및 2014년 등 발표를 4번만 하여 시계열 자료로 활용할 수 없어 반영하지 못하였다. 대신, 우리나라의 물류비용 수준을 나타내는 국가물류비를 변수로 활용하였다. 국가물류비는 국내비용만 고려한 경우와 국제물류비를 감안한 경우의 2가지가 있어, 이를 모두 반영하였다.³⁴

³⁴ 현재의 국가물류비는 KOTI에서 2011년에 방법론을 개정하며, 현재의 방법론을 2011년까지 적용하여 이 수치를 발표하고 있다. 따라서 2000년 이전의 자료는 현재의 자료와 일관성이 떨어진다. 그러나 2001년 이후의 자료만 반영하면 충분한 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분석이 불가해지므로, 기존의 방법론으로 적용된 자료를 활용하였다.

또한 한국은행의 연구가 우리나라 전체의 외국인투자 유치금액을 종속변수로 삼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자유무역지역으로 한정하였다. 그러나 항만형 및 공항형 자유무역지역은 외국인투자 유치금액을 발표하고 있지 않아 접근이 어려워, 실제 반영된 자료는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의 외국인투자 유치금액이다. 여기에는 1981년부터 자유무역지역으로 운영되었으나, 2010년 말에 해제된 익산자유무역지역의 외국인투자 유치금액이 반영되어 있다. 또한 외국인투자 유치금액이 실제 도착된 금액이 아니라 입주기업의 계획서에 의거하여 제시되는 경우도 있으며,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의 외국인투자 유치금액 집계기준과 UNCTAD의 외국인투자금액의 집계기준과 다르다. 우리나라의 자유무역지역은 도착금액누계-회수금액누계인 잔액기준이지만, UNCTAD는 도착기준으로 집계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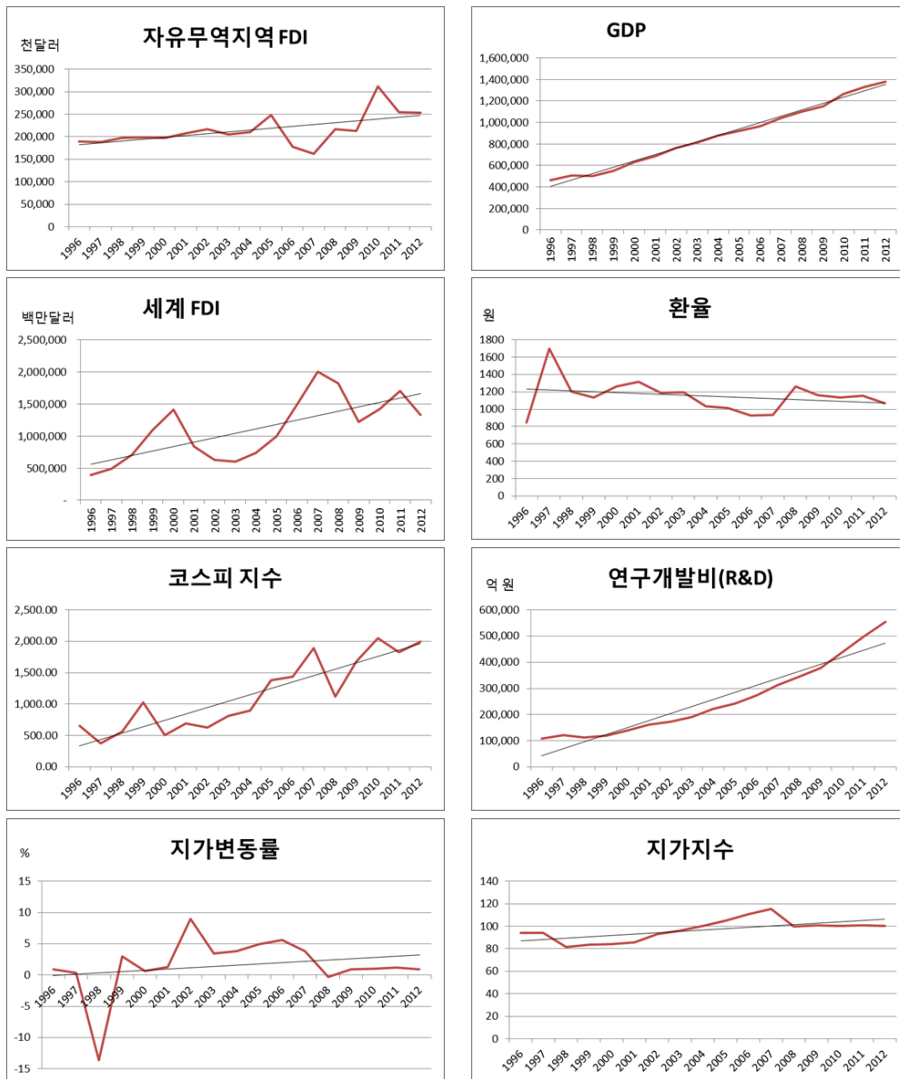
마산자유무역지역의 외국인투자유치가 1970년부터 시작되었으나, 설명변수로 이용되는 변수들이 1990년대 중반이후부터 집계되기 시작한 경우가 있어, 본 연구에서는 1996~2012년의 17년에 해당하는 시계열 연간자료를 활용하였다. 분기별 자료를 활용하면 관찰값이 적다는 약점을 일부 보완할 수 있지만, 국가물류비, 세계 FDI 유입액 등은 연간 자료로만 제공되고 있어 가끔씩 원래의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표 3-7〉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 유치 요인 영향 이용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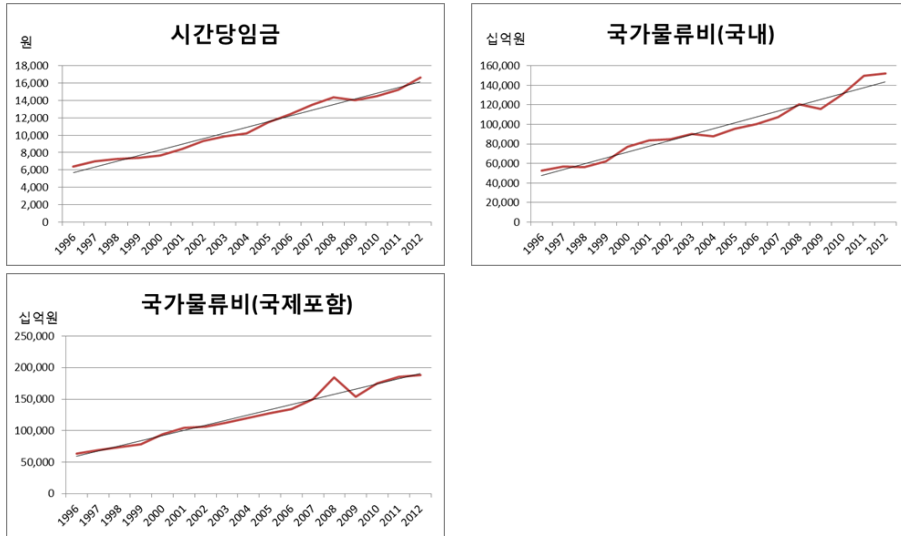
변수	출처	자료확보기간	자료이용기간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유치금액	자유무역지역 관리원	1970~2013	1996~2012
GDP	한국은행	1970~2013	
세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	UNCTAD	1990~2013	
환율	나라지표	1970~2013	
KOSPI 지수	한국은행	1975~2013	
R&D 지출액	미래창조과학부	1963~2012	
지가지수	국토교통부	1994~2013	
지가변동률	국토교통부	1975~2013	
시간당 임금	고용노동부	1994~2013	
국가물류비(국내만)	국토교통부, KOTI	1991~2012	
국가물류비(국제 포함)	국토교통부, KOTI	1996~2012	

시계열 자료들은 시간에 따라 일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정상성(stationary)을 확보하기 위해 이러한 경향성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단위근 검정(DF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림 3-8〉 각 변수들 그림 및 추세선



〈그림 3-8〉 각 변수들 그림 및 추세선(계속)



〈그림 3-8〉에서 보이는 것과 유사하게 지가변동률 등 일부 변수를 제외하고 모두 단위근이 존재하고 있어, 차분 등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표 3-8〉 단위근 검정결과

변수	유형	Rho	Pr < Rho	Tau	Pr < Tau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유치 금액(fdi)	영평균	0.201478	0.7126	0.39	0.7832
	단일평균	-7.65591	0.1667	-1.65	0.4365
	추세	-14.7116	0.0632	-2.31	0.4047
GDP(gdp)	영평균	0.951216	0.8801	2.97	0.9978
	단일평균	0.46477	0.9645	1.16	0.9958
	추세	-15.753	0.0411	-3.79	0.0473
세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wfdi)	영평균	-0.76627	0.5049	-0.44	0.5035
	단일평균	-11.7892	0.0355	-2.46	0.1446
	추세	-29.2911	<.0001	-3.12	0.1374
환율 (exchange)	영평균	-0.41658	0.5729	-1.2	0.1975
	단일평균	-9.91671	0.0749	-2.97	0.0615
	추세	-11.481	0.1915	-2.59	0.2879
KOSPI 지수 (kospi)	영평균	0.920337	0.8747	1.2	0.9318
	단일평균	-1.11648	0.8565	-0.58	0.8481
	추세	-17.2288	0.0206	-2.61	0.2821

〈표 3-8〉 단위근 검정결과(계속)

변수	유형	Rho	Pr < Rho	Tau	Pr < Tau
R&D 지출액 (rnd)	영평균	1.817044	0.9696	3.23	0.9987
	단일평균	2.117527	0.9949	3.1	0.9999
	추세	0.216363	0.9916	0.2	0.9949
지가지수 (landindex)	영평균	0.031643	0.6716	0.12	0.7046
	단일평균	-3.93623	0.4998	-1.25	0.6228
	추세	-10.2641	0.2742	-1.98	0.5666
지가변동률 (landvol)	영평균	-7.7873	0.0363	-1.83	0.0639
	단일평균	-10.2186	0.0668	-2.03	0.2737
	추세	-11.895	0.1685	-2.03	0.5397
시간당임금 (wage)	영평균	0.888377	0.8689	2.44	0.9933
	단일평균	0.571639	0.9684	0.71	0.9876
	추세	-17.8763	0.0147	-3.04	0.1541
국가물류비 (국내만) (logdom)	영평균	0.994872	0.8875	3.02	0.9979
	단일평균	0.739276	0.9737	0.77	0.9894
	추세	-17.2793	0.0201	-1.85	0.632
국가물류비 (국제 포함) (loginter)	영평균	0.868732	0.8652	2.86	0.9972
	단일평균	-0.17569	0.933	-0.2	0.9195
	추세	-32.4329	<.0001	-3.55	0.0697

본 연구의 목적은 이들 변수를 통해 앞으로의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 유치금액을 전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무역지역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찾는 것이다. 즉, 이 변수들 중에서 어떠한 것들이 설명변수로 적합한지를 찾아야 하는 것으로, 회귀분석의 설명변수 선택과 연결된다.

일반적으로 설명변수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결정계수는 설명변수의 숫자가 증가하면 함께 증가한다.³⁵ 즉, 종속변수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변수를 포함해도 결정계수는 증가하게 되어 있어, 설명변수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일으키게 될 뿐 아니라, 변수가 지나치게 많으면 오히려 통계분석의 목적에 어긋나게 된다. 즉, 종속변수에 영향을 끼치는 여러 가지 변수들 중 중요한 몇 가지로 모델을 구성하려고 하는 목적에 어긋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설명변수를 선택할 때에는 변수의 숫자가 증가하게 되면 Penalty를 주는 방식으로 이 Penalty가 낮으며 결정계수 및 수정결정계수가 높은 모델을

35 단조증가함수로, 증가하거나 그대로임. 감소하지 않음.

선택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Mallows가 제안한 C_p 는 축소모형 중 C_p 의 크기가 가장 작으면서, $y = x + 1$ 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는 점의 X 좌표를 선택하는 방법이다. criteria가 하나가 아니라 2개일 뿐 아니라, “크게 이탈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 주관이 개입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용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Akaike 정보판단기준)과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Bayesian 정보판단기준)이 작게 나오면서, 결정계수 값이 높은 모델을 선택하기로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축소모형의 설명변수의 개수의 상한을 최대 AIC 추정량으로 하고, 하한을 최소 BIC 추정량으로 한다.

대부분 단위근이 존재하므로, 차분한 값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해보며, 또한 단위근이 존재하더라도 공적분 관계가 존재할 경우 차분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도 있으므로³⁶, 원 자료로도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변수 선택을 해보기로 한다.

차분한 데이터로 설명변수를 택하였을 때 최소 AIC는 327.2204로 설명변수 6개를 선택하는 모델이었으며, 최소 BIC는 설명변수가 4개인 모델을 택하였다. 수정결정계수는 최소 AIC가 선택하는 모델과 동일하였으며, 결정계수는 10개 변수 중 9개를 선택하는 경우에 가장 높았다. KOSPI 지수, R&D 지출액, 지가지수, GDP 등 네 가지 변수를 기본으로, 시간당 임금, 세계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액, 환율, 국가물류비(국제 포함), 지가변동률 등이 포함되면서 설명변수 5개가 되는 모델도 가능한 것으로 나온다.

〈표 3-9〉 차분한 자료의 설명변수 선택

모델 번호	수정 R ²	R ²	AIC	BIC	모델 내 변수
4	0.5177	0.6463	330,6780	339,8019	KOSPI 지수, R&D 지출액, 지가지수, GDP
5	0.5584	0.7056	329,7437	343,5130	KOSPI 지수, R&D 지출액, 지가지수, 시간당임금, GDP
5	0.5506	0.7004	330,0235	343,5162	KOSPI 지수, R&D 지출액, 지가지수, 세계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액, GDP

36 모든 설명변수를 포함하여 공적분 검정을 하면, 관찰값이 적어 결과가 나오지 않음.

〈표 3-9〉 차분한 자료의 설명변수 선택(계속)

모델 번호	수정R ²	R ²	AIC	BIC	모델 내 변수
5	0.5034	0.669	331.6191	343.5209	환율, KOSPI 지수, R&D 지출액, 지가지수, GDP
5	0.486	0.6574	332.1703	343.5213	KOSPI 지수, R&D 지출액, 지가지수, 국가물류비(국내만), GDP
5	0.474	0.6493	332.5413	343.5222	KOSPI 지수, R&D 지출액, 지가지수, 국가물류비(국제 포함), GDP
5	0.4705	0.647	332.6458	343.5227	KOSPI 지수, R&D 지출액, 지가변동률, 지가지수, GDP
6	0.6301	0.7781	327.2204	349.0089	KOSPI 지수, R&D 지출액, 지가지수, 시간당임금, 세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 GDP
6	0.5769	0.7461	329.373	348.5913	KOSPI 지수, R&D 지출액, 지가지수, 국가물류비(국제 포함), 세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 GDP
6	0.556	0.7336	330.1418	348.4025	KOSPI 지수, R&D 지출액, 지가지수, 시간당임금, 국가물류비(국내만), GDP
6	0.5545	0.7327	330.1968	348.3885	KOSPI 지수, R&D 지출액, 지가지수, 시간당임금, 국가물류비(국제 포함), GDP
6	0.5436	0.7262	330.5842	348.2889	환율, KOSPI 지수, R&D 지출액, 지가지수, 시간당임금, GDP
6	0.5278	0.7167	331.1289	348.1460	환율, KOSPI 지수, R&D 지출액, 지가지수, 세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 GDP
6	0.5142	0.7085	331.5819	348.0259	KOSPI 지수, R&D 지출액, 지가변동률, 지가지수, 시간당임금, GDP
6	0.501	0.7006	332.0105	347.9121	KOSPI 지수, R&D 지출액, 지가지수, 국가물류비(국내만), 세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 GDP
6	0.5007	0.7004	332.0225	347.9089	KOSPI 지수, R&D 지출액, 지가변동률, 지가지수, 세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 GDP
7	0.6089	0.7914	328.2286	355.4189	환율, KOSPI 지수, R&D 지출액, 지가지수, 시간당임금, 세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 GDP
7	0.5868	0.7796	329.1092	354.9955	KOSPI 지수, R&D 지출액, 지가지수, 시간당임금, 국가물류비(국내만), 세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 GDP
7	0.5849	0.7786	329.1841	354.9577	KOSPI 지수, R&D 지출액, 지가변동률, 지가지수, 시간당임금, 세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 GDP
7	0.584	0.7781	329.2185	354.9402	KOSPI 지수, R&D 지출액, 지가지수, 시간당임금, 국가물류비(국제 포함), 세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 GDP
7	0.5498	0.7599	330.4803	354.2708	환율, KOSPI 지수, R&D 지출액, 지가지수, 국가물류비(국제 포함), 세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 GDP
7	0.5417	0.7556	330.7674	354.1126	환율, KOSPI 지수, R&D 지출액, 지가지수, 시간당임금, 국가물류비(국내만), GDP

〈표 3-9〉 차분한 자료의 설명변수 선택(계속)

모델 번호	수정R	R ²	AIC	BIC	모델 내 변수
7	0.5333	0.7511	331.0556	353.9526	환율, KOSPI 지수, R&D 지출액, 지가지수, 시간당임금, 국가물류비(국제 포함), GDP
7	0.5298	0.7492	331.1770	353.8848	KOSPI 지수, R&D 지출액, 지가지수, 국가물류비(국내만), 국가물류비(국제 포함), 세계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액, GDP

차분하지 않은 원자료를 택했을 경우에는 KOSPI 지수, 시간당 임금, 국가물류비(국제 포함) 및 세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 등 설명변수 4개인 모델이 최소 BIC 값을 가졌으며, 여기에 지가지수를 추가한 모델이 최소 AIC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국가물류비, 즉 물류 요인이 외국인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선택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3-10〉 원자료의 설명변수 선택

모델 번호	수정R	R ²	AIC	BIC	모델 내 변수
4	0.6518	0.7389	342.4716	352.4896	KOSPI 지수, 시간당임금, 국가물류비(국제포함), 세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
5	0.6933	0.7892	340.8358	356.219	KOSPI 지수, 지가지수, 시간당임금, 국가물류비(국제포함), 세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
5	0.6791	0.7794	341.6069	356.2973	환율, KOSPI 지수, 시간당임금, 국가물류비(국제포함), 세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
5	0.6595	0.7659	342.6168	356.3787	KOSPI 지수, R&D 지출액, 시간당임금, 국가물류비(국제포함), 세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
5	0.6496	0.7591	343.1001	356.4118	KOSPI 지수, 지가변동률, 시간당임금, 국가물류비(국제포함), 세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
5	0.6362	0.7499	343.7404	356.4522	KOSPI 지수, 시간당임금, 국가물류비(국내만), 국가물류비(국제포함), 세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
5	0.6346	0.7488	343.8134	356.4566	KOSPI 지수, 시간당임금, 국가물류비(국제포함), 세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 GDP
6	0.6902	0.8064	341.3874	361.4165	환율, KOSPI 지수, 지가지수, 시간당임금, 국가물류비(국제포함), 세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
6	0.674	0.7962	342.2559	361.2808	KOSPI 지수, 지가지수, 시간당임금, 국가물류비(국제포함), 세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 GDP

〈표 3-10〉 원자료의 설명변수 선택(계속)

모델 변수	수정R ²	R ²	AIC	BIC	모델 내 변수
6	0.6663	0.7914	342.6538	361.2125	KOSPI 지수, R&D 지출액, 지가지수, 시간당임금, 국가물류비(국제포함), 세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
6	0.6636	0.7897	342.7898	361.1885	환율, KOSPI 지수, 지가변동률, 시간당임금, 국가물류비(국제포함), 세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
6	0.6632	0.7895	342.8076	361.1853	KOSPI 지수, 지가지수, 시간당임금, 국가물류비(국내만), 국가물류비(국제포함), 세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
6	0.6631	0.7894	342.8161	361.1838	KOSPI 지수, 지가변동률, 지가지수, 시간당임금, 국가물류비(국제포함), 세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
6	0.6627	0.7892	342.8343	361.1805	환율, KOSPI 지수, R&D 지출액, 시간당임금, 국가물류비(국제포함), 세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
6	0.6548	0.7843	343.2268	361.1093	환율, KOSPI 지수, 시간당임금, 국가물류비(국제포함), 세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 GDP
6	0.654	0.7838	343.2657	361.1021	환율, KOSPI 지수, 시간당임금, 국가물류비(국내만), 국가물류비(국제포함), 세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
6	0.6467	0.7792	343.6232	361.0355	KOSPI 지수, 지가변동률, 시간당임금, 국가물류비(국제포함), 세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 GDP
6	0.6369	0.7731	344.0845	360.9482	KOSPI 지수, R&D 지출액, 지가변동률, 시간당임금, 국가물류비(국제포함), 세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
6	0.6361	0.7726	344.124	360.9407	KOSPI 지수, 지가변동률, 시간당임금, 국가물류비(국내만), 국가물류비(국제포함), 세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
6	0.6277	0.7673	344.5111	360.8667	KOSPI 지수, R&D 지출액, 시간당임금, 국가물류비(국제포함), 세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 GDP
6	0.6257	0.766	344.6048	360.8488	KOSPI 지수, R&D 지출액, 시간당임금, 국가물류비(국내만), 국가물류비(국제포함), 세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
7	0.6637	0.8108	342.9906	367.0007	환율, KOSPI 지수, 지가지수, 시간당임금, 국가물류비(국제포함), 세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 GDP
7	0.6565	0.8068	343.3505	366.836	환율, KOSPI 지수, R&D 지출액, 지가지수, 시간당임금, 국가물류비(국제포함), 세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

관찰값이 17개에 불과하여 설명변수가 4개 이상이 되면 공적분 검정이 되고 있지 않으며, 설명변수 3개, 2개일 경우에는 공적분 검정 결과가 나오

지만 일관된 경우는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차분 자료를 써야 할지 원자료를 써야 할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다. 다만, KOSPI 지수가 차분데이터와 원데이터에서 모두 나오고 있으며, 지가지수가 차분데이터에서는 4개 선택 모델에 포함되고 원데이터에서는 최소 AIC 값을 가지므로, KOSPI 지수와 지가지수가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제4장 해외사례 분석

제1절. 중국³⁷

1. 상하이 세관관리감독특수구역

1) 제도 개요

중국의 세관관리감독특수구역은 1990년 보세구, 2000년 수출가공구, 2003년 보세물류원구 제도를 거쳐, 2005년에는 이들 3개 구역의 기능을 통합한 보세항구 제도로 발전하였다. 대부분 상하이가 최초로 지정되었고 이후 중국의 다른 지역에도 도입되었다. 이후 2009년 자유무역항, 2013년 자유무역시범구를 상하이에 도입하였으며, 아직까지는 상하이에만 적용되고 있다. 중국의 다른 지방에서도 중앙정부에 지정을 건의하는 등 준비를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상하이에만 자유무역시범구가 운영되고 있다. 도입된지 얼마 안되는 자유무역시범구를 제외하면 중국의 세관특수감독관리구역은 보세구, 수출가공구, 보세물류원구라고 볼 수 있다.

2) 보세구

(1) 종합보세구 개요

상하이에선 와이까오차오 보세구(1990년 지정), 양산항 보세구(2005년 지정), 푸둥공항 보세구(2010년 지정) 등 3개의 보세구가 있으며, 이들 3개를 합한 면적은 28km²이다. 기존에는 상하이시 산하에 이들 보세구를 각각 관리하는 ‘OOO 보세구 관리위원회’를 설치하였으나, 2009년 이들 보세구의 통합발

37 송주미·이성우·전혜경·민경창, 『자유무역지역 유형별 Biz Model 구축 및 연계방안 연구』, 한국무역협회의 중국 사례를 주로 인용하고, 업데이트 상황을 반영.

전을 위하여 ‘상하이 종합보세구 관리위원회’로 통합하였다. 이는 와이까오차오 보세구의 발전경험을 신규로 지정된 보세구에 전수하기 위함이며, 이후 상하이 종합보세구로 통칭되었다.

종합보세구로 변경된 지 4년이 지난 이후, 와이까오차오 보세구의 입주기업 수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양산항 및 공항 보세구의 입주기업은 증가하여, 현재로서는 성공적이라고 판단되고 있다.

(2) 입주정책 및 임대료

종합보세구에 입주하는 기업은 자체적으로 건물을 지을 수 없으며, 국영기업인 부동산개발회사(예: 상해 종합보세구 연합발전 유한공사 등)에서 지은 건물에 입주할 수 있다. 투자규모가 큰 경우에는 상하이 종합보세구 연합발전 유한공사 등과 협상하여 건물의 높이, 면적 등에서 해당기업을 위한 전용 건물을 받을 수 있으나, 직접 건물을 보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³⁸ 상하이 종합보세구의 임대료는 공항만에 인접해 있다는 점, 행정절차 및 각종 인센티브 등이 주어짐에 따라 시내의 관세구역보다 임대료가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어 있다. 정부 및 관리기관에서 입주기업끼리 재임대 등을 하는 데 전혀 제약을 가하지 않으며(임대가격에 대해서도 제약X), 이들 기업 간의 계약을 주선하는 부동산회사도 입주해 있을 정도이다. 보세구 내 위치, 건물 상태 등에 따라 임대료는 달라지며, 정부에서 가격에 대해 개입하지 않고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다.

임대료가 시장에서 형성된다는 점이 우리나라의 자유무역지역과 가장 다른 점인데, 시장가가 적용되므로 경영이 악화된 기업은 자발적으로 보세구를 떠나기 때문에 입주기업을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의 자유무역지역처럼 재임대를 제한하거나, 입주기업의 성과를 관리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3) 출입통제 및 입지여건

³⁸ 와이까오차오 보세구 지정 초기에는 일부 대형 투자자에 한하여 자가 건물 보유를 허락한 경우도 있었으나, 현재는 거의 불가능.

상하이 종합보세구에 울타리(fence)가 설치되어 있으나, 사람의 출입은 자유롭다. 진출입 구역은 트래픽 관리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해 별도로 지정되어 있고 검사인력(경비 등)이 상주해 있으나,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는 검사를 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상하이 종합보세구에는 호텔, 영화관, 전시장, 병원, 지하철역 등이 입주해 있다. 또한 화물차량의 경우에도 평소에는 대부분 자유롭게 진출입이 가능하며, 서류 심사 및 불시 검문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통제가 이루어지는 구조이다.

상하이 종합보세구는 외고교항, 푸둥공항, 양산항 등 공항만에 가깝게 입지하고 있으나, 시내와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 출퇴근이 여의치 않으므로 인력을 조달하는 문제 등이 쉽지 않다는 애로사항이 있다.

(4) 주요 업종

무역회사 또는 창고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초창기에는 제조업들도 많이 입주하였으나, 임대료 및 인건비가 증가하여 지금은 그 비중이 높지 않은 편이다. 제조업 중 일부는 보다 인건비 등이 저렴한 국가로 이동하였으며, 중국 내에서는 내륙지역 및 서부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세구 내에 있는 제조업들은 단순가공형태로 반제품을 중국 내부의 공장에 납품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물류업은 대부분 자체 창고 및 VMI(Vender Management Inventory) 형태가 많다. 전시 등 서비스업도 가능한데, 2011년 등을 전후하여 자동차, 시계, 의약 소매, 주류 전시, 선반, 화장품 등의 전시 무역 플랫폼, 의료기계 전시 거래센터, 엔지니어링 수출입 무역센터 등이 마련된 바 있다.

사행성 산업 및 군수산업 등 일부 입주가 불가능한 업종이 있지만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며, 기본적으로 호텔, 극장, 식당 등의 일반업종은 입주가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자유무역지역은 산업기능에 집중하는 것과 달리 종합보세구는 산업기능뿐 아니라 정주기능에도 특별히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는다.

2012년 기준으로 상하이 종합보세구의 투자기업은 12,268개이며, 이 중 신규등록기업은 788개이다. 투자유치액은 310억 달러를 초과하였으며, 외국인 투자유치액이 115억 달러 정도이다.

〈표 4-1〉 상하이 종합보세구 업종 현황(2012년)

	무역기업	물류기업	가공기업	기타기업
기업수(개)	8,462	2,292	834	680
기업총수 차지 비율	69%	18.7%	6.8%	5.5%
투자유치액(억 달러)	111.93	75.04	53.44	69.83
투자 총액 차지 비율	36.1%	24.2%	17.2%	22.5%

자료: KMI 내부 자료

3) 수출가공구³⁹⁾

(1) 수출가공구 개요

수출가공구는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 내에만 지정되도록 되어 있다.⁴⁰⁾ 대부분 공기업 형태로 별도의 관리회사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으며, 이 공기업이 수출가공구와 인근의 개발구를 동시에 관리와 운영을 동시에 맡는다. 원래는 제조업만 입주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2009년 이후로는 물류업도 입주가 가능해졌으며, 사실상 보세구와 기능상의 큰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겠다.⁴¹⁾

그러나 수출가공구는 보세구와 달리 출입통제가 비교적 엄격한 편이며, 입지적으로도 공항만에서 떨어져 내륙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입주수요도 높지 않은 편이어서 보세구에 비해 활성화가 덜 되고 있다. 중국 내부에서도 수출가공구를 보세구로 통합하여 제도를 좀 더 자유롭게 운용하는 방향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보세구의 성공에 힘입어 중국의 지방정부들이 경쟁적으로 수출가공구 설립을 중앙정부에 건의하였으나, 실제 수출가공구에 대한 입주수요가 높지 않아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단계로 판단된다.

39 상하이 청푸수출가공구 및 민항수출가공구 사례 위주.

40 우리나라의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이 국가산업단지 내에 지정되는 경우와 거의 유사. 단 중국은 강행규정이며 우리나라는 선택이 가능함.

41 제도적으로는 ‘무역업’은 수출가공구에 입주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무역업을 수출가공구 내에서 영위할 수 있어 사실상 구분이 애매한 상황임.

(2) 수출가공구 조성 및 임대료

지방정부에서 100% 부지를 조성하고 중앙정부는 비준만 한다. 수출입 위주라 큰 혜택이 없고 활성화도 미진한 편이므로 지방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미미하여, 지방정부에서는 보세구로 변환하여 보다 자유롭게 운용하는 것을 계속 건의하고 있다.

종합보세구와는 달리 입주기업들이 직접 건물을 지을 수도 있고 관리기업이 조성한 건물에 입주할 수도 있으나, 전자의 경우가 많은 편이다. 토지 임대료는 50~60년간 사용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중국은 사회주의이므로 토지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으나, 50~60년간에 대한 사용권이므로 사실상 분양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다. 상하이 칭푸수출가공구의 경우 1무당 50년간 사용권이 100만 위안이며⁴², 상하이 민항수출가공구의 경우 1무당 60년간 사용권이 60만 위안 이상⁴³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토지 사용료는 중앙 정부가 결정하며, 관세지역에 비해 특별히 비싸거나 저렴하게 책정되지는 않고 인근지역의 시가 등이 참고가 된다. 즉, 수출입만을 하는 기업일 경우 종합보세구 등에 비해 내륙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입지가 좋지 않으며, 수출입과 내수를 동시에 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임대료는 동일한데 수출입만 해야 하는 제약이 생기게 되므로 입주수요가 높지 않은 상황이다.

(3) 입주기업 관리

최소투자규모 등이 정해진 것은 아니며, 관리기관에서 특화하고자 하는 업종은 있으나 그 업종이 아니라도 입주는 가능한 상황이다. 특화하고자 하는 업종에 해당할 경우 사용료 등에 우대를 주는 것은 아니며, 여러 기업이 입주하고자 할 때 우선순위가 부여된다.

인근 지역에 비해 사용료가 저렴한 것은 아니지만 관세 및 증치세 면제 등

⁴² 1무는 666.67㎡이므로, 1㎡당 50년간 사용권은 1,500위안이며, 환율 180원을 적용할 경우 상해 칭푸수출가공구의 사용료는 한화로 약 27만 원임.

⁴³ 상하이 민항수출가공구의 사용료는 한화로 1㎡당 약 16만 원 정도임.

의 혜택이 있으므로, 입주기업이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생산이 중단되는 기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입주를 취소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런 경우 입주기업끼리 사용권을 매매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수출가공구별로 상황이 다르다. 비교적 활성화가 잘되고 있는 청푸수출가공구의 경우 제도적으로는 기업 간 사용권 매매가 가능하지만, 운영회사인 ‘청푸수출가공구 발전유한공사’에서 실질적으로 회수하고 있다. 비교적 활성화가 부족한 민항수출가공구의 경우, 사용권을 인수하는 기업이 수출가공구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 되면 가능하며, 기업끼리 서로 계약하도록 하고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우대하는 것은 없으며, 투자규모가 크거나, 고기술 위주의 정부 장려사업이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우대받는 정도이지 임대료를 인하하는 등의 혜택은 제공하고 있지 않다.

4) 보세물류원구

(1) 보세물류원구 도입배경

중국은 제조업 유치를 위해, 수출용 원자재 구매 등에 대해서는 관세 및 증치세를 부여하지 않는 수책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세구 및 수출가공구에 입주해 있지 않더라도 수출용에 대해서는 무세금으로 원자재를 들여오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관세환급제도보다 기업 입장에서선 유리한 편이다. 관세를 부여했다가 환급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관세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수출을 했다는 증빙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으며, 무엇보다도 현금흐름이 좋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에서는 기업이 원자재를 구매할 때 내수용, 수출용이 엄격히 구분되어 각각 별도의 트랙으로 통관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수출용으로 구입한 원자재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출을 해야 한다. 그러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 수출용으로 수입하였는데 수출을 하기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수출용으로 구입한 원자재에 대해 관세 및 증치세를 납부하고 내수용으로 판매하는 것은 제도의 존립이 위태로워지므로 당국에서는 이러한 방법의 도입을 꺼려하고 있다고 한다.

보세물류원구가 생기기 전까지는 수출용으로 구입한 원자재로 만든 물품을 내수판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외(주로 홍콩, 한국 등)를 거쳐서 다시 재수입되어야 했다. 이는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물류비도 과도하게 소요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보세물류원구제도를 도입하였다. 중국 내부에 위치한 보세물류원구를 거치게 되면 수출로 인정을 해주는 것이다. 이로써 시간 및 물류비 소요를 줄일 수 있게 된 것이다.

(2) 보세물류원구 위치

보세물류원구는 주로 보세구 내 또는 수출가공구 내에 위치하거나, 별도로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면적이 크지는 않다. 상하이 와이까오차오 보세물류원구는 상하이 종합보세구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상하이 종합보세구 관리위원회에서 관할하고 있다.

또한 보세물류원구는 조성 취지상 물류기업만 입주가능하다.

5)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1)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개요

상하이에는 와이까오차오 보세구(1990년 지정), 양산항 보세구(2005년 지정), 푸둥공항 보세구(2010년 지정) 등 3개 보세구가 있는데, 이들 3개 구는 와이까오차오항, 양산항, 푸둥공항 등과 연동되어 있다. 즉, ‘3항3구(三港三区)’ 구도가 확립된 것이다. 여기에 와이까오차오 보세물류원구를 포함하여 총 4개 기능구역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2013년 7월,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총체방안(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总体方案)’이 비준되면서 최초로 자유무역시범구로 선정되었다. 총 면적은 28.78km²로 상하이시 총 면적의 1/226을 차지하며, 마카오의 면적과 유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처음에는 ‘자유무역구’로 하려고 하였으나, 추진과정에서 ‘상하이’와 ‘시범’이라는 단어가 추가되었다고 알려진다. 상하이시에서 Two Center 전략⁴⁴

⁴⁴ 금융중심 + 항운중심.

을 제안하였으나, 심의 과정에서 국가전략으로 업그레이드 하고 나서는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로 이름도 변경되었다.

3년간 시범운영을 할 예정이며, 5년간 복제가 가능하다. 투자자유화, 금융국제화, 무역편리화, 행정간소화 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주된 내용은 투자자유화와 금융국제화이다.

(2) 투자자유화

투자자유화와 관련해서는 입주업종을 Negative List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금지되는 분야가 아니면 모두 자유무역시범구에 진입, 발전이 가능한 것이다. 이로 인해 기존 종합보세구에서는 입주가 불가능하였던 19개의 산업분야가 신규로 진입이 가능하다. 은행서비스, 보건의료, 보험, 금융 및 임대(Finance Leasing), 운수 및 국제선박관리, 부가가치 전기통신(Telecom), 경매, 법률서비스, 신용서비스, 여행사, 인력자원중개(HR), 투자관리(Investment Management), 엔지니어링 설계(Engineeering Design), 엔터테인먼트, 교육훈련 등이 해당된다.

문화산업에 대한 개방이 가장 많이 이루어져서, 오락장소 및 오락시설 운영이 가능해졌고, 게임기의 생산 및 판매도 가능해졌다. 출판은 여전히 금지되어 있으나, 여타 분야는 많이 개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 100% 기업의 병원설립도 가능하며, 보세구 내에 영업집조증(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상하이 시내에서도 영업을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으로 우선 지적되고 있다.

(3) 금융국제화

금융국제화와 관련해서는 자유무역계좌(FTA: Free Trade Account) 1개만으로 외환거래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중국의 외환관리는 비교적 엄격한 편인데, 크게 자본거래와 경상거래로 구분되며, 자본거래가 보다 엄격한 편이다.⁴⁵ 자유무역계좌와 중국 내 다른 계좌와의 호환은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

45 - 자본거래 : 직접투자, 각종 대출 및 증권투자 등

- 경상거래 : 무역거래, 이전거래 등

- 이 외에도 준비기간 비용 외환계좌, 보증금전용계좌, 자산매각대금계좌, 중국 내 재투자 전용계좌 등 외환계좌의 종류가 많은 편임

될 것이며, 중국 내 다른 계좌에서 자유무역계좌로의 이체는 100% 자유를 보장할 예정이나, 자유무역계좌에서 중국 내의 다른 계좌로의 이체는 일정 수준 제약을 가할 예정이다. 외화 유출보다 외화 유입을 제약하는 것인데, 이유는 핫머니 등이 유입되어, 중국에서 부동산에 투기할 우려가 있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한 자유환전이 가능하며, 자유무역시범구 내에서는 인민폐 뿐 아니라, 달러, 유로 등도 사용하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4) 행정간소화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에서는 3~5일이면 기업등록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였다. 과거에는 심사를 거쳐야만 등록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심사를 생략하고 등록만 하면 된다. 즉,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된 것이다. 또한 다른 혁신으로 자유무역시범구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기업은 연감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공상관리국을 받지 않고, 온라인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먼저 허가증을 내주고 나서, 다시 심사를 하는 것이 옛날과 비해 차이가 있는 방식이다.

(5) 중간평가 및 기타

가상등록기업과 실제등록기업으로 구분하여 등록을 받고 있으며, 실제등록기업은 20㎡의 사무장소가 있어야 한다. 자유무역시범구 출범 1개월 후 약 300개 기업, 2개월째에는 1,100개 기업이 입주하였다고 한다. 2013년 말까지 자유무역시범구에 새로 설립된 기업은 3,623개였으며 이 중 중국 내자기업이 3,405개로 등기자본은 685.86억 위안, 외자기업이 228개, 등기자본 9.8억 위안에 달한다. 또한 상하이시 공상국에 따르면 2014년 9월 15일까지 자유무역시범구에 새로 등록된 기업은 12,266개이며, 이 중 외자기업이 1,677개로 13.7%를 차지한다. 새로 설립된 업종은 주로 도매 및 소매업, 리스 및 서비스업에 집중되었으며, 등기자본의 액수가 크다는 점이 특징으로 지적되고 있다.

중국 내에서도 이 제도가 처음으로 운영될 뿐 아니라, 각종 제도를 글로벌 수준에 맞추고자 하는데 전문가가 부족한 점을 아쉽다고 뽑고 있으며, 중합

보세구에 이미 입주해 있는 기업과 신설되는 자유무역시범구로 입주한 기업들을 어떻게 관리할지도 보완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는 홍콩과 같은 자유항 건설을 기본 목표로 하고 있다. 홍콩은 중국 본토와의 인구유출입 등이 실제로 통제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어, 중국 정부에서는 상하이시 내에서도 황푸강을 중심으로 상하이시내와 떨어져있는 푸둥신구에 이러한 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의 성과가 좋으면 6개월~1년 이내에 중국 내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고 성과가 좋지 않으면 3년 이내에 폐지할 예정이다.

2. 대만⁴⁶

1) 제도 개요

대만에서 관세가 면제되는 구역은 수출가공구(EPZ; Export Processing Zone)와 자유무역지역(FTZ; Free Trade Zone) 두 가지가 있다. 수출가공구는 1996년에 처음 지정되어, 우리나라가 1970년 마산 수출촉진지역 지정 등에서부터 벤치마킹을 했던 곳으로 우리나라의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에 대응한다고 볼 수 있다. EPZ는 경제부(MOEA; Ministry of Economic Affairs)에서 관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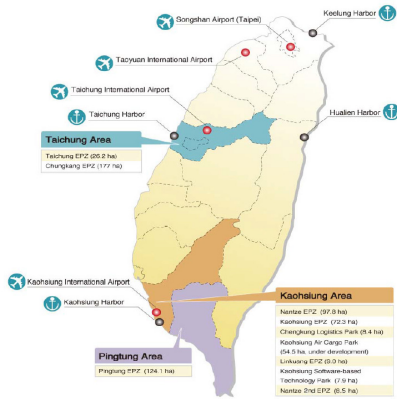
자유무역지역은 2003년 이후 지정된 곳으로 공항만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물류형 자유무역지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FTZ는 교통통신부(MOTC; Ministry of Transport and Communications)에서 관할한다.

제도적으로는 FTZ에도 제조업이 입주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EPZ에 비해 FTZ에는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여 물류업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EPZ에는 제조업 및 물류업 모두 입주가 가능하다. EPZ는 대만의 중남부 지역에 10개가 지정되어 있으며, FTZ는 대만의 공항만을 따라 7개가 지정되어 있다. 또한 EPZ는 상품이 오갈 때 일일이 신고를 하지 않고 일정기간이나 일정분량이 되면 한 번에 신고를 할 수 있으나, FTZ는 일일이 신고를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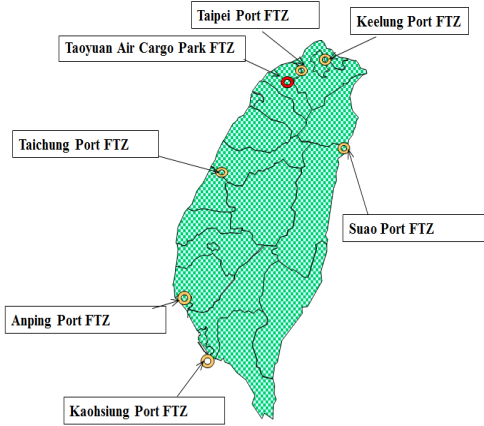
⁴⁶ 송주미·이성우·전혜경·민경창, 『자유무역지역 유형별 Biz Model 구축 및 연계방안 연구』, 한국무역협회의 대만 사례 활용.

〈그림 4-1〉 대만 수출가공구 및 자유무역지역 위치

〈대만 수출가공구 지정 현황〉



〈대만 자유무역지역 지정 현황〉



자료: An Investment Guide to EPZ in Taiwan(2013), FTZ in Taiwan(2011)

2) 수출가공구

(1) 수출가공구 개요

1966년에 설립되어 약 47년간 운영되고 있으며, 대만 전체 EPZ에 약 600여 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초기 단계에서는 노동집약형 산업이 입주하였으나, 이러한 산업은 현재 동남아 및 중국에 가 있으며 지금은 주로 IT 등의 전자 산업이 주로 입주해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마산 자유무역지역이 초기에는 섬유 등 노동집약형 산업 위주로 형성되었다가, 이후 휴대폰, 반도체 등으로 산업이 변화한 것과 유사하다.

경제부, 수출가공구관리처(EPZA: Export Processing Zone Administration) 등 2단계로 관리되고 있으며, 수출가공구관리처의 4개의 분점(branch)이 있다.⁴⁷ 카이슁 EPZ가 가장 오래되었으며, 수출가공구관리처에서 직접 관리하는 EPZ도 있으며, 분점에서 관리하기도 한다. 또한 수출가공구관리처에서 대만의 62개 공업구도 함께 관리할 예정이다.

⁴⁷ 북쪽에서부터 타이쑹(Taichung) branch, 충강(Chungkang) branch, 핑퉁(Pintung EPZ) branch, 카오승(kaoshung) branch임.

(2) 수출가공구 지정 현황

타이chung 지역, 핑통 지역, 카오슝 지역 등 주로 대만의 중서부 및 남서부에 위치하고 있다. 1960년대에 EPZ를 지정할 당시에는 카오슝 등 중남부 지역에 노동인력이 많았을 뿐 아니라, 타이베이 북쪽에 위치해 있어 중남부 지역에 대한 정치적 배려도 있었다고 한다. 각각의 EPZ 면적 자체는 큰 편은 아니며 충강 EPZ와 핑통 EPZ가 큰 편이며, EPZ 전체 면적 합계는 약 6.6km²이다.

〈표 4-2〉 대만의 수출가공구 지정 현황

지역	EPZ	면적 (km ²)	주요 산업	관리
타이chung	Taichung EPZ	0.26	광학, 전자산업	타이chung 분점
	Chungkang EPZ	1.78	디스플레이 패널, 정밀 장비 및 부품	충강 분점
핑통	Pingtung EPZ	1.24	자동차부품, 금속제품	핑통 분점
카오슝	Nantze EPZ	0.978	반도체 포장검사	EPZA
	Kaohsiung EPZ	0.723	LCD, 광전자산업	카오슝 분점
	Chengkung Logistics Park	0.084	물류기능	카오슝 분점
	Kaohsiung Air Cargo Park(개발중)	0.545	-	카오슝 분점
	Linkuang EPZ	0.09	LCD, LED 산업	-
	Kaohsiung Software-based Technology Park	0.79	IT산업(R&D 등 사무실 기능만 입주 가능)	EPZA
	Nantze 2nd EPZ	0.085	반도체, 전자부품, 컴퓨터 전자, 광학 제품 등	EPZA

자료: An Investment Guide to EPZ in Taiwan(2013)

(3) 출입통제

이전에는 EPZ에 울타리(fence)를 설치하였으나, 지금은 설치하지 않고 있다. 담당자는 세관이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였다. 수출가공구가 여러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과 유사하지만 통

제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며, 인력과 물품이 이동을 자유롭게 한다는 점은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4) 최소투자규모 및 임대면적

대만의 수출가공구는 각 투자 유형마다 최소투자규모를 설정하고 있다. 건물에 입주하는 제조업은 NT\$ 1,000만 이상 투자할 것, 스스로 건물을 짓는 제조업은 NT\$ 2,000만 이상, 창고업은 NT\$ 8,000만 이상, 운송업은 NT\$ 5,000만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제조업은 스스로 건물을 지을 수도 있고, 이미 건설된 건물에 입주할 수도 있지만, 물류업은 직접 건물을 지어야 한다고 한다. EPZ에 입주하는 창고업 및 운송업은 대부분 보세창고 및 보세운송 면허가 있는 기업을 선호하고 있어, 일반 제조업에 비해 최소투자규모가 높은 편이다.

대만 전체의 산업특성에 따라 대부분 IT, 전자부품, 반도체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투자규모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해당 EPZ의 유치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면 입주가 불가능하다.

(5) 임대료 및 수수료

토지임대료 및 공공시설 건설수수료는 EPZ별로 구분된다. 수출가공구 임대료는 시내보다 저렴한 편이며, 공업구보다도 저렴하게 책정하고 있다. 약 5년에 1번씩 토지 임대료를 발표하고 있다.

〈표 4-3〉 대만의 수출가공구 토지임대료 및 공공시설 건설수수료

(단위: NT\$/Month/m²)

지역	EPZ	토지임대료	공공시설 건설수수료
타이chung	Taichung EPZ	9.15	5.38
	Chungkang EPZ	7.89	7.7089
핀통	Pingtung EPZ	1.33	8.57
카오슝	Nantze EPZ	11.50	원 지역: 2.79 확장 지역: 7.56

〈표 4-3〉 대만의 수출가공구 토지임대료 및 공공시설 건설수수료(계속)

(단위: NT\$/Month/m²)

지역	EPZ	토지임대료	공공시설 건설수수료
카오슝	Kaohsiung EPZ	10.50	원 지역 자체건설: 1,669 원 지역 표준건물: 2,905 확장지역: 10,472
	Chengkung Logistics Park	66	None
	Kaohsiung Air Cargo Park (개발중)	-	-
	Linkuang EPZ	12.5	8.01
	Kaohsiung Software-based Technology Park(KSTP)	19.6/39.2	7.841
	Nantze 2nd EPZ	16.70	19(예상)

자료: An Investment Guide to EPZ in Taiwan(2013)

(6) 분양 VS. 임대

대만의 수출가공구 또한 상하이 종합보세구와 마찬가지로 초기 단계에는 분양도 가능하였으나, 지금은 임대만 가능하다. 최대임대기간은 10년이며, 기업이 운영만 잘하면 연장에는 큰 문제가 없는 편이다.

기업이 직접 건물을 지을 수도 있으며, 기존에 건설된 건물에 입주할 수도 있지만, EPZ가 운영 된지 47년이 되었기 때문에 노후화된 건물이 많아 되도록 신규건설을 권장하고 있다. 간혹 기업들이 투자금액에 비해 임대기간이 10년에 불과하다며 불안하다는 내색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정상적으로 생산하는 경우는 내보내지 않으므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별로 없다. 기업들이 불안해하는 경우에는 EPZA에서 내보낸 기업들의 연락처를 알려주며, 어떠한 경우에 내보내는지에 대해 직접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7) 입주기업 관리

입주기업들은 매월 영업액, 고용인원, 토지사용현황 등을 보고하게 되어 있으며, EPZA가 불시에 입주기업들을 시찰하여 점검을 한다. 이러한 불시점검을 통해 기업들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등은 강제로 내쫓는 경우가 있으나 많지 않은 편이다.

입주기업들이 운영을 잘하고 생산만 하면 강제성으로 투자건물을 회수할 이유가 없다. 어차피 회수절차 자체에 1~2년이 소요되며, 행정비용도 크기 때문에 EPZA에서도 이를 선호하지 않는 편이다.

(8) 추가지정

현재로서는 수출가공구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 EPZ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경제성을 이유로 지정하지 않은 적도 있다.

3) 자유무역지역

(1) 자유무역지역 개요

2003년에 처음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6개는 항만구역에, 1개는 공항구역에 지정되었다. 대만은 2012년 대만항무주식유한공사를 설립하여 주요항만에 분공사를 설치하였으며, 각 항만의 분공사를 통해 FTZ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항만구역에 있는 FTZ는 별도의 부지를 조성한 것이 아니라 노후화된 터미널을 물류센터로 이용하거나 기존의 CFS가 있는 부지를 FTZ로 지정한 경우가 많다.

물류업에서부터 제조업까지 모두 가능하지만, 면적 제한으로 물류업 위주로 입주해 있다.

(2) 출입통제

EPZ와 다르게 울타리를 쳐서 사람 및 화물의 출입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FTZ가 항만터미널 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출입이 엄격히 관리되므로, 출입증이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

EPZ와 FTZ로 운송되는 물량들은 해당 지역의 물량이 아니면 흔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해당 EPZ와 FTZ에 대한 수입기록 및 수출기록이 정확히 일치해야 한다.

(3) 분양 VS. 임대

분양은 불가능하며 임대만 가능하다.

(4) 외국인투자기업 우대 여부

외국인투자기업이라고 해서 임대료 등에서 특별히 우대하는 것은 없다. 외국인투자기업은 발생한 부가가치에 대해서 소득세가 면제되는 반면, 타이완 기업은 소득세를 내게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100을 들여 110을 생산하였을 경우, 10만큼의 부가가치에 대해 외국인투자기업은 소득세를 내지 않으나 대만기업은 내도록 되어 있다. 이 점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우대라고 할 수 있다.

(5) 항만 FTZ 관리체계

항만 터미널 자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 등에 게재된 절대적인 면적은 큰 편이지만, 기업들이 실제로 입지할 수 있는 물류단지 및 제조단지의 면적은 아주 작은 편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이 항만 터미널과 동시에 지정되어 있는 것과 유사하다. 단 우리나라의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은 새로 부지를 조성하였기 때문에 대만과 비교하여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입주할 수 있다는 점은 다르다.

교통통신부, 항무국, 대만항주식유한공사의 3단계로 관리되고 있다.

(6) 항만 FTZ 임대료

연간임대료는 공시지가의 5% 수준이다.

대만의 제1항만은 카오슝이고 킬룽은 제2항만이나, 킬룽 지역이 일찍 발달하여 공시지가가 높기 때문에 킬룽 지역의 임대료가 더 높게 설정되어 있다. 즉, 항로가 풍부하고 환적물동량이 높은 지역은 카오슝이어서 물류사업의 기회가 카오슝에 더 높으나 임대료는 킬룽이 더 높은 것이다. 2012년 킬룽 지역의 공시지가가 NT\$ 10,000~14,000이었으나, 킬룽 FTZ의 연간임대료는 약 NT\$ 500~700 정도 수준이었다. NT\$ 10억을 투자하는 경우에는 5년 임대료의 60%를 인하 받을 수 있으나, 이 외에는 임대료 우대 정책이 없다.

(7) 공항 FTZ 관리체계

타오위웬 공항 인근에 공항 FTZ가 형성되어 있으며, 대만의 건설위주의 기업집단인 Far Glory가 부지조성, 건물 조성 등을 담당하여 운영하고 있다. 자유무역지역을 민간이 개발, 관리,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공항 FTZ는 공항터미널과 구분되어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부지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다. Far Glory가 매년 정부에 일정액의 토지임대료와 권리금을 납부하고, 입주기업으로부터 임대료를 받아 운영한다.

Far Glory는 50년간 FTZ 운영권을 부여받았으며, 2006년에 조성을 시작하였다. 정부와의 계약에서 2018년까지 건물을 모두 지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총 면적은 0.45km²로 계획하고 있다.

(8) 공항 FTZ 임대료

공항 FTA의 임대료는 매월 m²당 NT\$ 3,500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관세가 면제되며 공항 인근에 있다는 지리적 이점이 있어서 조성된 건물에 대한 입주율은 70~75% 정도로 높은 편이다.

정부와 계약할 때에 Far Glory의 임대료 정책에 대해 정부가 간섭을 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임대료 책정은 Far Glory에서 공사비, 운영기간 등을 감안하여 100% 결정한다.

투자규모가 클 경우 임대료는 인하하지 않으며, 관리비를 우대해주거나 일정기간(몇 개월) 동안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9) 공항 FTZ 입주방법

건물은 모두 Far Glory가 지으며, 입주기업은 지을 수 없다.⁴⁸ 일본의 킨테츠가 건물 4개 동에 입주의향을 밝혀와, 건물 설계 시 높이, 구조 등에서 킨테츠의 의견을 반영하여 건물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상하이 종합보세구와 유사하다.

⁴⁸ 항만 FTZ에서는 입주기업이 직접 건물을 지을 수 있다.

3. 소결 및 시사점

1) 중국 상하이

중국의 수출가공구는 우리나라의 산업단지형 FTZ와 성격이 유사하며, 상하이 종합보세구(자유무역시범구)는 우리나라의 FTZ의 장점과 FEZ의 장점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 수출가공구는 출입통제가 엄격하며 수출을 위한 전진기지라는 점에서 산업단지형 FTZ와 유사하다.

상하이 종합보세구는 관세와 증치세가 면제된다는 점에서 관세면제와 부가가치 영세율이 적용되는 우리나라 FTZ의 특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람의 입출입이 자유롭고 호텔, 영화관, 전시장, 일반식당 등의 입주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FEZ의 기능도 보유하고 있다. FTZ와 FEZ의 장점을 모두 갖고 있는 것이다. 또한 상하이 종합보세구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공기업 등 공공분야에서 100% 조성하고 건물 공사도 공공분야에서 담당하고 있다.

중국 내에서도 수출가공구에 대한 입주수요는 높지 않으며, 보세구에 대한 입주수요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관세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 특별경제구역이라 할지라도, ‘통제’보다는 ‘자유화’ 방향이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중국은 상하이 종합보세구의 자유로움을 더 확장하여 지금까지 중국 투자사의 애로사항을 작용하였던 기업설립의 신속성과 외환거래 자유성을 보장하는 자유무역시범구를 운영하고 있다.

상하이의 자유무역시범구가 성공할지 여부는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막대한 인구와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이 이러한 제도적 유연성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유치에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2) 대만

한동안 대만은 우리나라가 자유무역지역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가장 많이 참조한 국가였으나, 2000년대 이후로 기존 제도를 보완하고 있는 중이다. 1966년에 지정된 EPZ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으며, 기업활동이 집중된 지역 위

주로 지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Software 등 첨단산업 위주로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또한 경제성에 입각하여 EPZ를 지정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2003년 이후에 항만과 공항 인근에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중 공항 자유무역지역은 민간기업이 개발, 운영하고 있어 특이한 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항만 자유무역지역은 현재로서는 사실상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한편, 대만은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부산, 광양, 인천 등 우리나라의 FEZ에 대해 조사를 한 바 있으며, 산업기능 이외에 정주기능이 포함된 FEZ를 검토할 예정이다.

대만의 FEZ가 기존의 EPZ 및 FTZ와 어떤 식으로 조화가 될지와 함께, 민간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타오위웬공항 FTZ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3) 시사점

상하이의 종합보세구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BM은 ‘수입모델’이 일반적이다. 즉, 관세를 내지 않고 중국 내에 재고물량을 보관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이다. 또한 와이까오차오 터미널이 근해항로 위주로 형성되어 있고 미주 및 구주 등의 원양항로가 부족하고⁴⁹, 푸둥공항은 인천공항에 비해 네트워크가 부족하고 임대료가 높은 편이어서, 국제환적 및 재수출 등의 중계가공 BM은 발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FTZ가 지향하고 있는 BM인 중계가공무역, 재수출, 환적화물창출 등의 개념이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상하이 종합보세구(또는 자유무역시범구)가 지향하는 바와 우리나라의 FTZ가 지향하는 바는 차별화가 되고 있으므로, 적절한 BM을 발굴할 경우 우리나라의 FTZ 제도는 경쟁력을 보유했을 수 있을 것이다.

49 양산항 보세구와 반대인 상황.

또한 대만에서도 발생하고 있듯이, 저렴한 임대료를 제공하는 정책은 입주 기업 관리 및 평가 등 행정비용을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단점이 있다. 중국의 상하이 종합보세구는 임대료를 통제하지 않음으로써 기업활동의 자유로움을 보장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중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FTZ가 갖는 경쟁력이 유일하게 임대료밖에 없는 지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으며, 임대료를 시장가대로 받고 정상적인 영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 인하해주는 정책으로 선회하는 방안 또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2절. 미국

1. 미국 자유무역지역(FTZ) 개요

1) 제도적 개관

미국은 대공황이 발생한 이후 1934년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자유무역지역법(Foreign Trade Zone Act)을 제정하고 1936년 뉴욕에 최초로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하였다. 자유무역지역법(19 U.S.C. 81a~81u)과 위원회규정(15 C.F.R. 400)은 Title 19 of United State Code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관세법의 일부를 구성하며 법 준수를 위하여 관세법 규정(19 C.F.R. 146)이 따로 적용된다.(19 U.S.C. 66, 81h, 81p, 1624)

자유무역지역에서의 경제활동은 공익성에 대한 심의(Public Interest Review)를 거쳐야 하며 공익 이외의 공공안전이나 보건상의 이유로 경제활동을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자유무역지역의 설립 승인과 관련하여 운영기간, 관세영역으로의 반입 금지 혹은 특혜 수입품으로의 강제지정 등 일정조건을 전제로 승인될 수 있다. 또한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어도 관세당국이 작업개시를 허가해야만 비로소 업무를 시작할 수 있는 등 관세당국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받는다.

2) 경제적 동향

미국은 이미 70년 전부터 자유무역지역을 운영 중이며 2001년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된 상품액은 2,250억 달러로 GDP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1934년 뉴욕주의 FTZ를 필두로 지정되기 시작한 미국 FTZ는 2001년 말 현재 238개가 지정되었다. 미국 50개주마다 1개 이상의 FTZ가 지정되었으며, FTZ의 수는 1990년 161개 지역에서 2001년 238개 지역으로 연평균 3.6%씩 증가하고 있다.

2001년 미국 FTZ에 입주한 기업체의 수는 2,300개 이상이며, FTZ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의 수는 33만 명이다. 기업체마다 고용인원이 차이가 있겠으나 업체당 평균 고용인원이 143명으로,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있다고 파악된다. 또한 2001년 미국 FTZ의 총 반입 상품액은 2,252억 달러로 나타나 업체당 평균적으로 1억 달러 이상의 상품을 반입하여 조립가공, 상표부착 등 부가가치 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해석된다. 1990년 이후 FTZ 상품 반입액이 미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2.4%, 2001년 2.2%를 나타내고 있다. 미국 FTZ는 기본적으로 고용창출, 국제무역의 확대, 자국 기업의 해외진출 억제 등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FTZ 지정요건도 면적기준이나 화물량을 기준으로 설정한 것이 아니라 FTZ 위원회가 고용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 효과를 평가하여 지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FTZ는 크게 일반적 목적 구역(General Purpose Zone: 'GP Zone')과 준구역(Subzone)으로 구분된다. 일반적 목적구역(GP Zone)은 공항, 항만 그리고 산업단지 등에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일반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석유류 정제업이나 자동차 제조 등의 기능은 허용되지 않지만 조립가공 등 다양한 부가가치 활동이 허용되는 지역이다. 따라서 일반적 목적구역은 면적기준 등은 없지만 공항이나 항만으로부터 자동차로 1시간 이내의 거리에 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전통적인 공항만 시설이나 산업공단 혹은 미개발지로 누구나 사용가능한 지역을 말한다.

준구역(Subzone)은 일반적 목적구역과 달리 일반적 목적구역의 운영자(Garantee)가 관리하되 개별기업차원에서 자동차, 선박, 석유화학 등 공장시설

을 운영할 수 있는 지역이다. 다시 말하면 Subzone은, 일반적 목적구역에 대규모 장치산업 등 해당 산업을 유치하기 어려운 경우 특정 기업이 자동차 또는 석유화학공장 등 제조시설을 설치하고, 미국 내 또는 해외로부터 상품을 반입하여 제조, 조립가공, 혼합, 분류 등의 활동을 수행하여 국내 반입 또는 재수출할 수 있는 공간이다. 다시 말하면 준구역은 일반 자유무역지역에 유치할 수 없는 석유정제나 자동차 조립 등 일정 용도의 제한적 목적으로 공익에 부합할 때 기업단위로 허용된다.⁵⁰

2. 미국 자유무역지역 관리 및 거버넌스

미국 FTZ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리되며, 상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자유무역지역 위원회가 FTZ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한 법과 제도의 정비 등 지정주체로서 역할을 담당한다. FTZ의 신청주체는 기본적으로 제한이 없으나 지자체, 공공법인이 우선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Subzone의 경우 개별기업의 신청을 받은 지자체 등이 이를 다시 FTZ 위원회에 신청하여 지정을 받아 운영한다. FTZ 위원회로부터 설치허가가 나더라도 운영자가 세관에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야 FTZ를 운영할 수 있으며, 5년 이내에 사용허가를 받지 못하면 설치허가가 취소된다.

미국 FTZ 내로 반입되는 외국 물품은 관세 및 물품세가 비과세되나, 생산 및 시설재, FTZ 내에서 사용 또는 소비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있다. 미국 내 반입 시에는 제품과세 또는 원료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화주가 선택할 수 있어 세금절감이 가능하다고 파악된다. 제품과세 시 내국물품, 노임, 이윤 등 FTZ에서 생산된 부가가치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고, 원료와 과세시 재고량을 제외한 사용량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있다.

FTZ 내 입주기업에 대한 반출입 및 재고관리는 원칙적으로 세관이 담당하나, 운영자가 재고관리기록을 유지하고 운영자의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세관

⁵⁰ 19 CFR 146, 1(b)(17), 15 CFR 400.2(n).

에 보고하는 간접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FTZ 입주업체는 사전에 FTZ 위원회가 정한 회계기입방법과 양식을 활용해야 한다. 미국 FTZ 중 지정받은 지역이 모두 활성화된 것은 아니며, 2001년 말 현재 활성화된 FTZ는 일반적 목적구역 113개, Subzone 220개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활성화된 일반적 목적구역은 1990년 81개에서 2001년 113개로 연평균 3.1%씩 증가한 데 비하여 Subzone은 1990년 86개에서 2001년 220개 로 연평균 8.9%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GP Zone보다 Subzone이 훨씬 활성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 미국 자유무역지역의 특징

1) 서론

전체적으로 미국 FTZ는 국내 상품 또는 외국상품을 FTZ로 반입 후 조립 가공, 상표부착 등 부가가치 물류활동 후 수출하기보다는 국내로 반입하는 비중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관세자유지역이 국내시장보다는 해외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물류업체나 다국적 업체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점과 차이가 있다고 보인다.

2) 관세 유예와 관련된 허가제도

자유무역지역은 관세당국의 관리 감독 하에 있는 공항만 부근의 일정 지역으로 관세목적상 외국영역으로 간주되어 수입품에 적용되는 각종 조치가 유예되는 지역이다. 자유무역지역에서 허용되는 경제활동은 제조, 가공, 조립, 전시, 혼합, 재포장, 보수, 저장, 검사 등의 행위이다. 제조가공 작업은 자유무역지역위원회(the Board)의 별도 허가가 필요하다. 즉, HS 6단위가 변경되는 제조 작업은 위원회의 사전허가가 필요하며 신규원자재 수입이나 새로운 완제품 제조도 허가가 필요하다. 다만, 내국세가 부과되는 주류, 알코올 함유 향수, 담배·설탕·총기류 및 시계제품 등의 물품은 자유무역지역에서 제조될 수 없다.

자유무역지역에서는 관세와 지방세 유예(면제) 이외에 주기적 신고 등 간

소화된 통관절차를 적용받을 수 있다. 즉,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된 원료관세율이 완성품 관세율보다 낮을 경우 완제품이 아닌 부품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탄력세율(Inverted Tariff) 또한 자유무역지역에서 수행된 작업으로 인하여 폐기물이 발생하는 경우 감면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외에 자유무역지역에서는 기간 제한 없이 물품을 계속 보관할 수 있다.

반면, 법에 명시되지 않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자유무역지역에 공급되는 물품은 면세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물품은 사무용 가구, 기계설비, 역내 소비를 위한 음식료품, 물품을 구성하지 않는 연료 이외 생산설비, 도구, 건설자재, 장비 등을 말한다. 따라서 이런 물품을 반입할 경우엔 수입신고를 하고, 자유무역지역에 들어와야만 한다. 역내에서 수입 원자재로 생산된 물품⁵¹도 마찬가지이다.

자유무역지역에서는 설립자와 위원회의 허가가 없는 한, 소매사업을 할 수 없고 허가된 경우에도 내국물품이나 관세를 납부한 외국물품만 거래할 수 있다. 국내 소비를 위하여 자유무역지역에서 나가는 물품은 수입신고절차에 따라 반출된다. 또한 구역제한물품으로 반입되는 내국물품은 소비세나 관세환급 등의 목적상 수출품으로 간주되어 직접 수출되어야 한다.

3) 자유무역지역 내 물품의 법적 지위

자유무역지역 내에 반입된 물품에 대한 법적 지위는 자유무역지역법에 따라 우대외국물품(Privileged Foreign Status), 비우대외국물품(Nonprivileged Foreign Status), 내국물품(Domestic Status), 제한물품(Zone-Restricted Status)의 네 가지 종류로 분류된다. 이러한 반입물품의 지위(Zone Status)는 일반적으로 반입 신청자 또는 물품 소유주의 선택에 따라 결정된다. 모든 반입물품에 대해 자유무역지역법상 법적 지위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고 반입금지 물품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법적 지위의 결정을 보류한 경우나 자유무역지역을 단순 경유하는 경우에는 반입물품의 지위가 부여되지 않는다.

⁵¹ 사무실용 가구 도매업자가 역내에 있는 사무실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재고에서 가구를 꺼내면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1) 우대외국물품(Privileged Foreign Status)

우대외국물품(Privileged Foreign Status)을 선택하면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될 당시의 물품 상태를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원재료에 대한 관세율보다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한 완제품에 대한 관세율이 높을 경우에 우대외국물품의 지위를 선택하게 된다. 대부분의 경우 수입업자는 우대외국물품의 지위를 선택하게 되는데, 특정 무역 거래에서는 반덤핑관세 또는 상계관세의 적용가능성 때문에 자유무역지역 위원회에서 특정 물품에 대해 우대외국물품으로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⁵²

(2) 비우대외국물품(Non-Privileged Foreign Status)

비우대외국물품(Nonprivileged Foreign Status)을 선택하면 소비목적으로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이전될 당시의 물품상태를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한다(19 CFR 146.65(a)(2)). 비우대외국물품의 지위는 해당 물품이 다른 유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대외국물품이나 제한물품으로 변경할 수 있다.

(3) 내국물품(Domestic Status)

내국물품(Domestic Status)은 자유무역지역에서 다른 물품의 일부와 결합하더라도 쿼터, 관세, 내국세 없이 관세영역으로 반출할 수 있다. 내국물품의 지위는 다음 세 가지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할 때에 부여된다. 미국에서 성장, 생산, 제조한 부분에 대해 모든 내국세를 납부한 경우와 이미 수입되어 관세와 내국세를 납부한 경우이다. 모든 내국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내국물품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게 되며, 그런 경우는 오직 제한물품(Zone-Restricted Status)으로만 인정받을 수 있다.

(4) 제한물품(Zone-Restricted Status)

제한물품(Zone-Restricted Status)은 수출, 폐기, 저장 목적으로 관세영역에서

⁵² 미국 관세청 홈페이지, Importing into the United States - A Guide for Commercial Importers, 2006, p.152.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한 물품에 적용된다. 제한물품은 관세법상 관세환급(drawback), 보세보관(warehousing), 관세담보(bonding) 등의 적용 또는 내국세법상 내국세의 환급(drawback or refund), 면제 등의 적용에 있어서 수출된 것으로 간주된다.

4) 자유무역지역 생산물품에 대한 관세

(1) 관세유예의 효과

자유무역지역은 지리적으로 미국 영토 내에 위치하지만 미국 관세영역 밖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외국에서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되는 물품은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될 시점에 수입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자유무역지역에서 국내로 반입되는 시점에 관세가 부과되므로 관세유예(Duty Deferral)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2) 수입시점의 차이

내국물품(Domestic Status)을 제외한 자유무역지역 반입물품은 소비목적(Entry for Consumption)으로 미국 관세영역에 들어오는 시점에 ‘수입’된 것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그러나 내국물품에는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입되더라도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외국에서 원재료, 반제품 등을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하여 자유무역지역에서 제조·가공을 거친 제품을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러한 물품들은 미국 관세영역으로 반입되지 않은 상태이고 ‘수입’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3) 연방관세법상 조화관세율표 기준

소비 목적으로 관세영역에 반입될 때 적용되는 관세율은 연방관세법상 조화관세율표(Harmonized Tariff Schedule)에 따라 결정된다.⁵³ 정부수입분에 대

⁵³ 미국 자유무역지역 협회 홈페이지, FTZ Manual, pp.106~122.

해서도 관세면제 조항이 없기 때문에 관세를 부담해야 관세영역으로 반입할 수 있다. 한편, 외교 또는 대외군사 목적의 반입은 관세법상 소비 목적의 반입이지만, 외교관, 영사관 또는 이와 유사한 자들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물품은 국무성의 요청에 따라 관세 없이 자유무역지역으로부터 반입될 수 있다. 이러한 물품들은 다른 사람의 편의나 판매 기타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4) 일반특혜관세제도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GSP)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기 위해서 물품이 개발도상국(Beneficiary Developing Country)으로부터 직접 수입되어야 하고, 소비 목적으로 반입된 비우대외국물품은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허가 받을 당시와 동일한 상태이어야 한다.

(5) NAFTA 규정의 적용여부

자유무역지역 생산물품에 대해 FTA와 같은 협정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거래요건, 품목요건, 원산지요건, 운송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현재 미국은 호주, 바레인, CAFTA-DR22), 칠레, 이스라엘, 요르단, 모로코, NAFTA23), 싱가포르, 한국과 FTA를 발효하였다. 미국 자유무역지역 생산물품에 적용되는 대표적인 협정세율로서 NAFTA를 들 수 있다. NAFTA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완전생산기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을 일반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 완전생산기준의 연장선으로서 역내산 원재료만을 사용하여 1개국 이상의 NAFTA 협정국 영토 내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도 NAFTA 원산지를 부여하는 규정⁵⁴을 두고 있다.

NAFTA 원산지요건을 충족한 제품이더라도 캐나다, 멕시코, 미국으로 그 제품을 운송하기 위해 또는 제품의 상태를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하역, 선적 등의 작업 이외에 가공작업을 NAFTA 지역 외에서 거친 경우 NAFTA 제품의

⁵⁴ NAFTA Article 401c), 연방관세법 제3332조 (a)(1)(C)

지위를 상실한다(직접운송원칙)⁵⁵.

연방관세법 제3332조 (a)(2)(A)에 의하면 자유무역지역 생산물품에 대해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번변경기준은 비역내산 원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자유무역지역에서 비역내산 원재료를 사용하여 생산된 제품은 NAFTA 원산지를 인정하지 않는다.

4. 미국 자유무역지역 운영실태

미국 FTZ에 반입된 상품액 규모는 2001년 말 현재 2,252억 달러에 이르러 1990년의 반입 상품액 900억 달러와 비교할 때 연평균 8.7%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 FTZ의 상품반입액은 1993년에 1천억 달러를 상회하였고, 1998년에 1,500달러를 상회하였으며, 2000년부터 2천억 달러를 넘어섰다.

1990년 총 상품반입액 중 Subzone의 비중은 93%를 차지하였으나 2001년에는 8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GP Zone의 비중이 과거보다 다소 증가하고 있다. 1998년 이후 15년간 미국의 FTZ는 GP Zone보다는 Subzone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활성화되어 있다. 1990년 미국 국내로부터 FTZ로 반입된 상품액은 706억 달러였으나 2001년에는 1,386억 달러로 약 2배 증가하여 연평균 6.3%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총 상품반입액 중 미국 국내 상품의 반입액과 외국으로부터 수입액으로 구분하여 검토한 결과 국내로부터 반입된 상품액이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990년 미국 국내에서 GP Zone으로 반입된 국내 상품액 비중은 10%에 불과하였으나 1994년 20%를 상회하였고 1995년 35%, 1998년 41%, 2001년에는 53%를 차지할 만큼 국내 상품이 GP Zone에 반입되는 비중이 매년 확대되었다. GP Zone이 과거에는 주로 외국 상품이 반입되어 부가가치 물류활동이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국내 상품을 FTZ에서 유통가공하여 국내로 재반입하는 비중이 증가하였다. 또한 Subzone의 경우 1990년 전체 반입 상품액의 83%가 국내로부터 반입된 상품이었으나, 1996년부터 78%로 감소하기 시작

⁵⁵ NAFTA Article 411

하여 1999년에는 70%, 2001년에는 63%로 감소추세를 나타내 GP Zone과 상반된 현상을 나타내었다. 즉 GP Zone은 점차 미국 내 상품이 반입되어 부가가치 물류활동을 거친 후 국내로 반입 또는 세계 각지로 수출되고 있으나 생산공장형 중심의 Subzone은 국내 상품보다는 외국 상품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Subzone은 해외생산거점으로부터 조달된 외국상품 또는 중국 등 생산공장으로부터 수출된 상품의 유통가공이 확대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GP Zone과 Subzone에 반입되는 미국 상품의 비중은 1990년 78%에서 2001년 62%로 감소추세를 나타내 기존에 미국 내 상품 위주로 운영되어 오던 것이 점차 외국 상품에 대한 조립가공활동과 부가가치 물류활동을 더 활발히 수행하는 공간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1997년 이후 FTZ에 반입되는 미국 내 상품액의 비중이 70% 미만으로 감소되기 시작하였다.

5. 소결 및 시사점

미국의 자유무역지역의 경우는 외국으로부터의 수출입 증가와 관련 산업의 발전을 통한 무역증진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기본적인 수출입의 물동량의 증가를 유발하여 그에 따르는 부속적인 경제적 이익의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인다. 이는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의 향후 발전을 위한 하나의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제5장 자유무역지역 기능 재정립 및 제도개선 방안

제1절.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 여건

1. 내부 환경

자유무역지역은 산업활동에 필요한 제반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으며, 정부의 재정투자로 인해 임대료 등이 저렴한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다. 자유무역지역의 임대료는 정부의 고시 등에 의해 결정되므로, 우리나라의 높은 지가 상승률 등에 따른 비용상승요인이 일정 부분 통제가 가능하다는 점도 자유무역지역의 강점이라 할 수 있다.

항만형 및 공항형 자유무역지역은 항만과 공항에 직접 인접해 있어 가공 및 재수출을 위주로 하는 기업들에게 유리한 입지를 제공하고 있다.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 또한 대부분 임해지역에 입지하고 있어, 항만을 통한 수출입에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다.

자유무역지역의 조성 취지인 원재료 수입 및 제품 재수출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통관 등의 제도가 정비되어 있으며, 항만형 및 공항형 자유무역지역 등은 제도가 운영된 기간이 길지 않아 미흡한 부분이 일부 있으나, 관리기관 및 관세청 등의 협조로 이러한 부분이 제도 도입의 취지에 맞게 개선되고 있다는 점도 강점으로 들 수 있다.

다만, 자유무역지역의 관리권이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등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제도 운용의 효율성이 높지 않은 점은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지역 등 유사한 제도 등이 혼재되어 있고, 외국인투자자들의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대부분 자유무역지역이 교육 및 문화 등이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에는 입지해 있지 않을 뿐더러, 해당 지역 내에서도 주거지역과 떨어져 있어, 정주여건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인력 조달도 쉽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투자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면적이 크지 않아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는데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필지 계획 등도 비교적 소규모로 나누어져 있다. 특히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은 1개 기업이 임대를 받을 수 있는 최대면적이 제한되어 있기도 하다. 해당 기업이 임대를 할 수 있는 횟수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이러한 규정을 피해갈 수도 있지만, 인접한 지역에서 대규모 부지를 확보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대형 선도기업을 유치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자유무역지역의 최대 장점이 저렴한 임대료라는 점에서 국내기업의 입주수요 또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수출입 비중 등 입주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을 뿐 아니라 입주 이후의 비즈니스 활동에도 일정 수준 제약을 가하고 있다.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의 경우에는 사업계획 대비 달성 수준을 평가하는 실적평가를 실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유무역지역 내 시설의 양수양도가 필요한 경우에도 자유무역지역 조성 취지에 부합하는 기업 및 사업으로 한정하고 있어 기업입장에서는 애로사항을 겪고 있기도 한다.

수출입에 적합하도록 각종 혜택이 주어지고 있어 울타리 등 통제시설설치를 통해 다른 구역과의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할 뿐 아니라, 인력 및 화물의 자유무역지역 진출입이 비교적 엄격히 통제되고 있다는 점 또한 자유무역지역 제도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자유무역지역의 관세면제 효과를 좀 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현 자유무역지역 제도와 연계되어 있는 관세나 통관관련 법제도를 수요자 위주로 개선하여 좋은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자유무역지역이 역외지역이라는 개념을 최대한 살려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고, 또한 새로운 비즈니스 도입이 가능할 수 있는 관점에서 관세, 통관 등과 연계된 기존의 규제나 문제점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동일한 가치사슬에 묶여있는 협력 기업군들이 자유무역지역 내

에 입주하게 된다면 클러스터 효과와 함께 안정적인 산업 생태계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이와 연계된 기업유치도 쉬워질 수 있어 유사 산업군 간의 클러스터화 지원이 가능한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2. 외부 환경

세계 경제에서 아시아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특히 한중일 삼국이 모여 있는 동북아는 전체 GDP 규모뿐 아니라 1인당 GDP도 같이 증가하여 생산기지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거대한 소비지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한중일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TPP 협상에 일본이 참여 중이며 한국과 중국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RCEP에도 한중일이 모두 협상에 참여하고 있어 동아시아 거대경제권이 블록을 이루게 될 것이다. 중국 및 일본에 비해 내수시장이 작다는 약점이 있는 우리나라에게 이러한 거대 경제권 형성은, 자유무역지역뿐 아니라 전반적인 외국인투자유치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또한 한중 간, 한일 간 카페리를 통한 복합운송이 추진되고 있어, 컨테이너 선을 이용한 운송에 비해 시간 절감 뿐 아니라 제품의 파손율을 낮출 수 있으며, 재고보관비용을 줄일 수 있다. 한중 간 복합운송은 중국의 일부 성에만 한정되고 있고, 한일 간 복합운송은 시범사업 단계에 머물고 있기는 하지만, 3국간 교역 증대 및 경제통합 등이 이루어지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의 북극해 지역 자원개발 등에 따라 석유 및 가스자원의 비축 및 정제 등의 수요도 증가하고, 컨테이너 운송이 상용화되게 되면 현재의 Hub & Spoke 형태뿐 아니라 남북항로가 교차하는 항로교차형 환적물동량이 신규로 창출될 것이다. 환적물동량 증가는 항만에 인접해 있는 자유무역지역에서의 제조 및 물류 부가활동 수요를 높이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두산중공업, LG전자, 하이닉스 등의 글로벌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고, 이들 기업의 본사 및 대형공장이 입지

하고 있어 안정적인 공급체인망 유지 등을 위한 투자수요도 높은 편이다. 다만 이 경우 부지가 대규모로 필요하나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은 지정면적 자체가 큰 편이 아니며, 필지 등이 작게 구분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입주하는 어려울 뿐 아니라, 주요 기업의 공장입지가 자유무역지역과는 거리가 있어 자유무역지역으로 직접 유치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다만, 이로 인해 파생되는 부가적인 수요 등을 찾아 자유무역지역에 유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치안이 안전하며, 항만, 공항, 도로 등 물류 인프라와 함께 전기, 수도 등의 산업활동 인프라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 또한 IT 강국으로 정보접근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중국의 경제발전 및 제도개선 등으로 외국인투자자들이 중국에 직접 투자하려는 의향이 높은 점은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막대한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고 있으며, 재수출보다는 중국내 소비를 목적으로 진입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중국 또한 노동집약산업보다는 첨단기술 위주의 투자를 선호하고 있으며, 인센티브 지원도 이러한 산업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자유무역시범구를 통해 과실송금 부분의 애로사항 등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치하고자 하는 산업이 우리나라와 점점 유사해지고 있을 뿐 아니라, 제도혁신 등의 속도는 우리나라보다 더 빠른 편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주요한 외국인투자 국가인 일본의 경제가 다시 주춤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으며, 최근의 한일 관계 냉각에 따라 일본으로부터의 실질적인 외국인투자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도 위협요인이라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기술발전으로 일본 내에서 조달하는 부품 등과 차이가 별로 없으며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과 함께, 2011년 후쿠시마 지진 등으로 부품 조달에 문제가 생김에 따라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있어 매력적인 해외투자처가 되었다. 그러나 최근의 한일관계 및 엔저현상 등으로 일본으로부터의 외국인투자 등이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다.

또한 미국의 양적완화 출구전략 등으로 인해 글로벌 기업의 투자가 위축

되고, 우리나라 등 신흥국에서의 자본유출이 이루어질 가능성 등이 제기된다. 또한 미국 등 선진국에서 해외에 투자하였던 자국기업들을 다시 본국으로 유치하려는 re-shoring 정책 등이 추진되고 있다. 본국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에 대해 세금 지원 및 이전 비용의 일부지원 등을 실시하면서,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처가 다양해짐에 따라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 유치에는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3. 자유무역지역 방향 설정

자유무역지역 제도는 수출입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내수 비즈니스를 위주로 하는 기업에게 불편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익산자유무역지역은 2010년에 입주기업들의 동의를 거쳐 자유무역지역에서 해제된 바가 있다. 그러나 임대료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자유무역지역에 적합한 비즈니스를 영위하지 않는 기업들도 자유무역지역에의 입주를 희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외국인투자자와의 역차별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단지 또한 국가에서 조성하고 있으나, 분양 방식으로 기업에게 제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임대방식을 주로 택하고 있는 자유무역지역과는 괴리된다. 분양 방식은 투입된 비용을 즉시 회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과거 우리나라처럼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경우에는 기업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자유무역지역은 토지지가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의 위험을 헷징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 할 수 있다.

자유무역지역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인 관세면제는 전 세계적인 FTA 확산 및 기술발전 등으로 점차 혜택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TPP 및 RCEP 등이 발효되면, 우리나라의 주요교역국 내에서의 자유무역이 실현될 수 있으므로 자유무역지역의 관세면제는 더 이상 유효한 혜택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또한 우리나라는 미국, EU, 아세안 및 중국 등과의 FTA가 발효 또는 타결되어 있는 상황이다. 자유무역지역이 아닌 관세영역에서 수입이 되어 추후 재수출을 하는 경우에도 관세가 환급이 되므로, 사실상 국내소비가 아

년 재수출의 경우에 기업들이 부담하는 관세는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다만, 서류 준비 비용 및 기업 현금흐름 등의 측면에서는 관세면제가 환급보다는 기업입장에서 선호된다.

제2절. 자유무역지역 기능 재정립 방안

1. 유사·관련 법제도 검토

1) 유사법 적용대상

자유무역지역법은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그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주로 경제운영 및 그 장소에 관한 법률이다. 경제자유구역법은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경제 운영 및 장소에 관한 법임과 동시에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자라는 주체에 대하여도 규율하고 있다. 또한 동법은 주로 외국인이 경제자유구역에서의 경제활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외국인 생활여건의 개선 및 편의제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식품산업진흥법은 국가클러스터와 식품산업에 대한 지원을 담고 있는 경제 운영 주체에 관한 법이며 국가클러스터라는 공간적인 집약을 고려한다면 경제 운영의 장소에 대하여도 규율하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외국인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에 주안점을 두고 있기에 주로 경제운영주체에 관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2) 국내 유사제도 간 주요 특징 비교

기본적으로 이러한 네 가지 법들은 지원 범위가 다르다. 자유무역지역법은 자유무역지역을 설정하는 데 따른 지원법이며, 경제자유구역법은 우리나라에 투자한 외국인 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들의 경제활동 외에 생활권에 대한 지원(예, 병원, 학교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외국인 혹은 그 기업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법으로서 개

별 기업에 대한 지원이지만, 국내기업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자유무역지역을 이용하려고 하는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유무역지역법에서 지원할 내용은 보완하되, 각 기업의 특성에 따라 관련법에서 추가적인 지원책을 규정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러한 지원책 내지는 법 규정이 서로 유기적으로 보완되고 하나의 체계를 갖추어 투자의 유인방법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자유무역지역법을 운영하고 있는 기본취지가 살아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들 네 가지 법제도는 첫째, 연계성을 가지고 지원되어야 하며, 둘째, 이러한 연계성이 일괄적인 행정체계와 조직 내에서 서비스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5-1〉 자유무역지역과 유사한 국내제도간의 주요 특징 비교

구분		자유무역지역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외국인투자지역	경제자유구역
법적근거		자유무역지역의지정 및운영에관한법률	산업직접활성화및공 장설립에관한법률	외국인투자촉진 법	경제자유구역지정 및운영에관한법률
목적		외국인투자유치	외국인제조업의투 자유치	지역산업육성을 위한투자유치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및법률여 건조성
주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좌동	좌동	좌동
입주자격		내·외국인	외국인	외국인	외국인
지 원 체 계	조세 감면	-국세: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그후 2년간 50% 감면 -지방세: 취득세·등록세·재산세·3년간 100%, 그후 2년간 50%	-고도기술수반사업의 경우에만 해당 -국세: 법인세·재산세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 -취득세·등록세 15년간 면제	-국세: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2년간 50%감면 -지방세: 취득세·등록세·재산세 3년간 100%, 그후 2년간 50%	-법인세·소득세·지방세: 3년간 100%, 그후 2년간 50%
	관세 부과	교통유발부담금·산업단지조성·개발부담금·공유수면·점유료·농림지조성비 면제	관세·특소세·부가세 투자신고 후 3년 이내에 도입되는 자본재 100% 면제	-	연구·개발·용·자본재 3년간 면제

〈표 5-1〉 자유무역지역과 유사한 국내제도간의 주요특징 비교(계속)

구분		자유무역지역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외국인투자지역	경제자유구역
지원 체계	준조 세	-	-	-	교통유발부담금, 개발사업승인시 각종인허가의 면 제, 각종 개발부담 금, 농지조성비 면 제
	노동	-	-	국가유공자 고용 의무	-
	행정 지원	원스탑서비스	산업단지공단	외국인투자지원 센터	경제자유구역청
	기타	기술개발 및 인력 양성자금지원/임 대료 감면	임대료감면/ 분양 가인하차액보조(지 불)	중소기업고유업 종 참여제한/ 생 활환경시설 지원	기준공장률면제/ 국공유지연구시설 물 건축/ 영어공 용/외국병원약국 허용/외국교육기 관설립/기반시설 지원/출자총액 면 제/중소기업고유 업종 참여
지정 사례		마산/익산/군산/ 대불/부산/광양/ 인천	사천/오창/현곡	구미/여수/오송	부산진해/광양/인 천

2. 기능 재정립 방향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은 외국인 투자촉진, 무역증진, 국제물류 원활화, 지역개발이라는 네 가지 기능을 중심으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구조와 지경학적 조건에 맞게 중계가공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2, 3, 4장에서 분석한 것과 같이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로 인해 세계 무역과 이에 따른 투자패턴이 크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맞춰 국제물류시장의 흐름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과거 1970년대 우리나라의 저렴한 인건비를 기반으로 한 가공무역 형태의 외국인 투자

패턴은 이미 중국을 거쳐 동남아로 이전되었으며, 2000년대 초반부터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탈한국화’라는 현상으로 국내 사업장을 해외로 이전하게 되었다. 미국과 유럽의 해외진출 기업들의 투자회귀(re-shoring)현상과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해외진출한 국적기업들의 U턴 현상도 일어나는 등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에 우리나라 경제가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같은 저렴한 인건비나 임대료에 의존하는 형태의 정책이나 국토 전체에 대한 균등한 정책은 이미 한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국가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별 특화전략이 필요하고, 글로벌 산업의 가치사슬과 국제분업 체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 하에 우리나라 기업유치 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은 무역증진과 국제물류 원활화라는 상호 상관관계가 큰 기능과 지역개발이라는 상충되는 기능을 동시에 유지하면서 외국인 투자유치에 노력을 기울여왔다. 따라서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현재 주어진 기능 중 무역기능 강화와 지역개발이라는 상충 가능성이 높은 두 가지 기능을 분리하면서 재정비가 필요하다.

시나리오 1은 기존 법제도 틀은 그대로 유지하되 현재의 제도상 비즈니스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및 수요자 맞춤형 인센티브 개선 내용이다. 현재 글로벌 환경변화에 필요한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이와 연계하여 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인센티브 규정을 신설하는 등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 제도의 기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시나리오 2는 상충되는 두 기능을 제도 내에서 분리시켜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다. 글로벌 가치사슬 강화 기능은 기존에 언급되어 있던 무역증진이나 국제물류 원활화라는 내용을 모두 담고 있으나 좀 더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의 중계무역기능 강화와 함께 외국인 투자패턴에 부합하는 차원에서 부가가치 기능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는 차원에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개발 차원에서, 지역개발은 낙후지역에 대한 산업기능과 국내외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해당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 언급한 것처럼 두 개의 기능이 공존할 수 있

으나 상충되는 부분도 동시에 존재한다. 따라서 주로 수도권, 동남권, 중부권 등 글로벌 가치사슬의 연계성이 높고 외국자본의 투자가 빈번한 지역을 선도 지역(1종 자유무역지역)으로, 강원권, 전북권 등 지역개발 기능이 더 큰 지역은 특화지역(2종 자유무역지역)으로 이원화하여 제도적 열개를 제안하고자 한다.

현재와 같은 조세 감면, 저렴한 임대료 정책은 지역개발이 필요한 열위 지역에 그대로 존치하고 글로벌 가치사슬을 통한 협업이나 클러스터화 기능이 필요한 지역은 기존에 부여되던 조세 감면, 저렴한 임대료 정책을 철회 혹은 완화하여 클러스터화 및 국제분업체계 지원, 비즈니스 환경개선 등에 초점을 맞추어서 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현재 자유무역지역 제도를 이원화하여 선도지역(1종 자유무역지역)은 글로벌 가치사슬 강화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해 현재 있는 임대료, 조세인센티브 완화를 추진하고 이에 상응하는 입주기업 사후지원제도 및 산업클러스터와 같은 비즈니스 차원의 활동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한다. 반면, 특화지역은 현재의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하면서 수요자 맞춤형 제도 개선, U턴 기업이나 국내 기업들의 입주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는 방안이 필요하다. 제안된 시나리오 별 신규 자유무역지역 제도의 특성은 아래와 같다.

〈표 5-2〉 신규제안 자유무역지역 제도별 특성 비교

구분	시나리오 1 (지원강화 및 규제개선)	시나리오 2	
		선도지역 (1종)	특화지역 (2종)
목적 및 기능	가공무역 및 국제물류 활성화	무역증진 및 물류산업 활성화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활 성화
특성	- 국제분업 연계 - 비즈니스 기능 강화 - 사후평가	- 국제분업 연계 - 비즈니스 기능 강화 - 사후평가	- 국내외기업 균등입주 - 특화산업 강화
주요 인센티브	- 조세/임대료 강화 - 관세관련 규제해소 - 클러스터화시 지원	- 조세/임대료 감면제 도 축소/유지 - 클러스터화시 지원	- 조세/임대료 감면제도 유 지/강화 - 입주기업 직접지원(교육, 노동 등)
대상지역	전지역	수도권, 중부권, 동남 권 혹은 공항만형	강원권, 전북권, 전남권 혹은 산업형

제3절. 자유무역지역 제도 개선방안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자유무역지역 제도는 현재 자유무역지역 지역 제도를 그대로 두고 강화하려는 시나리오 1과 현 자유무역지역 제도를 이원화하는 시나리오 2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시나리오 1의 경우 기능이 이원화된 시나리오 2의 두 개 경우를 통합하여 제시한 내용이므로 본 절에서는 다시 재정리하지 않고 시나리오 2의 두 개 제안내용만 정리하고자 한다.

1. 선도형 자유무역지역(1종)

선도형 자유무역지역(안)은 무역증진이나 국제물류 원활화라는 기존 기능에 글로벌 가치사슬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도모하고자 제안된 내용이다.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의 중계무역기능 강화와 함께 외국인 투자패턴에 부합하는 차원에서 부가가치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기존 분석에서 나온 기업간의 분업체계와 연계한 외국인 기업 투자유치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선도형 자유무역지역은 기존에 부여되던 조세 감면, 저렴한 임대료 정책은 철회 혹은 약화시키고 클러스터화 및 국제분업체계 지원, 비즈니스 환경개선 등에 초점을 맞추어서 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들이 입주 전에 고정적으로 받는 인센티브 조항을 입주 후 기업활동에 따라 지원하는 사후지원평가제도 도입 및 클러스터 구축 시 지원을 하는 정책이 핵심이다.

선도형 자유무역지역에 신규 도입되거나 개정되어야 할 제도는 다음과 같다.

1) 클러스터 지원·육성 도입

(1) 제안 이유

기 분석된 내용처럼 우리나라 외국인 투자의 다수가 국내 기업과 협업을 위해 투자를 한 경우인데, 이와 관련한 지원 법제도나 정책이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중심의 외국인 투자패턴 중 최대 강점인 협업체계 강화를 위해 자유무역지역 내 클러스터 지원·육성 항목을 도입하여 외국인 투자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 중심의 글로벌 가치사슬 강화 및 국내 기업과의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부가가치, 고용 및 물동량 창출 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해당 기업 간의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Spillover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선도형 자유무역지역 제도 내에 클러스터 구축 관련 지원 및 육성제도를 도입하여 우리나라 기업과의 협업을 위한 특정산업군 외국기업들의 자유무역지역 입주를 촉진해야 한다.

(2) 제안 내용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내에 다음과 같은 규정을 삽입해 협업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외국계 기업들의 투자유치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제〇〇조(클러스터의 지원·육성) ① 관리권자는 투자유치와 관련된 산업 클러스터의 지원과 육성에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별 클러스터 육성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클러스터 참여 기업 및 기관들의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3. 클러스터 참여 기업 및 기관들의 상호 연계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다른 지역 및 다른 산업집적들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사항
5. 클러스터의 국내외 투자유치와 수출 촉진에 관한 사항
6. 클러스터에 대한 투자와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클러스터의 육성을 위한 사항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사업 추진 시 클러스터에 참여하는 기업과 기관들을 우선으로 하여 지원할 수 있다.

2) 사후평가지원제도 도입

(1) 제안 이유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 내에 입주한 기업들이 최초 입주선정 시 제안한 투자규모, 고용 및 물동량 창출 등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어서 현재 주어진 인

센티브가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 사항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운영주체들을 중심으로 사후평가관리를 하고 있으나 분명한 법제도 규정이 미흡하여 자유무역지역에 부여되는 인센티브의 실효적인 파급효과 도출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자유무역지역 법제도 내에 입주기업 관련 사후평가 제도를 구체화하여 상별규정을 통한 인센티브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

(2) 제안 내용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혹은 시행령」 내에 다음과 같은 규정 삽입을 통해 자유무역지역 인센티브의 실효성 제고로 자유무역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가 있다.

제○조(입주기업 사후평가지원제도) ① 운영권자는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사후평가지원기준을 마련하여 효과적으로 인센티브 집행해야 한다.

② 사후평가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후평가지원기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사후평가지원기준의 평가지침에 관한 사항
3. 사후평가지원기준관련 인센티브 관련 상별 규정 사항
4. 사후평가지원기준관련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후평가지원기준 및 집행관련 사항

③ 운영권자는 관리권자와 협의를 통해 사후평가지원기준에 의거하여 그 세부집행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관리·운영 효율화

(1) 외국인투자위원회 설립

①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은 관리권자, 운영권자가 복잡다기하게 분산되어 있어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협업체계가 미약한 상황이다. 외국인투자 및 유치 관리체계를 체계화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위원회(가칭)와 같은 기

구를 설치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와 관련되는 각종 정책의 입안 및 제언, 사업 인허가 유인제도의 개발 수립 타 행정부서와의 의견조율 업무조율을 효율적이며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편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② 제안 내용

외국인투자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및 여타 관련 행정부서와 협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실질적 권한의 부여 및 행정부서 내의 지위를 고민하여 결정하는 조직이다. 또한 외국인투자위원회는 외국기업이 실제로 우리 자유무역지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외국기업들의 수요조사를 전담하고 그러한 수요를 실제로 맞추어 줄 수 있는 유연성 권한을 가진 기구로서 자유무역지역 제도를 재구축하는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자유무역지역법, 경제자유구역법, 외국인투자지역 등으로 산재하여 있는 여러 법률들 중 외국인과 관련된 부분을 하나의 제도로 통폐합하고 일원화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제를 정비하고 외국인투자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왜냐하면 관련되는 부처와의 의견 조율 및 효과적인 사업집행을 위하여 조직 체계상 국무총리실 하에 두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관련 법률에 하위의 실무기관 및 관련기관의 설치근거와 업무범위 등을 명시하여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입주방식 전환(1종, 2종 공통)

① 현황 및 문제점

자유무역지역 입주 시 입주허가를 받고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은 기업에게 이중으로 행정절차를 부담시키고 있다. 또한 입주허가 준비과정에서 기업에게 향후 기업 활동의 불확실성 발생 및 이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발생의 가능성도 존재한다. 현재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려는 자는 입주허가를 받고(법 제11조), 토

자·공장 등에 대해 매매·임대차계약을 체결(법 제13조)해야 한다. 또한 입주 기업체 등이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입주허가를 받았을 경우 등에는 입주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법 제15조)하고 있다.

② 제안 내용

일부 관세유보, 임대료,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감안할 경우 기존 보세구역과 같이 엄격하게 입주자격을 심사할 필요 등의 의견⁵⁶은 있으나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의 경쟁력 제고 및 기업들의 비용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입주계약을 통해 입주하는 산단 및 외투지역과 유사하게, FTZ도 입주기업과 관리원간의 상호 동등한 관계에서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변경이 필요하다.

현 행	개 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 - - - - - - -.
2. “입주기업체”란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입주 자격을 갖춘 자로서 제11조에 따라 입주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 제6호까지 - - - - - - - - - -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 --.
3. “지원업체”란 제10조제6 호에 따른 입주 자격을 갖 춘 자로서 제11조에 따라 입주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 제10조제7호 에 ----- ----- 입주계약을 체결 한 자를 -----.

자료: 본 규정은 본 연구에서 제안된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의 「자유무역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관련 입법예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 - 474호)에 반영하여 현재 입법화를 추진 중인 부분임

56 산업연구원, 『자유무역지역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방안 연구』, 2014.10., p.17.

4) 최적 사업환경 제공 및 신규 비즈니스 창출

(1) 입주기업체 재고관리의무

① 현황 및 문제점

IT비즈니스 기반 확대, IT산업 활성화 등으로 최근 우리나라 기업들은 전산화 기반이 강화되었으며,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기업들의 경우 ERP System(전자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재고관리를 하고 있다. 또한 이 시스템을 통해 회계감사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충분히 전산데이터를 통해 재고관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은 반출입 물품 등(반입, 반출, 사용·소비·생산한 물품) 재고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기록 자료를 5년간 보존해야 한다는 조항(법 제38조)과 자유무역지역은 관세유보지역으로 향후 정당한 관세 면제 또는 부과를 위하여 관세행정상 재고관리상황 조사가 필요하다는 조항(법 제39조)이 시대흐름과 맞지 않고 입주기업들에게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② 제안 내용

자유무역지역 내 입주기업체간 물품거래 파악이나 FTA 확산 등으로 인한 원산지 규정 근거자료 확보 등으로 인해 물리적인 재고기록 확보가 필요하다는 반대의견도 있으나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확실한 근거자료 확보로 기업들의 불필요한 시간 및 비용 낭비를 막아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관세유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유무역지역 내의 입주기업체에 대한 재고관리의무 규정은 폐지되거나 기간 축소를 통해 기업들의 부담을 축소해야 할 것이다.

현 행	개 정(안)
제37조(재고 기록 등) ① 입주기업체는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보수작업의 내용 등 재고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의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한 물품	제38조(재고기록 등) <삭제>

현 행	개 정(안)
제37조(재고 기록 등) ① 입주기업체는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보수작업의 내용 등 재고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의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 한 물품 2.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소비하거나 생산한 물품 3. 자유무역지역으로부터 반출 한 물품 4. 제3항에 따라 외국물품등을 폐기한 후에 남은 경제적 가치를 가진 물품	제38조(재고기록 등) <삭제>
제39조(입주기업체의 재고관리 상황의 조사 등) ① 세관장은 제38조에 따른 재고관리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39조(입주기업체의 재고관리 상황의 조사 등) ① ----- 입주기업체의 재고 물품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 ----- -----.

자료: 본 규정은 본 연구에서 제안된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의 「자유무역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관련 입법예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 - 474호)에 반영하여 현재 입법화를 추진 중

(2) 국외반출 및 수출신고

① 현황 및 문제점

최근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해외직구 등 특성상 소액, 소량, 다수의 물류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 자유무역지역에서는 국외로 물품을 반출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건별로 신고를 해야 한다(법 제30조)라는 규정으로 입주기업들에게 불필요한 행정수요와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② 제안 내용

반대로 건별신고를 일괄신고로 전환했을 경우 국내 유입화물들에 대한 적절한 관세부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⁵⁷⁾이 있으나 자유무역지역

을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확대 및 입주기업들의 불필요한 행정수요 및 비용을 절감시켜 줄 수 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 물품 등 특성상 소액·다량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애로가 발생하므로 건별신고에서 일괄신고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현 행	개 정(안)
제30조(국외로의 반출 및 수출)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국외 반출신고에 관하여는 관세법제226조, 제242조, 제245조, 제246조 제1항 제2항, 제247조 제1항 단서, 제249조, 제250조 제1항 본문·제2항·제3항 및 제25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세법 제226조제1항 중 “수출입”은 “국외 반출”로, 같은 조 제2항 중 “수출입물품”은 “국외 반출물품”으로, 같은 법 제242조 단서 및 제251조 제1항·제2항 중 “수출신고”는 “국외 반출신고”로, 같은 법 제242조 단서 중 “수출물품”은 “국외 반출물품”으로, 같은 법 제245조제1항 제2항, 제246조 제1항, 제247조제1항 단서, 제249조 및 제250조제2항·제3항 중 “수출”은 “국외 반출”로 본다.	제30조(국외로의 반출 및 수출)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226조, 제241조 제2항1)----- ----- ----- ----- ----- ----- ----- ----- ----- -----

주: 1) 관세법 제241조 제2항 : 신고를 생략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3) 출입 및 출입제한

① 현황 및 문제점

과거 자유무역지역은 화물중심의 가공무역을 촉진하는 공간이었으나 최근에는 화물과 사람의 만남을 통해 가공무역을 촉진하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 중국의 닝보, 파나마의 콜론 자유무역지역에서는 쇼룸⁵⁸ 개념을 통해 수입된 상품의 도소매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자유무역지역에 출입하려는 사람 또는 자동차는 관리권자가 발급한 출입증 또는 통행증을 소지해야 하고(법 제52조), 세관장은 외국물품의 효용

⁵⁷ 전게서, 2014.10. p.45.

⁵⁸ 파나마 콜론 자유무역지역 쇼룸, 중국 닝보 보세구의 와인교역센터는 사람 제한은 없음.

적 관리에 필요할 경우 관리권자에게 출입증 또는 통행증 발급 제한 요청이 가능(법 제53조)하다라는 규정이 있어 사람들의 자유로운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쇼룸과 같은 신규 비즈니스 창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② 제안 내용

해당 자유무역지역 출입조항에 대해 자유무역지역은 물품관리 측면에서 출입증을 발급하나, 물품관리는 물품의 반·출입신고, 조사, 검사, 금지 및 제한 규정에 의하여 가능하다. 또한, 쇼룸 등 중계·가공무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람들의 자유로운 출입이 필요하므로 사람 또는 자동차 출입을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세관에서 관리권자에게 공문 통보 등 행정 협조를 통해 자유무역지역 출입 부적합자의 출입 제한이 가능하므로 출입 제한 부분도 폐지할 필요가 있다.

현 행	개 정(안)
제52조(자유무역지역의 출입) 자유무역지역을 출입하려는 사람 및 자동차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권자가 발급하는 출입증을 지니거나 통행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권자는 출입증 또는 통행증을 발급한 명세를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2조(자유무역지역의 출입) <삭제>
제53조(자유무역지역의 출입제한) 세관장은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반출되는 외국물품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권자에게 제52조에 따른 출입증 또는 통행증의 발급을 제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53조(자유무역지역의 출입) <삭제>

자료: 본 규정은 본 연구에서 제안된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의 「자유무역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관련 입법예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 - 474호)에 반영하여 현재 입법화를 추진 중

2. 특화형 자유무역지역(2종)

특화형 자유무역지역은 지역개발을 목적에 둔 개념으로 낙후지역에 대한 산업기능과 국내외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차원으로 해당 지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강원권, 전북권 등 지역개발에 대한 수요가

더 큰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해야 하며, 현재의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하면서 입주율 제고를 위한 방안, 국내 중소중견기업 입주나 국내관련 비즈니스 확대 부분도 포함시키는 차원에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제안한다.

1) 인센티브 강화

특화형 자유무역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현 자유무역지역제도보다 더 강화된 조세감면 제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재정당국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특화형 자유무역지역은 외국인전용단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감면 제도의 일부를 준용하여 인센티브 강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선도형 자유무역지역의 경우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자금지원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두 자유무역지역의 인센티브에 대한 차별화를 두고자 했다.

〈표 5-3〉 기존 및 신규 자유무역지역(안) 인센티브 비교

구분		현 자유무역지역	선도형 자유무역지역	특화형 자유무역지역
법적근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목적		외국인투자유치	외국인투자유치 (무역/물류증진)	외국/내국인투자유치 (지역개발/무역증진)
주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해양부, 국토부)	좌동	좌동
입주자격		내·외국인	내·외국인	내·외국인
지원 체계	조세 감면	-국세: 법인세·소득세 3 년간 100%, 그후 2년 간 50% 감면 -지방세: 취득세·등록세· 재산세 3년간 100%, 그후 2년간 50%	좌동	-국세: 법인세·재산세 7 년간 100%, 3년간 50% 감면 -취득세·등록세 5년간 면제
	관세 부과	교통유발부담금·산업단 지조성시개발부담금·공 유수면점유료·농림지조 성비 면제	좌동	좌동
	준조 세	-	-	-
	노동	-	-	-
	기타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자금지원/임대료 감면	클러스터 구축시 자금 지원/임대료 감면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자금지원/임대료 감면

2) 투자 및 입주율 제고 방안

(1) 입주관련 규정 완화

① 현황 및 문제점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들 중 상당수가 외국자본 및 국내자본 유치에 한계에 직면한 상황이다. 지역개발차원에서 지정된 특화형 자유무역지역의 경우는 입주자격, 입주결격 사유 및 입주제한 관련한 규정에 대해 완화를 통해 입주율 제고를 통한 지역개발 활성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은 입주자격 관련하여 법 제10조에 수출 주목적 제조업·도매업, 외투기업, 지식서비스업, 물류업, 지원업종, 공공기관 등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에 보면 수출입 비중, 외투비중 등으로 입주자격이 이원화되어 있으며, 다양한 자격요건을 요구하고 있어 입주기업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또한 법 제12조에 입주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자를 규정하여 입주제한하고 있다. 위 사항의 경우 관리기관이 입주허가 시 불필요한 결격사유자⁵⁹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② 제안내용

특화형 자유무역지역의 입주율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투자회귀기업(U턴 혹은 re-shoring) 수용 그리고 국내에서 해외로 나갈 예정인 국내 기업들의 투자수요를 수용하는 차원에서 법률(법 제10조) 개정이 필요하다. 일부 투자회귀 기업들의 국가경제 기여도 등의 문제가 제기⁶⁰되고 있으나 투자회귀기업 및 해외진출예정 국내기업의 투자수요 모두 업종, 투자규모, 고용규모 등을 고려한 입주기업 규정을 마련하여 특화형 자유무역지역 입주관련 규정의 완화가 필요하다. 또한 입주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자를 규정하여 입주제한(법 제12조)하고 있는데 입주자격을

59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관세·내국세를 체납한 자 등.

60 전계서, 2014.10., p.23.

통해 자유무역지역에 적합한 기업을 선별할 수 있으므로 입주를 제한하는 규정인 결격사유는 폐지하되, 필요한 규정은 입주자격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현 행	개 정(안)
제10조(입주자격) ①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수출 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3. 지식서비스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의 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수출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② 관리권자는 제조업 또는 지식서비스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자가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제물류의 원활화와 지역개발 및 수출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입주자격) ① (현행과 같음) ② 관리권자는 제조업 또는 지식서비스산업, 해외유출가능산업, U턴기업에 해당하는 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자가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제물류의 원활화와 지역개발 및 수출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게 할 수 있다. 단, 해외유출가능산업, U턴기업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령에 의거한 세부입zug업 기준을 통해 별도 선정한다.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입주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또는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 또는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56조, 제57조, 제59조부터 제61조까지,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또는 같은 법 제274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68조, 「관세법」 제279조에 따라 처벌된 법인 또는 개인은 제외한다. 6. 관세 또는 내국세를 체납한 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원으로 하는 법인 8.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주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12조(결격사유)〈삭 제〉 1/ 2. 3. 4. 5. 6. 7. 8.

(2) 수출비중 위반업체 구제

① 현황 및 문제점

경기침체, 환율상승 등 대내외 경제 환경 변화로 인해 입주기업 중 입주조건인 수출실적에 미흡한 경우도 발생하고 있으며, 해당 기업들의 경우 불가피한 상황에서 입주기업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나 입주허가 취소라는 강력한 규정에 의해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입주율이 저조한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에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제가 필요하다. 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르면 “관리권자는 수출 비중 요건⁶¹을 미충족한 입주기업에 대해 입주허가 취소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다.

② 제안 내용

자유무역지역의 기본 목적은 무역진흥이므로 수출비중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특화형 자유무역지역의 입주율 제고 및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일시적(2~3년) 기준 미충족 시에도 지속적인 사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총 매출액 대비 수출액 50% 규정도 40%로 완화할 수 있도록 법 제15조 규정 일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3) 중소중견기업 입주 우대

①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은 외국인 투자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 국적 기업들에 대한 역차별이 이야기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우리나라 중소·중견기업들은 대기업에 비해 자금력은 떨어지고 자유무역지역과 같은 임대조건이 좋은 지역에 입주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⁶¹ 제조업 및 수출입 도매업종의 경우,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50%(「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30%, 「중견기업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0%)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기업(시행령 제7조).

② 제안 내용

「중소기업기본법」, 「중견기업특별법」에서 규정하는 기업들에 한하여 특화형 자유무역지역 입주를 위한 우선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당 기업들이 특화형 자유무역지역에서 효과적인 비즈니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식산업센터나 공동물류센터와 같은 정부지원 건물에 입주할 수 있는 신규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제〇〇조(중소중견기업 입주 지원·육성) ① 관리권자는 특화형 자유무역지역내 중소·중견기업 지원과 육성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중견기업 지원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중소·중견기업들의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3. 중소·중견기업의 상호 연계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중소·중견기업 수출 촉진에 관한 사항
5. 중소·중견기업 지원관련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사항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화형 자유무역지역내 중소·중견기업 사업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할 때에 중소·중견기업들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4절. 기타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

1. 외국인 투자촉진법령 개정

국내기업 이외에 외국의 유통물류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을 개정하여 외자유치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5조는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외국인투자금액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즉,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 달러 이상으로서 제조업(시행령 제25조 제1호) 등의 공장시설(제조업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장)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또는 외국인투

자금액이 미화 1천만 달러 이상으로서 항만배후단지 내에서 경영하는 물류산업, 공항구역 내에서 경영하는 물류산업(시행령 제25조 제3호) 등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를 외국인투자금액의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은 새로운 외국기업이 진입하기에 과다한 투자금액으로서 부담스러운 진입장벽이 될 수 있고 특히 식품가공기업이나 물류기업으로서는 그 규모가 작을 수 있기에 그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투자금액을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관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개정

우리나라의 지경학적 장점을 이용하여 중국과 일본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글로벌 대형물류센터(Central Distribution Center)를 유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공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은 보관 및 해외배송목적은 물품이 반입되었을 때 부가세 영세율 적용이 되지 않아(법 45조) 고가의 물품이나 대량의 물품을 보관할 목적으로 물류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세제상 불이익으로 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과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 제4조 제1호 또는 제3호 내용을 현재의 “사용 또는 소비”가 아니라 보관 목적으로 자유무역지역 내 글로벌 대형물류센터에 반입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과 “관세환급”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단, 본 개정으로 인해 조세탈루의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싱가포르, 대만 등의 유사제도를 운용 중인 국가의 관리체계에 대한 학습을 통해 안정장치 마련이 동시에 필요하다.

3. 관세법상 특허보세구역과의 차이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개선방안

현재 관세법상 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된다(관세법 제154조). 먼저 지정보세구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항시설 또는 항만시설을 관리하는 법인 등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 건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지정보세구역으로 세관장이 지정하는 구

역을 말한다(동법 제166조).

또한 특허보세구역은 특허권자인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설치·운영되는 보세구역으로서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건설장, 보세전시장, 보세판매장이 운영되는 장소를 말한다. 특허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과는 달리 민간이 신청을 하고 세관장의 특허가 있어야 운영될 수 있다(동법 제174조 이하).

이러한 보세구역은 기본적으로 관세채권의 확보, 통관질서의 확립, 세관업무의 효율화, 수출 및 산업 지원의 취지에서 인정되고 운영되는 것이다. 특허보세구역의 근거가 되는 법률인 관세법의 제1조 목적조항을 살펴보면 이를 설명하고 있다. 즉, 관세법 제1조는 “관세의 부과, 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하고 그것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자유무역지역법에 따르면 동법은 “자유로운 제조, 물류, 유통 및 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자유무역지역을 지정 운영함으로써 외국인투자의 유치,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의 원활화 및 지역개발 등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하여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제조, 물류, 유통 및 무역활동 등을 자유무역지역에서 보장되도록 함에는 일견 특허보세구역의 취지와 공통점이 있으나, 종국적으로는 외국인투자의 유치와 무역의 진흥을 통하여 국제물류의 원활화, 지역개발 등의 목적으로 함에는 양 제도가 뚜렷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양 제도를 외견상의 형태가 유사하다는 점을 이유로 하여 서로 다른 제도를 같이 취급한다면 이는 결국 문제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유무역지역제도는 외국물품이 일정기간 장치하여 있다가 종국적으로 외국으로 다시 반출되든지, 국내로 반입되든지 하는 과정을 거쳐서 결국 국제물류의 원활화와 외국인투자 유치에 방점이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특허보세구역보다는 제도의 취지가 더 포괄적이며 물류원활화에 중심을 둔 제도이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가 외국인투자를 더 유치하고, 국내로 회귀하는 기업에도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자유무역지역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노력한다면 특허보세구역제도를 자유무역지역제도로 통폐합하거나, 두 제도가 가지는 취지의 차이점을 고려하여 각각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표 5-4〉 자유무역지역 및 특허보세구역 비교

구분	자유무역지역	특허보세구역
적용법률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 관한 법률	관세법 제7장 보세구역 제3절 특허보세구역 이하
적용시점	-외국물품대상 -자유무역지역 반입 이전에는 관세법 적용, 반입 이후에는 자유무역지역법 적용	별도지정 안함
지정권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4조)	세관장 특허(제174조)
요청권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제4조)	개별 민간업체(제174조, 제175조)
관리권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제8조)	세관장(제180조 이하)
물품이동 및 화물관리	-차량제한 없이 입주기업체간 물품이동이 자유로움(시행령 제4조 참조) -입주기업체 재고관리시스템으로 자율관리(제38조)	-보세운송절차에 따른 운송: 보세구역간 화물운송시 보세운송차량으로 운송 (제222조) -보세사에 의한 보세구역의 자율관리 (제164조)
보수작업	-수입신고 전 보수작업은 승인 없이 입주기업체 책임하 실시 (제38조) -수입신고 후 보수작업은 세관승인 필요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후 가능 (제158조)
장치기간 및 운영기간 관세부과	장치기간 및 운영기간 제한 없음	장치기간은 보세창고의 경우 외국물품은 1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인정기간, 단 연장가능(제177조) -운영기간은 특허기간으로 한정됨, 단, 갱신은 가능(제176조)

제 6 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요약 및 결론

글로벌 경제 환경 급변, 아시아 중심 세계경제 성장 등 과거와 다른 형태의 글로벌 경제 및 무역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외국인 투자패턴 및 투자주체도 변화하고 있는 상황으로 글로벌 가치사슬에 기업의 투자패턴 및 미국, 유럽과 일본 출신의 투자자 일색에서 중국, 인도 등의 신흥 부국의 투자자 증가 등으로 기존에 우리나라가 예측했던 외국인 투자패턴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1970년대 제정된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 관련 법제도의 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변화된 외국인 투자패턴에 대한 분석과 함께 외국인들의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의 선택요인에 대한 분석을 병행하여 한국형 투자유치 요인을 도출하였다.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화는 FTA(TPP, TiSa) 확산, 파나마 운하, 북극해 항로 개설, 국가 경쟁적 투자유치 정책 등으로 인해 국제분업과 물류흐름에 구조적 변화를 가져왔고 미국, EU 등 글로벌 소비국들이 고용창출,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리쇼어링(re-shoring)기업들에게 법인세율 인하, 환경부담세 인하 등 인센티브 제공 등 부정적 요인으로 혼조적인 투자유치 패턴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해당 현상에 일관된 흐름은 글로벌 가치사슬의 확대와 강화로 본 연구에서는 가치사슬과 FDI 연계성 분석을 통해 가치사슬 기반 투자결정 요인을 도출하였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에 투자를 희망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대부분은 글로벌 가치사슬상에서 우리나라 기업들과의 협업의 필요성 그리고 중일 협업기업들과의 협력을 위해 한국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 입지하고자 하는 경향이 분명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출된 외국인 투자유치 패턴에 적합한 투자 유인 결정

요인과 함께 해외주요 사례의 시사점을 결합하여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및 입지패턴 분석(글로벌 가치사슬 관련)을 통해 조세, 임대료 이외에 투자 결정요인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한국형 외국자본 투자 결정요인과 우리나라 투자유치 여건(외국인 투자 촉진, 무역 확대, 물동량 증대, 지역개발 등)을 고려한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 기능 재정립 방안을 제안하였다.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의 기능은 글로벌 가치사슬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선도형 자유무역지역(1종)과 입주율 제고를 통한 지역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특화형 자유무역지역(2종)으로 구분하여 특성화 방향 및 인센티브 지원 방향을 이원화하고자 법제도를 제안하였다. 또한, 해당 기능 재정립 방안에 의거하여 신규 제도도입 부분, 기존 제도에 대한 개정 부분 등을 제안하였다. 신규 제도는 클러스터 구축지원관련 사항, 사후평가제도 도입 등이며, 기존 제도 개선방안은 인센티브 강화, 관리·운영관련 제도개선, 사업환경 및 신규 비즈니스 창출 관련 제도개선 방안 등에 해당된다. 이외 기타 관련법 제도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관세법, 부가가치세 등 연계된 법제도의 개정방안도 일부 제안을 하였다.

제2절. 정책제언

1. 법제도 및 평가제도 개선

1) 자유무역지역법 법제도 개정

무역증진, 국제물류 촉진 그리고 지역개발이라는 상충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자유무역지역을 동일한 법제도로 운영하는 것은 일부 법 개정을 통해 개선될 내용이 아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것과 같이 자유무역지역의 이원화 방안으로 법제도의 대수술을 통해 주어진 기능에 의거하여 자유무역지역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무역증진과 국제물류 촉진 기능은 공존이 가능하고 상호 시너지 효과가 가능하나 지역개발은 무역증진과 국제물류 촉진 기능과는 특별한 상관관계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해당 두 가지 기능을 완전히 분리하여 선도형과 특화형으로 구분하고 자유무역지역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당 법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그리고 관세청의 참여를 통한 체계적인 법 개정안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당해 개정 법률에는 자유무역지역 내에서 관련 산업간 통합적으로 클러스터화를 할 수 있도록 그 설립과 근거 지원 관련 법률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2) 외국인투자유치 관련 통합 법제도 신설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지역 등 외국인이 투자하는 지역은 각각의 근거 법률의 규정과 취지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고, 서로 다른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그러나 현실은 구체적인 지원 내용의 차이가 있지만 실질적인 차이가 크지는 않기 때문에 각 제도의 특징이 크게 부각되지 않고 각 제도를 활성화하는 데 한계점에 봉착해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판단된다. 각 제도에 있어 서로 큰 차이가 없는 점, 특별한 유인요인이 없는 점, 장기적인 비전제시가 없는 점 등이 외국인투자의 유치에 자유무역지역제도가 가지는 한계점이라고 판단된다.

이를 위하여 단순히 자유무역지역법만을 수정할 것이 아니라, 경제자유구역법,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관련법제도를 통합하여 선택과 집중이 가능하고 운영이 용이하면서 강력한 통합법제도 신설에 대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복잡다기하게 구성된 외국인 투자유치 관련된 제도로 인해 관리자는 물론이고 이용자 역시 혼란에 빠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장기적인 개선방안으로 관련 법제도를 통합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신설되는 법률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가칭)’의 구성과 역할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 내용을 둘 필요가 있다. 또한 동 위원회의 행정부 내에서의 위상을 국무총리 산하로 하고 그 세부적인 집행기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각종법제의 통합관리와 규율, 투자촉진을 통할하면서 효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외국인 투자유치 관련 파급효과 분석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의 외국인 투자유치가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나 중남미 국가들은 외국자본과 국내자본에 대한 균등한 투자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과거 외국투자자본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이제는 많이 바뀐 상황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외국으로 나가는 우리나라의 투자 자본을 국내에 잡을 수 있다면 외국인 투자유치 보다 더 실효적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아직 가공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외국자본에 대한 선호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이제부터는 좀 더 면밀한 외국인 투자유치관련 효과 분석을 통해 해당 정책의 지속성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국내자본에 대해서도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여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자유무역지역의 파급효과를 강화할 지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의사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

4) 자유무역지역 부가가치 평가지표 및 통계 표준화

현재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부가가치 관련 평가지표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는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정확한 성과 진단을 통한 법제도 개선으로 연결되어야 하나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특히 산업단지형, 항만형, 공항형의 통계자료 통합 및 표준화가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평가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는 관련 협의회나 통합 거버넌스 조직 등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의 부가가치 평가지표와 관련 통계의 표준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 관련한 성과지표를 분석하여 자유무역지역 정책 및 법제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해당 지표 중 홍보가 가능한 내용을 중심으로 자유무역지역 마케팅에도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당해 성과 평가를 위한 지표의 기준과 각 항목을 관련법에 그 내용을 담아 일관되고 형평성 있는 평가지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2. 거버넌스 및 관리·운영체계 개선

1) 범정부 통합 거버넌스 마련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자유무역지역과 관련된 거버넌스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 현재 한국의 자유무역지역은 부처 간 관리권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산업단지형), 해양수산부(항만형), 국토교통부(공항형)으로 관리권이 분산되어 있어 국가차원의 통합적인 자유무역지역 관리·운영 및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 또한 운영은 해당 부처의 산하기관이나 지방청에서 맡고 있어 관리·운영을 하고 있는 정부입장이나 해당 지역에 비즈니스 활동을 하는 기업차원에서도 혼란스럽고 불필요한 비용이나 시간 낭비가 많은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 혼선이나 상충, 기업들의 행정비용 및 시간낭비 등을 막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통합 거버넌스 기구가 필요하다. 국무총리실이나 청와대 산하에 자유무역지역 전담 위원회를 두고 산업단지, 항만, 항공 등으로 공간기능별로 구분되어 있으나 해당 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기능이 미흡하여 국가차원의 외국기업 투자유치 시 일부 정책혼선과 상충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정책의 실효적 집행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자유무역지역 관련 현재의 거버넌스(governance) 기능을 정비해야 한다. 우선 컨트롤 타워인 청와대 내에 ‘(가칭) 자유무역지원관리실’ 혹은 ‘자유무역지역정책비서관’ 등이 설립되어야 한다. 이는 정부부처 전체의 자유무역지역 관련기능을 통합 관리하고 조율할 수 있는 기능인 것이다.

다음으로 정부 부처 간 협력을 위한 협의 기구가 필요하다. 신규로 자유무역지역관리운영 신설이나 현재 국민경제자문회의의 기능 내에 자유무역지역 업무를 포함시켜 부처 간 기능 및 정책을 조율, 협력, 융합하여 추진하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2) 실효성 평가를 통한 자유무역지역 해제 및 확대

입주율이 낮은 자유무역지역 중 개선 가능성이 낮은 자유무역지역을 중심으로 자유무역지역 해제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의 경쟁력을 높

이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상황으로 입주율과 부가가치 창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실효성이 떨어지는 자유무역지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자유무역지역을 해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입주율이 높고 부가가치 창출 능력이 높은 자유무역지역은 지정공간을 확대하여 외국인투자유치에 효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한편, 향후 신규 자유무역지역 지정 요청이 있을 때는 엄밀한 평가를 통해 지역지정이 필요하다. 국가재원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지역개발 관점보다 가공무역과 국제물류 기능을 추진할 수 있는 관점에서의 지정이 필요하다.

3) 자유무역지역 투자유치 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

현재 분산되어 있는 자유무역지역 운영주체의 협력체계 강화가 필요하다. 자유무역지역은 관리원, 지방청, 공항만공사, 지자체, 경제자유구역청 등이 기관 특성별로 개별 투자유치 활동을 벌이고 개별 평가기준 등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운영주체 간 상호 협력보다는 자기조직 중심의 활동으로 인한 활동 중복 및 상충으로 투자유치 효과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유관기관, 입주기업 및 자문기관 간 정기 미팅을 통해 관련기관 간 의견 조율, 문제점 개선 및 추진사업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도출된 문제점의 해결 및 사업 추진을 위해 기관별 역할 구분, 각자 임무 추진 과정 상 필요한 정보 및 의견 교환으로 동일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자간 협력 도모가 필요하다.

3. 마케팅 활성화 방안 강구

1) Best Practice 활용⁶²

현재 입주 중인 Best Practice(BP)를 발굴하고 해당 BP의 홍보 모델을 마련하여 마케팅 및 IR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입주기업 중 우수한 Biz모델, 부가가치 물류활동을 통한 성공사례, 비용절감 성공사례 등 외국기업 유치에

⁶² 송주미 외, 『자유무역지역 유형별 Biz Model 구축 및 연계방안 연구』, 2013.12., p.163.

활용 가능한 사례 발굴과 모델링을 통한 홍보 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산업단지, 항만, 공항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조사 및 상품화 작업을 통해 Best Practice를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2) 자유무역지역연계 Biz 모델 개발 연구 강화⁶³

외국인 투자요인 변화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기능 재정립과 함께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의 본격적인 활성화를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수요자 맞춤형 Biz Model들이 만들어져야 한다. 실제 자유무역지역 활성화는 국가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이고 이들 기업들은 자기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Biz Model에 의해 투자를 결정한다. 따라서 세부적인 산업단위, 기업단위, 품목단위별로 Biz Model 마련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Biz Model 개발은 우선 적합한 타겟기업을 선정하고, 실제로 우리나라의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였을 경우의 비용절감 및 물류흐름 개선 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형태로 마련되어야 한다. 결국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통해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 제도의 개선 방안 등도 같이 제안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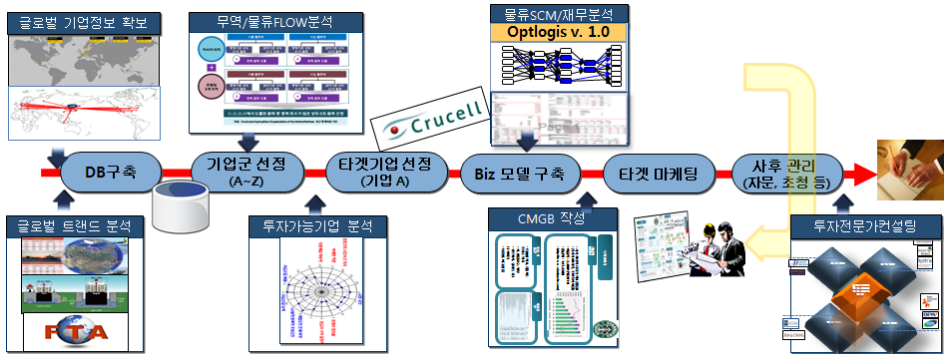
3) 자유무역지역 체계적 기업유치 전략 수립

자유무역지역의 활성화는 안정적인 기업유치가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유무역지역 기업유치 활동은 대규모 IR이 일반적인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형 마케팅 전략은 우리나라처럼 안보리스크가 크고 내수시장 규모가 작은 곳에서는 초기에는 필요하나 점차 그 효과가 약해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이제는 수요자 맞춤형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 따라서 글로벌 시장 및 물류시장 동향 분석을 시작으로 글로벌 기업정보 분석, 무역/물류흐름 분석 등을 통해 투자가능 기업을 도출하고 해당 기업의 SCM 체계를 분석하여 맞춤형 Biz Model을 구축하고 타겟 마케팅을 하는 체계적인 기업유

⁶³ 전계서, 2013.12., p.160.

치 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업유치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조직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자유무역지역의 조기 활성화가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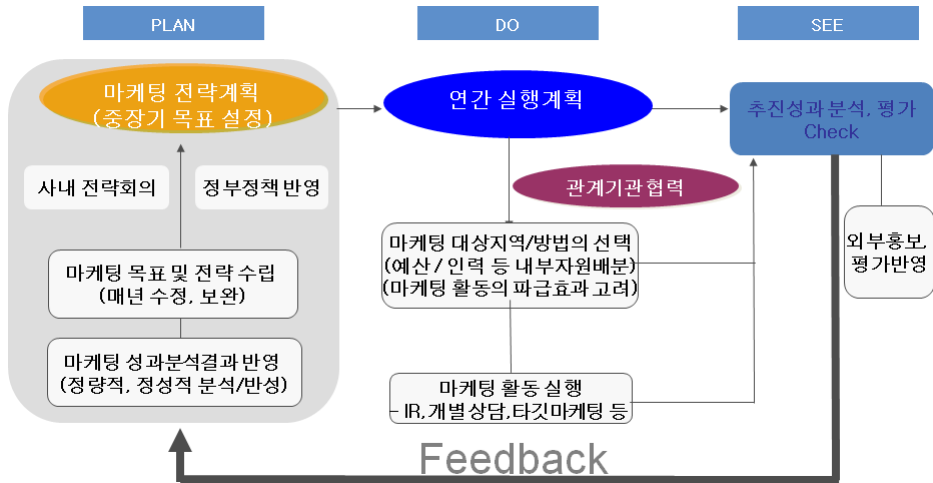
〈그림 6-1〉 자유무역지역 기업유치 절차



4) 지속적인 투자유치 성장기반 구축

지속적인 자유무역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뿐만 아니라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마케팅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마케팅 담당자에 대한 전문교육이 필요하다. 해당 담당자에 대해 투자유치 실무, 글로벌 마케팅, 해외투자실무(KOTRA, 한국생산산업본부 등)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투자유치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하여 글로벌 경제 및 물류동향, 산업동향, 외국인 투자기업 관점에서의 투자애로, 각 자유무역지역별 Biz 모델 및 투자유치 우수사례 공유 등을 통해 투자유치 관련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로 마케팅효과 및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 또한 투자유치 대상이 되는 고객 데이터베이스 관리가 필요하고 이와 연계하여 자유무역지역 관계기관 평가회의를 설립하여 정기적 미팅을 통한 의견 조율, 환류시스템 활성화 및 모범사례 공유 등의 마케팅 기반 강화가 필요하다.

〈그림 6-2〉 자유무역지역 마케팅 성장기반 프로세스



참고문헌

국내문헌

- 길광수·박선현, 『항만배후단지 개발 관련 법 제도 비교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3.12.
- 김영태·김영민, 『외국인직접투자의 변동요인 분석』, 한국은행, 2007.12.
- 김형근·김근섭·전형모·정경선, 『부가가치 창출 극대화를 위한 항만배후단지 발전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1.12.
- 백종실·우종균, 『관세자유지역의 글로벌 물류기업 유치 강화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1.12.
- 산업연구원, 『자유무역지역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 연구』, 2014.10.
- 산업통상자원부, 『2013년 외국인직접투자동향(붙임)』, 2014.1.
- 박재곤·강기천, 『자유무역지역의 활성화 및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방안』, 산업자원부, 2007.7.
- 박종홍, 「우편물류 RFID 기술 도입 로드맵」,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6.8.
- 송영관, 「경제특구정책 평가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KDI FOCUS, 2014.10.
- 송주미·이성우·전혜경·민경창, 『자유무역지역 유형별 Biz Model 구축 및 연계방안 연구』, 한국무역협회, 2013.12.
- 이성우·고현정·김찬호·김근섭, 『국제 분업화에 따른 항만배후단지 기업유치 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7.12.
- 이성우·김운수·김근섭·송주미·이진주,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Biz모델 발굴』, 국토해양부, 2008.12.
- 이성우·이언경·이주호·송주미·오연선, 『한·EU FTA 체결에 따른 항만자유무역지역 기업유치전략 연구』, 국토해양부, 2010.12.

- 장근호, 『자유무역지역 제도 현황 및 개선방향 연구-화물관리절차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2012.12.
- 지식경제부, 『2011년 1~9월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2011.10.
- 최병선, 『단변량 시계열분석』, 세경사, 1995
- 최병선, 『다변량 시계열분석』, 세경사, 1995
- 한국경제 60년사 편찬위원회, 『한국경제 60년사』, 2010.
- 한국무역협회, 『자유무역지역 제도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 연구』, 2014.10.

국외문헌

- Susan Tiefenbrun, *Tax-Free Trade Zones of the World And the United States*, Edward Elgar Press, 2012.
- U.S. FTZ Board, *75th Annual Report of the Foreign-Trade Zone Board to the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2014.
-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US Foreign-Trade Zone Manual*, 2011.
- _____, *Importing into the United States - A Guide for Commercial Importers*, 2006.
- 19 U.S.C. 81a-81u Foreign Trade Zones
- 15 CFR Part 400 - FTZ Regulations
-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12*, 2012.5.
- _____, *World Investment Report 1998*, 1998.
- World Bank, *Logistics Performance Index*, 2007, 2010, 2012, 2014.
- ADB, *Beyond Factory Asia*, 2013.
- Taiwan MOEA, *An Investment Guide to EPZ in Taiwan*, 2013
- Taiwan MOTC, *FTZ in Taiwan*, 2010, 2011

인터넷자료

관세청 <http://www.customs.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http://www.ftz.go.kr/gunsan/>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 <http://www.ftz.go.kr/gimje/>

대만 수출가공구 <http://www.epza.gov>

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 <http://www.ftz.go.kr/daebul/>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 <http://www.ftz.go.kr/donghae/>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http://www.ftz.go.kr/kor/main.jsp>

부산항만공사 <http://www.busanpa.com>

산업통상자원부 www.motie.go.kr

여수광양항만공사 <http://www.ygpa.or.kr/>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http://ftz.go.kr/ulsan/>

울춘자유무역지역관리원 <http://www.ftz.go.kr/yulchon/>

인천국제공항공사 <http://www.airport.kr/>

인천항만공사 <http://www.icpa.or.kr/>

해양수산부 www.mof.go.kr

WTO <http://rtais.wto.org/UI/PublicAllRTAList.aspx>

Foreign Trade Information System <http://www.sice.oas.org/trade/nafta/naftatce.asp>

U.S. Foreign Trade Zone Board <http://enforcement.trade.gov/ftzpage/index.html>

UNCTAD <http://unctadstat.unctad.org/EN/>

World Bank <http://lpi.worldbank.org/>

외국인 투자요인 변화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기능 재정립 방안

2014년 12월 29일 印刷

2014년 12월 31일 發行

편집검
발행인 김 성 귀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45

전 화 02-2105-2700 FAX : 02-2105-2800

등 록 1984년 8월 6일 제313-1984-1호

조판·인쇄/비전테크시스템즈 02-3432-7132

판매 및 보급 : 정부간행물판매센터 Tel : 394 - 0337

정가 15,000원

